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경상남도

[www.gyeongnam.go.kr](http://www.gyeongnam.go.kr)

공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입 법 예 고**

제2023-49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제2023-50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90

입 법 예 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49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나.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다.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라.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마.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가. 당면한 주요정책 수요에 대처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구 및 소관 사무 신설 등 일부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정원을 조정·반영하려는 것임
- 나. 조직개편 등에 따라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부서 등을 정비
- 다. 도의회 세부분장 사무 조정 및 직제순 변경

3. 주요내용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본청 실·국·본부 신설·폐지 및 명칭변경(안 제5조)
  - 1) 관광개발국 신설 및 현안 반영 실국명 변경

나. 산업통상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6조의4)

- 1) 통상진흥 업무 이관 조정(→경제기업국)

다. 경제기업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6조의6)

- 1) 경제 및 기업정책 일원화, 일자리 업무 이관(→인력지원과), 통상업무(←산업통상국)

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10조, 안 제10조의2)

- 1) 관광개발국 신설에 따른 기능 조정

마. 복지보건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11조)

- 1) 여성가족정책 및 보육정책 업무 이관에 따른 기능 조정

바.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 조정(안11조의2)

- 1) 보건행정 및 의료정책, 감염병 관리, 식품안전 업무 이관에 따른 기능 조정

사. 교육균형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12조)

- 1) 교육 정책 및 일자리 업무 이관에 따른 기능 조정

아. 서부지역본부 명칭 변경(안 제29조의2, 4)

- 1) 서부지역본부 → 균형발전본부

## ㉒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소통담당관 명칭 변경 조정(안 제5조)

- 1) 소통담당관 → 공보관

나. 미래전략추진단 신설 조정(안 제5조의6)

- 1) 도정 정책개발 연구기능 강화

다. 기획조정실 직제 개편(안 제7조)

- 1) 교육인재담당관 → 교육균형국, 청년담당관 ← 여성가족국

라. 산업통상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7조의4)

- 1) 방위산업 육성(주력산업과←미래산업과), ICT산업(산업정책과→미래산업과)

마. 경제기업국 직제 개편(안 제7조의6)

- 1) (직제개편) 경제인력과+기업정책과 → 경제기업과, 인력지원과(→교육균형국), 국제통상과 ← 산업통상국

바. 자치행정국 명칭 조정(안 제8조의3)

- 1) 자치행정국 → 행정국

사. 해양수산국 직제 개편 및 사무 조정(안 제10조)

- 1) (직제개편) 수산자원과 → 수산정책과

- 2) (사무조정) 수산식품산업+수산물안전 사무 이관(해양항만과→수산정책과), 귀어귀촌 신설(어촌발전과), 자원조성 사무 이관(수산정책과→어촌발전과)

아. 문화관광체육국 직제 개편 및 사무 조정(안 제11조)

- 1) (직제개편) 관광개발과, 관광진흥과 → 관광개발국, 문화재관리 → 문화유산보존, 문화재보수 → 문화유산보수

2) (사무조정) 체전홍보 신설(전국체전기획단)

자. 관광개발국 직제 신설(안 제11조의2)

1) (직제개편) 관광진흥과 → 관광정책과, 남해안과(신설), 관광개발과

차. 복지보건국 직제 개편 및 사무 조정(안 제12조)

1) (직제개편)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식품의약과 이관 →보건의료국

2) (사무조정) 여성정책, 여성일자리, 건강가정, 다문화 등(여성가족과←여성정책과·가족지원과), 출산 지원, 보육, 아동 및 청소년 등(보육정책과←가족지원과·아동청소년과)

카. 여성가족국 직제 개편(안 제12조의2)

1) (직제개편)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이관(→복지여성국), 청년정책과 이관(→기획조정실)

2) (사무조정) 보건행정, 건강증진, 의료정책, 감염병 관리, 식품위생 등(←복지보건국)

타. 교육균형국 직제 개편 및 사무 조정(안 제13조)

1) (직제개편) 균형발전국 → 교육균형국, 교육인재과(←기획조정실), 인력지원과(←경제기업국), 우주 항공산업과, 균형정책과+지역발전과 → 지역발전과

2) (사무조정) 서부민원, 청사관리(균형정책과→지역발전과), 농업기술원 이전 업무(→농업기술원), 균형발전+자치분권(←행정과) → 지역발전

파. 농업기술원 소관 사무 조정(안 제18조)

1) 농업기술원 이전 추진 업무(←지역발전과)

하. 서부지역본부 명칭 변경(안 제35조의2)

1) 서부지역본부장 → 균형발전본부장

거. 수산안전기술원 직제 개편(안 제46조의4)

1) (직제개편) 수산관리과+기술지원과 → 수산관리과, 수산물안전관리센터 → 수산물검사와

너. 119안전센터 등 별표2 정비(안 제31조)

1) 별표2 소방서 소속 소방기구, 소재지 및 관할구역 정비

### ③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정원 조정(안 제2조, 제3조의 별표2, 제4조의 별표3)

1) 정무직 : 3명 → 변동 없음

2) 일반직 : 2,383명 → 2,384명(증 1명)

가) 2급~3·4급 이상 : 18명 → 19명(증 1명)

나) 4급 : 93명 → 94명(증 1명)

다) 5급이하 : 2,261명 → 2,260명(감 1명)

라) 전문경력관 : 11명 → 변동 없음

3) 연구직 : 257명 → 변동 없음

가) 연구관 : 40명 → 변동 없음

나) 연구사 : 217명 → 변동 없음

- 4) 지도직 : 31명 → 변동 없음
- 5) 별정직 : 22명 → 변동 없음
- 6)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 가) 소방정 : 25명 → 변동 없음
  - 나) 소방령 : 97명 → 변동 없음
  - 다) 소방경 : 332명 → 336명(증 4명)
  - 라) 소방위 : 393명 → 425명(증 32명)
  - 마) 소방장 : 702명 → 변동 없음
  - 바) 소방교 : 1,059명 → 1,058명(감 1명)
  - 사) 소방사 : 1,765명 → 1,730명(감 35명)
- 7) 교육직 : 74명 → 변동 없음

####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 정원 조정(안 제2조의 별표)
  - 1) 총 정원 : 7,143명 → 7,144명(증 1명)
  - 2) 정원관리기관별
    - 가) 본청 : 1,905명 → 1,909명(증 4명)
    - 나) 의회사무처 : 157명 → 변동 없음
    - 다) 직속기관 : 4,493명 → 4,491명(감 2명)
    - 라) 지역본부 : 1명 → 변동 없음
    - 마) 사업소 : 514명 → 변동 없음
    - 바) 합의제행정기관 : 69명 → 68명(감 1명)
    - 사) 경제자유구역청 : 4명 → 변동 없음
  - 3) 직종별·직급별
    - 가) 일반직 : 2,383명 → **2,384명**(증 1명)
      - 1) 3·4급 이상 : 18명 → **19명**(증 1명)
      - 2) 4급 : 93명 → **94명**(증 1명)
      - 3) 5급 : 426명 → **442명**(증 16명)
      - 4) 6급 : 797명 → **783명**(감 14명)
      - 5) 7급 : 690명 → **686명**(감 4명)
      - 6) 8급 : 310명 → **308명**(감 2명)
      - 7) 9급 : 38명 → **41명**(증 3명)
      - 8) 전문경력관 : 11명 → 변동없음
    - 나) 연구직 : 257명 → 변동없음
      - 1) 연구사 : 217명 → 변동없음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다) 별정직 : 22명 → 변동없음

- 4급상당 : 9명 → 변동없음

라) 소방직 : 4,373명 → 변동없음

- 소방령 : 97명 → 변동없음

- 소방경 : 332명 → **336명**(증 4명)

- 소방위 : 393명 → **425명**(증 32명)

- 소방교 : 1,059명 → **1,058명**(감 1명)

- 소방사 : 1,765 → **1,730명**(감 35명)

마) 교육직 : 74명 → 변동없음

## 4) 직급·직렬별

가) 일반직 : 2,383명 → **2,384명**(증 1명)

- 3급 : 행정 증1

- 4급 : 행정 증1

- 5급 : 농업·수의·수의연구 감1, 농업·수의·식품위생·수의연구 증1, 보건·의무 감1, 보건·의무·간호 증1, 수의·수의연구 증1, 시설 감2, 시설·농업연구 증1, 해양수산 증1, 행정 감2, 행정·간호 감1, 행정·공업 증4, 행정·공업·농업·환경 증1, 행정·공업·방송통신 증1, 행정·공업·시설 증2, 행정·공업·환경 증1, 행정·녹지·시설 증1, 행정·농업 감2, 행정·농업·보건·식품위생 증1, 행정·농업·보건·환경 감3, 행정·농업·식품위생 증1, 행정·보건 감3, 행정·보건·간호 증3, 행정·보건·식품위생·간호 증1, 행정·보건·환경 감1, 행정·사회복지 증3, 행정·사회복지·보건 증2,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증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증1, 행정·숙기·보건·환경 증1, 행정·수의·환경 감1, 행정·시설 증5, 환경 감1

- 6급 : 간호 감1, 공업 감1, 공업·환경 감1, 녹지 감1, 농업 감1, 농업·수의 감1, 농업·해양수산 증1, 보건 감1, 보건·식품위생 감1, 보건·식품위생·환경 증1, 보건·환경 감1, 수의·수의연구 감1, 시설 감2, 식품위생 감1, 전산 감1, 행정 감22, 행정·공업 감3, 행정·공업·보건·시설 증1, 행정·공업·시설 증1, 행정·농업 증1, 행정·농업·보건·환경 증9, 행정·농업·수의 증1, 행정·보건·시설 증1, 행정·보건·환경·시설 증2, 행정·사회복지 증2, 행정·세무 증2, 행정·수의·보건 감1, 행정·시설 증4, 행정·전산 증1, 행정·전산·공업·방송통신 증1, 행정·해양수산 감2, 행정·해양수산·시설 증1, 환경·시설 감1

- 7급 : 공업 감1, 농업 감1, 농업·보건·식품위생·환경 증1, 방송통신 감1, 보건·간호 감1, 보건·식품위생·간호 감1, 보건·식품위생·환경 감1, 시설 감2, 해양수산 증1, 해양수산·시설 증1, 행정 감17, 행정·공업 증1, 행정·공업·보건·시설 증1, 행정·공업·시설 증1, 행정·농업·보건·환경 증8, 행정·보건 감1, 행정·사회복지 증2, 행정·전산 증3, 행정·전산·공업·방송통신 증2

- 8급 : 간호 감1, 공업 증1, 기계운영 감1, 보건·환경 감1, 사회복지·보건·간호 감1, 운전 감1, 해양수산 증1, 행정·녹지·환경 증1, 행정·농업·녹지 감1, 행정·보건·시설 증1, 행정·보건·식품위생 증1, 행정·전산·보건 감1

- 9급 : 기계운영 감1, 행정 증4,

- 나) 소방직 : 4,373명 → 변동없음
  - 소방경 증4, 소방위 증32, 소방교 감1, 소방사 감35
- 다) 연구직 : 253명 → 변동없음
  - 보건연구 감10, 보건연구·환경연구 증19,, 환경연구 감9
- 라) 기타 직종 : 변동 없음

## ㉔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세부분장사무 조정 및 직제순 변경(안 제3조제1항, 별표2)

- 1) 총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의사담당관 →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20.(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안대로 300(사림동)
- 2) 전 화 : 055-211-2363 (FAX : 055-211-2319)
- 3) E-mail : okcjs@korea.kr

- 붙임**
-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4.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5.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경상남도조례 제 호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산업통상국”을 “산업국”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경제기업국 ”을 “경제통상국”으로 하며, 같은 항제6호 중 “서부지역본부”를 “균형발전본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도민안전본부·산업통상국·경제기업국·자치행정국·해양수산업·도시주택국·교통건설국·문화관광체육국·복지보건국·여성가족국·균형발전국·농정국·환경산림국”을 “기획조정실·도민안전본부·산업국·경제통상국·행정국·해양수산업·도시주택국·교통건설국·문화체육국·관광개발국·복지여성국·보건의료국·교육균형국·농정국·환경산림국”으로 한다.

제6조 중 제5의2호를 신설하고, 제8호를 삭제한다.

## 5의2.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제6조의4의 제목 “(산업통상국)”을 “(산업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6조의6의 제목 “(경제기업국)”을 “(경제통상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기업국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경제 및 일자리, 산업인력 정책”을 “경제 및 기업정책·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기업정책 및 지원”을 “통상 진흥과 국제교류·협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의 “사회적 경제정책 및 기업육성지원”을 “노동사회정책 및 기업육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3의 제목 “(자치행정국)”을 “(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며, 제1호 중 “지방행정·자치분권 및”을 “지방행정 및”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해양수산 및 항만정책, 수산식품산업·수산물안전”을 “해양 및 항만정책·항만개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어업생산, 어업조정”을 “수산정책 및 수산지원·수산물안전”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문화관광체육국)”을 “(문화체육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하며, 제3호 및 제6호를 삭제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전국체전기획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관광개발국) 관광개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남해안 관광개발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관광개발사업 총괄 기획·발굴·시행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의 제목 “(복지보건국)”을 “(복지여성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보건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노인복지”를 “노인정책”으로 하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삭제하고 제7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여성가족정책에 관한 사항
8. 보육정책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보건의료국) 보건의료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
2. 의료정책 등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관리 등 생활방역 추진에 관한 사항
4. 식품 안전에 관한 사항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제12조의 제목“(균형발전국)”을“(교육균형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균형발전국장”을 “교육균형국장”으로 하며, 그 사무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 정책 및 지원, 대학협력,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산업인력·외국인인력 정책에 관한 사항
3.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구대응, 균형발전, 지역개발, 공공기관이전, 서부민원 및 서부청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제1절 중 “서부지역본부”를 “균형발전본부”로 한다.

제29조의2 제1항 중 “서부지역본부”를 “균형발전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부권 지역과 관련된 지역균형발 정책”을 “경남의 교육과 인력지원,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한다.

제29조의4제4호 중 “균형발전국”을 “교육균형국”으로 한다.

제82조 중 “「지방자치법」 제129조”를 “법 제129조”로 한다.

제85조 중 “「지방자치법」 제129조”를 “법 제129조”로 한다.

제87조제6호 중 “협약, 제30조제4항”을 “협약 및 같은 법 제30조제4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설치된 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은 2026년 1월 1일까지로 한다.

제4조(한시기구) 관광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소통담당관”을 “공보관”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소통담당관”을 “공보관”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소통담당관”을 “공보관”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소통담당관”을 “공보관”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소통담당관”을 “공보관”으로 한다.

⑥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제5조제2항제2호 중 “소통담당관”을 “공보관”으로 하고, “자치행정국”을 “행정국”으로 하며, 같은 항제5호 중 “산업통상국·경제기업국”을 “산업국·경제통상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균형발전국”을 “교육균형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문화관광체육국”을 “문화체육국·관광개발국”으로 하고, “복지보건국·여성가족국”을 “복지여성국·보건의료국”으로 한다.

⑦ 「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산업통상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하고, 제17조제3항 중 “산업통상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⑧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산업통상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⑨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산업통상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⑩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산업통상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하고, “경제기업국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하며, “복지보건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⑪ 「경상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산업통상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⑫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산업통상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⑬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산업통상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⑭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산업통상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⑮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산업통상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⑯ 「경상남도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⑰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⑱ 「경상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복지보건국장”을 “행정국장, 문화체육국장,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⑲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⑳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제7조제3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㉓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경제기업국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㉔ 「경상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제기업국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㉕ 「경상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경제기업국장, 여성가족국장, 복지보건국장”을 “경제통상국장, 복지여성국장, 보건의료국장”으로 한다.

㉖ 「경상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균형발전국장”을 “교육균형국장”으로 한다.

㉗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소통담당관”을 “공보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산업통상국·경제기업국”을 “산업국·경제통상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 중 “균형발전국”을 “교육균형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문화관광체육국”을 “문화체육국·관광개발국”으로 한다.

㉘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㉙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㉚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㉛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㉜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㉝ 「경상남도 자원봉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㉞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제3항, 제15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㉟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㊱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㊲ 「경상남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7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 ㉞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 중 “여성가족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 ㉟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중 “여성가족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 ㊱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 중 “여성가족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 ㊲ 「경상남도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 중 “복지보건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 ㊳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중 “복지보건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 ㊴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중 “복지보건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 ㊵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장, 복지보건국장”을 “문화체육국장,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부지사) 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경제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u>산업통상국</u>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p> <p>2. <u>경제기업국</u>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p> <p>3. ~ 5. 삭제</p> <p>6. <u>서부지역본부</u>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p> <p>7. (생략)</p> <p>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①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기획조정실·도민안전본부·산업통상국·경제기업국·자치행정국·해양수산국·도시주택국·교통건설국·문화관광체육국·복지보건국·여성가족국·균형발전국·농정국·환경산림국</u>을 둔다.</p> <p>② (생략)</p>	<p>제4조(부지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경제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u>산업국</u> -----</p> <p>2. <u>경제통상국</u> -----</p> <p>6. <u>균형발전본부</u>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p> <p>7. (현행과 같음)</p> <p>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① -----                      ----- <u>기획조정실·도민안전본부·산업국·경제통상국·행정국·해양수산국·도시주택국·교통건설국·문화체육국·관광개발국·복지여성국·보건의료국·교육관광국·농정국·환경산림국</u>-----                      -----.</p> <p>② (현행과 같음)</p>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 5. (생 략)</p> <p><u>&lt;신 설&gt;</u></p> <p>6. ~ 7. (생 략)</p> <p>8. 교육 정책 및 지원, 대학협력,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p> <p>9. (생 략)</p>	<p>제6조(기획조정실) ----- -----.</p> <p>1. ~ 5. (현행과 같음)</p> <p>5의2.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p> <p>6. ~ 7.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9. (현행과 같음)</p>
<p>제6조의4(산업통상국) <u>산업통상국장</u>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 2. (생 략)</p> <p><u>&lt;신 설&gt;</u></p> <p>5.·6. 삭 제</p> <p><u>7. 통상 진흥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u></p>	<p>제6조의4(산업국) <u>산업국장</u>----- -----.</p> <p>1. ~ 2. (현행과 같음)</p> <p>2의2.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u>&lt;삭 제&gt;</u></p>
<p>제6조의6(경제기업국) <u>경제기업국장</u>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경제 및 일자리, 산업인력 정책에 관한 사항</p> <p>2. <u>기업정책 및 지원</u>에 관한 사항</p> <p>3. (생 략)</p> <p>4. 사회적 경제정책 및 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p> <p>5. 삭제</p> <p>6. 노사협력, 노동복지 등 노사지원에 관한 사항</p>	<p>제6조의6(경제통상국) <u>경제통상국장</u>----- -----.</p> <p>1. 경제 및 기업정책·지원-----</p> <p>2. <u>통상 진흥과 국제교류·협력</u>-----</p> <p>3. (현행과 같음)</p> <p>4. 노동사회정책 및 기업육성 등-----</p> <p><u>&lt;삭 제&gt;</u></p>
<p>제7조의3(자치행정국) <u>자치행정국장</u>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도 공무원 복무관리, <u>지방행정·자치분권 및 시군</u>의 지원·조정에 관한 사항</p> <p>2. ~ 5.(생 략)</p>	<p>제7조의3(행정국) <u>행정국장</u>----- -----.</p> <p>1. -----, <u>지방행정 및</u> -----</p> <p>2. ~ 5.(현행과 같음)</p>
<p>제9조(해양수산물국) 해양수산물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u>해양수산 및 항만정책, 수산식품산업·수산물안전</u>에 관한 사항</p> <p>2. <u>어업생산, 어업조정</u> 등 수산자원에 관한 사항</p>	<p>제9조(해양수산물국) ----- -----.</p> <p>1. <u>해양 및 항만정책·항만개발 등</u>-----</p> <p>2. <u>수산정책 및 수산지원·수산물안전</u> -----</p>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현 행	개 정 안
<p>3. (생 략)</p> <p>제10조(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 2. (생 략)</p> <p>3.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p> <p>4. ~ 5. 삭제</p> <p>6. 관광개발사업 기획·발굴·시행 등에 관한 사항</p> <p>7. (생 략)</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11조(복지보건국) 복지보건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생 략)</p> <p>2.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p> <p>3. (생 략)</p> <p>4.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p> <p>5. 감염병 관리 등 생활방역 추진에 관한 사항</p> <p>6. 식품의약품 안전 및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11조의2(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p> <p>2.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p> <p>3. 아동 및 청소년 정책에 관한 사항</p> <p>4.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p> <p>제12조(균형발전국) 균형발전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3. (현행과 같음)</p> <p>제10조(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 -----.</p> <p>1. ~ 2.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7. (현행과 같음)</p> <p>8. 전국체전기획에 관한 사항</p> <p>제10조의2(관광개발국) 관광개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2. 남해안 관광개발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p> <p>3. 관광개발사업 총괄, 기획·발굴·시행 등에 관한 사항</p> <p>제11조(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p> <p>1. (현행과 같음)</p> <p>2. 노인정책-----</p> <p>3.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7. 여성가족정책에 관한 사항</p> <p>8. 보육정책에 관한 사항</p> <p>제11조의2(보건의료국) 보건의료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p> <p>2. 의료정책 등에 관한 사항</p> <p>3. 감염병 관리 등 생활방역 추진에 관한 사항</p> <p>4. 식품 안전에 관한 사항</p> <p>제12조(교육균형국) 교육균형국장----- -----.</p>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현 행	개 정 안
<p>1. <u>지역균형발전, 인구정책, 지역개발, 서부민원 및 서부청사 운영에 관한 사항</u></p> <p>2. 3. <u>삭 제</u></p> <p>4. <u>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u></p> <p>5. <u>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도심개발 및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 등에 관한 사항</u></p> <p><u>제1절 서부지역본부</u></p> <p>제29조의2(설치) ① 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u>서부권 지역과 관련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타당성 확보와 현장에 맞는 정책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부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를 둔다.</u></p> <p>제29조의4(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p>1. <u>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u></p> <p>2. ~ 5. (생 략)</p> <p>제82조(설치)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제85조(설치)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제87조(소관사무) 자치경찰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p> <p>1. ~ 5. (생 략)</p> <p>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경상남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p> <p>7. ~ 17. (생 략)</p>	<p>1. <u>교육 정책 및 지원, 대학협력,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u></p> <p>2. <u>일자리, 산업인력·외국인인력 정책에 관한 사항</u></p> <p>3. <u>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u></p> <p>4. <u>인구대응, 균형발전, 지역개발, 공공기관이전, 서부민원 및 서부청사 운영에 관한 사항</u></p> <p><u>제1절 균형발전본부</u></p> <p>제29조의2(설치) ① ----- ----- -- <u>경남의 교육과 인력지원, 지역균형발전 정책</u> ----- -----<u>균형발전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u>-----.</p> <p>제29조의4(소관사무) -----.</p> <p>1. <u>교육인력국</u> -----</p> <p>2. ~ 5. (현행과 같음)</p> <p>제82조(설치) <u>법 제129조</u>----- ----- -----.</p> <p>제85조(설치) <u>법 제129조</u>----- ----- -----.</p> <p>제87조(소관사무)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 <u>협의 및 같은 법 제30조제4항</u> -----</p> <p>7. ~ 17. (현행과 같음)</p>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2024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의 신설, 사무조정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4조제1항제2호의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장 재 혁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④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제3조의2(소방공무원의 배치)** 제3조제1항의 소방기관 및 같은 조 제4항의 소방본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 등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본부[본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제9조(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2(시·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① 시·도는 별표 1에 따른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실·국·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도는 제1항에 따라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로 설치한 실·국·본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삭제 또는 추가로 설치한 실·국·본부의 폐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그 설치 내용,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조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10조(시·도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도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시·도의 과·담당관 등의 설치)** 시·도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의2(시·도자치경찰위원회)**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을 정할 때에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 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 경상남도규칙 제 호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소통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을 “공보관, 홍보담당관 및 미래전략추진단”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소통담당관)”을 “(공보관)”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 중 “소통담당관”을 “공보관”으로 한다.

제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6(미래전략추진단) ① 미래전략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미래전략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

1. 도정 정책개발·연구
2. 미래전략 과제 발굴 및 미래유망산업 대응전략 구상
3. 경남 미래비전 수립 및 관리, 미래전략 네트워크 운영
4. 주요 정책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도정 반영

제7조제1항 중 “법무담당관, 교육인재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을 “법무담당관, 청년소통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예산담당관, 교육인재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을 “예산담당관, 청년소통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제12호를 삭제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정 종합개발계획 수립·조정

제7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청년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2. 청년정책 신규시책 발굴 추진
3. 경상남도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 네트워크 구성 운영
4.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된 사항

제7조의4의 제목 “(산업통상국)”을 “(산업국)”으로 하고, 제1항 중 “산업통상국”을 “산업국”으로 하고, “산업정책과, 전략산업과, 미래산업과, 에너지산업과 및 국제통상과”를 “산업정책과, 주력산업과, 미래산업과, 에너지산업과”로 한다.

제7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산업정책과장, 주력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7조의4제3항 중 제21호부터 제25호까지를 삭제한다.

제7조의4제4항 중 “전략산업과장”을 “주력산업과장”으로 하고,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의4제6항 중 제16호부터 제22호까지를 신설한다.

16. ICT융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7. 정보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8.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지원
19. ICT 및 소프트웨어 산업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20.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1. 반도체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2. AI 및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7조의4제10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6의 제목 “(경제기업국)”을 “(경제통상국)”으로 하고, 제1항 중 “경제기업국”을 “경제통상국”으로 하며, “경제인력과, 기업정책과, 소상공인정책과 및 사회경제노동과”를 “경제기업과, 국제통상과, 소상공인정책과 및 사회경제노동과”로 하고, 제2항 중 “경제인력과장, 기업정책과장, ”을 “경제기업과장, 국제통상과장”으로 한다.

제7조의6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경제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단위 경제발전 계획의 수립·지도
3. 지역경제발전방안 연구 및 지원
4. 경제활동 관련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5. 서민금융 안정 및 지원, 대부업 관리에 관한 사항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7. 물가 및 소비자보호 종합대책 수립 조정
8. 기업육성을 위한 종합기획·조정
9. 벤처기업 육성 지원
10.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11.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2.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 및 계열화 촉진사업 추진
13.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
14.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15.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관련 사항
16. 기업활동(경제행정) 규제완화 및 애로해소협의회 운영
17. 수출입 등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18. 기업방문 애로 청취 등 기업애로 해소에 관한 사항
19. 기업활동 관련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20. 지역 산업디자인 육성 종합계획 수립
21.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및 육성
22. 지역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 지원
23. 경제자유구역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의6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시장조사 및 개척사업 총괄
2. 무역사절단 및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3. 중소기업제품 수출상담 지원
4. 무역진흥시책 종합기획·조정
5. 수출진흥, 수출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농수산물 해외 수출 마케팅 업무 총괄
7. 국내외 무역정보 및 해외시장 동향수집
8.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확인 등에 관한 사항
9. 국제교류 협력 총괄 조정

10.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
11. 공무국외여행 관련 사항 및 외국인 영접 안내
12. 교민행정의 종합 기획
13. 국제관계 의전행사 지원
14. 자치단체 국제화 시책 개발·연구
15. 민간단체 국제교류사업 지원
16. 도정의 국제 홍보 및 자료수집

제8조의3의 제목“(자치행정국)”을“(행정국)”으로 하고, 제1항 중“자치행정국”을“행정국”으로 한다.

제8조의3제3항 중 제14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수산자원과”를“수산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수산자원과장”을“수산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2호부터 제3호까지 삭제하고,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삭제한다.

제10조제4항 중“수산자원과장”를“수산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 신설하고,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 신설하며,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삭제한다.

- 1의2. 어촌계 지도·육성 및 수산단체 지도
- 1의3. 수산안전기술원 운영관리·지도
- 1의4. 귀어 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의5. 귀어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 7의2. 수산물 수출 종합계획 수립
- 7의3. 수산물 가공·유통 등 수산식품산업 및 수산물안전에 관한 사항
- 7의4. 수산물 시장개척 및 유통 알선·지도

제10조제5항 중 제7호 중“어촌 및 어촌관광자원 개발사업”을“어촌 개발사업”으로 하고, 및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삭제하며, 제16호를 삭제하고, 제18호부터 제20호를 신설한다.

18. 수산자원조성사업 계획 수립
19.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관한 사항
20. 인공어초 시설사업

제11조의 제목“(문화관광체육국)”을“(문화체육국)”으로 하고, 제1항 중“문화관광체육국”을“문화체육국”으로 하며,“관광진흥과, 관광개발과, 체육지원과 및 전국체전기획단”을“체육지원과 및 전국체전기획단”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관광진흥과장, 관광개발과장 및 체육지원과장”을“체육지원과장 및 전국체전기획단장”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관광개발국에 두는 과) ① 관광개발국에 관광정책과, 남해안과, 관광개발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관광정책과장, 남해안과장, 관광개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행정 및 관광개발 종합기획·조정
- 1의2.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
- 1의3.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등 추진에 관한 사항
- 1의4. 관광지 지정·개발 및 민간유치계획 수립·추진
2.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광사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관광안내 및 홍보
5. 관광객 유치 및 관광루트 개발
6. 관광종사원 지도·교육
7. 관광수용태세 관련 지원업무
8. 종합 유원시설업 및 그 밖에 유기업장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대규모 관광행사 유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관광상품·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1. 국내외 관광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2.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13. 문화예술 및 관광관련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
14. MICE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5. 국내외 전시회 유치 및 개최 지원
16. 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시설관리 포함)
17. 국내외 컨벤션 마케팅 및 홍보
18. 한국국제기계박람회 개최
19. 국내외 회의·이벤트 발굴, 유치 및 개최 지원
20. 컨벤션 뷰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관광행정에 관한 사항

④ 남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해안관광 기반조성 총괄 기획·조정 및 계획 수립
2. 남해안개발청 설립 추진 계획 수립 및 용역 추진, 대외 협력
3. 항공관광, 크루즈 관광 분야 기획·지원, 인프라 구축
4. 어촌관광자원 개발사업
5. 남해안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및 남해안 선도사업에 관한 사항
6.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및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조성에 관한 사항
7.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
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해양레저산업 클러스터 조성, 육성전략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10. 해양레포츠 및 요트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해수욕장에 관한 사항
12. 해양치유 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3. 섬 연결도로 및 연계 도로망 구축 계획 수립·추진
14. 섬 연결도로 예타(면제)사업 반영 및 국비 지원 관련 업무
15. 섬 연결 해상교량 관광자원화 기획 및 인프라 구축 지원
16. 남해안아일랜드하이웨이 구축 시군·유관기관 협력
17. 남해안아일랜드하이웨이 연계 주변 관광개발 인프라 구축 지원
18. 섬 관광 활성화 사업 발굴·추진, 제도 개선 발굴·건의

⑤ 관광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역권 관광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2. 관광프로젝트 사업 기획·발굴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3. 관광단지 지정·개발 및 민간유치계획 수립·추진
4. 관광분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 관광자원 개발사업 민자 등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목관광단지개발사업 추진
7.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구축 기반시설 확충
8.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운영
9. 민관협력사업 통합수익관리법인 운영 및 지원
10. 지리산 및 바다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사항
11. 지리산권, 백두대간권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제목 “(복지보건국)”을 “(복지여성국)”으로 하고, 제1항 중 “복지보건국”을 “복지여성국”으로 하며,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및 식품의약과”를 “복지정책과, 노인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및 보육정책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보건행정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및 식품의약과장”을 “복지정책과장, 노인정책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및 보육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에 제3의2호부터 제3의4호까지를 신설하며, 같은 항제16호를 삭제한다.

- 3의2. 보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3의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 3의4. 보훈단체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제4항 중 “노인복지과장”을 “노인정책과장”으로 하고, 제1호 중 “노인복지 및 보훈에 관한”을 “노인복지에 관한”으로 하고, 제1의3호부터 제1의4호까지를 삭제하며, 제1의5호를 신설한다.

- 1의5. ICT연계 스마트 복지서비스 추진에 관한 사항

제1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정책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2.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3. 양성평등기금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정책 연구기관 지도 감독
6. 여성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
7. 여성인권 및 지위향상 정책 추진
8. 가정·성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9.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0.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11. 양성평등정책 분석 및 평가
12. 여성(복지)회관 운영 지도
13.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14. 여성일자리 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5. 건강가정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16. 가정 및 가족문제 예방·해결 등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7. 한부모가정 및 미혼모 자립 지원
18.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9.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통합에 관한 사항

제12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산지원시책 추진
2. 모자보건사업계획 수립 추진
3.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4.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원 지도·감독
5. 직장 및 민간 보육시설 설치 지원
6.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7.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아동 보호 관리
8. 불우아동 결연기금 관리
9. 요보호아동 발생예방 및 보호관리
10. 아이돌봄 원스톱 지원 및 돌봄공백해소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 육성사업의 종합 기획·추진
12. 청소년시설 설치 및 지원
1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
14.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지원

16.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17.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18.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

제12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여성가족국)”을 “(보건의료국)”으로 하고, 제1항 중 “여성가족국”을 “보건의료국”으로 하며, “여성정책과,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과 및 청년정책과”를 “보건행정과, 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 및 식품위생과”로 한다.

12조의2제2항 중 “여성정책과장, 가족지원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및 청년정책과장”을 “보건행정과장, 의료정책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및 식품위생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2. 보건소 등(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도·감독
3. 건강증진 업무 종합기획 및 추진
4. 건강관리협회 지도
5. 정신보건 업무 종합 기획 및 추진
6. 정신보건 시설 인가·지도·관리
7. 공공병원 설립 등에 관한 사항
8. 의료취약지역(섬)에 대한 병원선 운영·관리

12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 및 의약품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지방의료원 지도·감독
3.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의료기관 운영 등 지도·감독 관리
5.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6.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감독
7. 불량 의약품, 의료용구, 화장품 등 지도·감독
8. 의료법인 허가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9. 마약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10.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11. 지역응급의료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2.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에 관한 사항
13. 한방의료기관 및 한약업소 지도·감독

12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방역 등 감염병 관리에 관한 전반 계획 수립·시행
2. 생활방역 교육 및 홍보
3. 감염병 이후 중·장기 제도개선 이행과제 점검 총괄
4.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역학조사 계획 수립
5. 감염병 유행 및 집단발생 대응
6. 신종감염병 및 해외유입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 및 예방관리
7. 결핵·한센병·성병 등 감염성 질환의 예방 관리 및 방역
8. 방역·소독 지원에 관한 사항
9. 감염병 관련 단체 지도·관리
10. 감염병 통계 관리 및 유행실태 분석
11. 감염병 전담의료기관 및 격리병상 운영·관리
12. 선별진료소 운영 및 지원
13. 공공의료기관 운영 등 지도·감독 관리
14.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12조의2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식품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식중독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3. 국민건강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4.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감독
5. 식품제조업소 및 소비자 유통식품 지도·감독

제13조의 제목 “(균형발전국)”을 “(교육균형국)”으로 하고, 제1항 중 “균형발전국”을 “교육균형국”으로 하며, “균형정책과, 우주항공산업과 및 지역발전과”를 “교육인재과, 인력지원과, 우주항공산업과 및 지역발전과”로 한다.

제13조 제2항 중 “균형정책과장, 우주산업과장 및 지역발전과장”을 “교육인재과장, 인력지원과장, 우주항공산업과장 및 지역발전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인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균형발전본부, 교육인력국 소관 행정 총괄에 관한 사항
2. 교육정책 및 교육청 정책협약에 관한 사항
3. 교육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4. 교육혁신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5. 시군 맞춤형 교육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6. 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7. 도립대학 및 도내 대학지원, 산학협력 총괄 등에 관한 사항
8. 대학생 학자금 이자 및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
9. 남명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유학생의 도내 대학 유치·알선 지원
11. 대학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2. 대학 평생교육지원체제 지원에 관한 사항
13.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4.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인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5. 기업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6.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 인턴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8. 일자리 공시제에 관한 사항
9.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
10.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총괄
11. 일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12. 일자리 영향평가 및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13. 산업인력 수급 등 산업인력정책, 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인력 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노동자 지원계획, 입국비자 등에 관한 사항
16. 광역비자 등 비자 시범사업, 이민정책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우주항공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 및 항공산업 육성 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우주 및 항공산업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주 및 항공산업 특화단지 조성 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4. 우주 및 항공산업 유치에 관한 사항
5. 우주 및 항공산업 인프라, 연구개발, 이벤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주항공청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지역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신규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수립 및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소멸대응기금 및 지속가능발전 업무에 관한 사항
4. 균형발전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5. 도 및 정부 균형발전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6. 균형발전사업평가 및 경상남도 균형발전계획·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7. 지역혁신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지역균형발전 대상지 선정 및 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10. 지방분권 업무 총괄
11. 혁신도시 시즌2 운영에 관한 사항
12.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13.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사항
14.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에 관한 사항
15.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총괄
16.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협력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7.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사항
18. 도내 공공기관 이전 계획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서부청사 기능 조정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20. 초전신도심 개발계획 수립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서부권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22. 서부경남 시·군 전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3. 낙후지역 지정, 소도읍 육성 지원, 거점지역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4.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5.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26. 동서통합지대 조성에 관한 사항
27. 내륙권(백두대간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28. 서부지역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29. 본청 소관 민원의 서부청 연계 처리에 관한 사항
30. 서부청사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31. 서부청사 행정지원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2. 균형발전본부 내 각종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제13조 제7항 및 제8항을 삭제한다.

제15조의2제3항 중 제8호부터 제9호까지를 삭제한다.

제15조의2제9항 중 “119특수구조단장”을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제18조에 제6호부터 제7호까지를 신설한다.

6. 농업기술원 이전 추진에 관한 사항

7. 농업기술원 청사 이전 관련 용역사업, 예산 등 행정절차 추진

제30조의2제3항 중 제10호부터 제11호까지를 삭제한다.

제4장제1절 중 “서부지역본부”를 “균형발전본부”로 한다.

제35조의2 중 “서부지역본부장”을 “균형발전본부장”으로 한다.

제46조의4제1항 중 “수산물관리과·기술지원과·수산물안전관리센터”를 “수산물관리과·수산물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기술지원과장은 지방해양수산물사무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수산물안전관리센터장은 지방해양수산물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물연구관”을 “수산물검사과장은 지방해양수산물사무관, 지방어촌지도관 또는 지방해양수산물연구관”으로 한다.

제46조의4제3항 중 제11호부터 제12호까지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22호를 신설한다.

13. 수산기술의 보급 및 어업경영 지도

14.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15. 양식산업 분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어장 예비관찰 및 수산 재해 예방 지도

17. 수산 양식장 적지 조사에 관한 사항

18. 연구교습어장 운영에 관한 사항

19. 기술지도선 운영 및 관리

20. 배합사료 직불제에 관한 사항

21.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22. 현장애로 기술 개발

제46조의4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5항을 삭제한다.

④ 수산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산물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산생물 병성감정기관 운영

4.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 관한 사항

5. 수산물 방사능검사에 관한 사항

6. 수산생물 질병 및 방역 지도에 관한 사항

7.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8. 패류독소 검사에 관한 사항

9.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소통담당관”을 “공보관”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인력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 복지보건국장, 여성가족국장 ”을 “행정국장, 복지여성국장, 보건의료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경상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경제기업국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별표 2]**

**119안전센터 등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

서 별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진 주 소 방 서	119구조대	진주시 동진로 249	진주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상대119안전센터	진주시 동진로 249	진주시 상대·하대·상평동 일원
	중앙119안전센터	진주시 북장대로64번길 14	진주시 성북·중앙·상봉동 일원
	천전119안전센터	진주시 강남로167번길 16	진주시 천전동, 내동면 일원
	평거119안전센터	진주시 순환로 565	진주시 평거·이현·신안·관문동 일원
	수곡119지역대	진주시 수곡면 곤수로 899	진주시 명석·수곡·대평면 일원
	문산119안전센터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79	진주시 충무공동, 문산읍, 금곡·진성면 일원
	반성119지역대	진주시 일반성면 동부로 2060번길 21	진주시 지수·일반성·이반성·사봉면 일원
	금산119안전센터	진주시 금산면 송백로 477	진주시 초장동, 금산·집현·미천·대곡면 일원
	정촌119안전센터	진주시 정촌면 뿌리산단로 2	진주시 가호동, 정촌면 일원
통 영 소 방 서	119구조대	통영시 광도면 죽림4로 49	통영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소방정대	통영시 도남로 257	한산·사랑·육지면(육지도 제외), 경상남도 남해안 일원
	죽림119안전센터	통영시 광도면 죽림4로 49	통영시 도산·용남·광도면 일원
	무전119안전센터	통영시 원문로 71	통영시 무전·북신·정량동 일원
	서호119안전센터	통영시 중앙로 91-8	통영시 도천·명정·중앙동 일원
	도남119안전센터	통영시 도남로 257	통영시 미수동, 봉평동, 산양읍 일원
	육지119지역대	통영시 육지면 육지일주로 95-11	육지면(육지도) 일원
사 천 소 방 서	119구조대	사천시 진삼로 212	사천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삼천포119안전센터	사천시 동금로 51	사천시 동서·선구·동서금·별용·향촌·남양동 일원
	사천119안전센터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사천시 사천읍, 정동·축동면 일원
	사남119안전센터	사천시 사남면 공단2로 53	사천시 용현·사남면 일원
	곤양119안전센터	사천시 곤양면 곤북로 64	사천시 곤양·곤명 일원
서포119지역대	사천시 서포면 서포로 221	사천시 서포면 일원	
김 해 동 부 소 방 서	119구조대	김해시 김해대로 2507	김해동부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삼정119안전센터	김해시 김해대로 2507	김해시 활천·삼안·불암동 일원
	동상119안전센터	김해시 구지로 179	김해시 동상·회현·부원동 일원
	내외119안전센터	김해시 내외로 77	김해시 내외·칠산서부동 일원
	상동119안전센터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637	김해시 상동면 일원
	생림119안전센터	김해시 생림면 봉림로 106	김해시 생림면 일원
	북부119안전센터	김해시 해반천로 166	김해시 북부동 일원
	대동119안전센터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41번길 19	김해시 대동면 일원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서 별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김 해 서 부 소 방 서	119구조대	김해시 진례면 서부로 730	김해서부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진례119안전센터	김해시 진례면 서부로 730	김해시 진례면 일원
	장유119안전센터	김해시 변화2로 12	김해시 장유1·장유2동 일원
	진영119안전센터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 4	김해시 진영읍 일원
	주촌119안전센터	김해시 주촌면 주선로 29	김해시 주촌면 일원
	한림119안전센터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401번길 50	김해시 한림면 일원
	올하119안전센터	김해시 올하4로 112	김해시 장유3동 일원
밀 양 소 방 서	119구조대	밀양시 밀양대공원로 66	밀양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교동119안전센터	밀양시 밀양대공원로 66	밀양시 내일·내이·교·삼문동, 부북·상동면일원
	가곡119안전센터	밀양시 용두로 5	밀양시 가곡동, 상남면 일원
	하남119안전센터	밀양시 하남읍 명례로 108	밀양시 하남읍, 초동면 일원
	삼랑진119안전센터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로 16-3	밀양시 삼랑진읍 일원
	산동119안전센터	밀양시 산외면 단산길 2-7	밀양시 산외·산내·단장면 일원
	무안119안전센터	밀양시 무안면 사명로 541	밀양시 무안·청도면 일원
거 제 소 방 서	119구조대	거제시 진목로 1	거제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옥포119안전센터	거제시 진목로 1	거제시옥포1·옥포2·아주동일원
	장승포119안전센터	거제시 능포로 77	거제시 장승포·능포동 일원
	신현119안전센터	거제시 계룡로 52	거제시 고현(13~14통, 19~31통, 33통제외)·상문·장평동 일원
	거제119안전센터	거제시 거제면 거제남서로 3429	거제시 거제·둔덕면 (상둔·시목·산방리) 일원
	연초119안전센터	거제시 연초면 거제북로 1	거제시 연초면, 수양·고현동(13~14통, 19~31통, 33통) 일원
	하청119지역대	거제시 하청면 사환2길 86	거제시 하청·장목면 일원
	남부119안전센터	경상남도 거제시 저구해안길 16	거제시 동부·남부·일운면 일원
	사등119안전센터	거제시 사등면 덕호해안길 63	거제시 사등·둔덕면 (상둔·시목·산방리 제외) 일원
양 산 소 방 서	동부119출장소	양산시 덕명로 230	양산시 소주·서창·평산·덕계동 일원
	119구조대	양산시 물금읍 황산로 719	양산소방서 관할 구역(소주·서창·평산·덕계동 제외) 일원
	동부119구조대	양산시 덕명로 230	양산시 소주·서창·평산·덕계동 일원
	범어119안전센터	양산시 물금읍 황산로 719	양산시 물금읍(물금·가촌리·중산리 제외), 강서동 일원
	원동119지역대	양산시 원동면 원동로 1596	양산시 원동면 일원
	중앙119안전센터	양산시 신기로 13	양산시 중앙(북부·명곡동)·삼성동 일원
	웅상119안전센터	양산시 웅상대로 1120	양산시 소주·서창동 일원
	하북119안전센터	양산시 하북면 양산대로 2255-38	양산시 하북면 일원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서 별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양 산 소 방 서	중부119안전센터	양산시 양산역6길 27	양산시 중양동(중부·남부·다방동), 양주동, 동면(가산리 제외) 일원
	평산119안전센터	양산시 내연4길 9	양산시 평산·덕계동 일원
	상북119안전센터	양산시 석계로 37	양산시 상북면 일원
	물금119안전센터	양산시 물금읍 물금 1길 11	양산시 물금읍(물금·가촌리·증산리), 동면(가산리) 일원
의 령 소 방 서	119구조대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108-17	의령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의령119안전센터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108-17	의령군 의령읍, 화정·가례·칠곡·대의면 일원
	부림119안전센터	의령군 부림면 대한로 1666	의령군 부림·낙서·봉수·궁류면 일원
	정곡119안전센터	의령군 정곡면 의합대로 984-12	의령군 유곡·용덕·정곡·지정면 일원
함 안 소 방 서	119구조대	함안군 가야읍 선왕길 59	함안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가야119안전센터	함안군 가야읍 선왕길 59	함안군 가야읍, 함안·산인·여항면 일원
	대산119지역대	함안군 대산면 함의로 940	함안군 대산면 일원
	칠원119안전센터	함안군 칠원읍 용산2길 121	함안군 칠원읍, 칠북면 일원
	칠서119지역대	함안군 칠서면 신계길 69	함안군 칠서면 일원
	군북119안전센터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 760	함안군 군북면 일원
	법수119지역대	함안군 법수면 법수로 220	함안군 법수면 일원
창 녕 소 방 서	119구조대	창녕군 대지면 우포2로 1097	창녕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창녕119안전센터	창녕군 대지면 우포2로 1097	창녕군 창녕읍, 고암·대지·유어면 일원
	대합119지역대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3길 43	창녕군 성산·대합면 일원
	이방119지역대	창녕군 이방면 뒷골길 5	창녕군 이방면 일원
	남지119안전센터	창녕군 남지읍 동포로 64	창녕군 남지읍, 장마면 일원
	영산119안전센터	창녕군 영산면 영산장마로 697	창녕군 영산·계성·도천면 일원
	부곡119안전센터	창녕군 부곡면 원양로 184	창녕군 부곡·길곡면 일원
고 성 소 방 서	119구조대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2670	고성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고성119안전센터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2670	고성군 고성읍, 대가·상리면 일원
	하일119지역대	고성군 하일면 학동로 9	고성군 삼산·하일·하이면 일원
	회화119안전센터	고성군 회화면 영화로 2211	고성군 구만·회화·마암면 일원
	영오119지역대	고성군 영오면 문산로 14-10	고성군 영오·개천·영현면 일원
	거류119안전센터	고성군 거류면 봉암1길 9	고성군 동해·거류면 일원
남 해 소 방 서	119구조대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 81	남해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남해119안전센터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 81	남해군 남해읍, 서·고현·설천면 일원
	남면119지역대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788-10	남해군 남면 일원
	삼동119안전센터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795	남해군 삼동·창선·이동면 일원
	미조119안전센터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 486번길 19	남해군 미조·상주면 일원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서 별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하 동 소 방 서	119구조대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15	하동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금성119안전센터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15	하동군 금성·금남·고전면 일원
	하동119안전센터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로 169	하동군 하동읍, 적량면 일원
	횡천119지역대	하동군 횡천면 횡보길 6	하동군 횡천·청암면 일원
	진교119안전센터	하동군 진교면 진양로 27	하동군 진교·양보면 일원
	옥종119지역대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856-6	하동군 옥종·북천면 일원
	화개119안전센터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58	하동군 화개·악양면 일원
산 청 소 방 서	119구조대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76-7	산청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산청119안전센터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76-7	산청군 산청읍, 오부·생초·금서·차황면 일원
	단성119안전센터	산청군 단성면 사적단로 447-8	산청군 단성·신안·삼장·시천면 일원
	신등119지역대	산청군 신등면 신차로 492	산청군 생비량·신등 일원
	산악구조대	산청군 시천면 남명2길 7	산청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합 양 소 방 서	119구조대	함양군 함양읍 인당강변길 58	함양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함양119안전센터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161-41	함양군 함양읍, 마천·휴천·유림면 일원
	백전119지역대	함양군 백전면 구산대안로 10-5	함양군 백전·병곡면 일원
	안의119안전센터	함양군 안의면 금성길 19	함양군 안의·지곡·수동면 일원
	서상119지역대	함양군 서상면 대남로 16	함양군 서상·서하면 일원
거 창 소 방 서	119구조대	거창군 거창읍 거합대로 3324	거창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대평119안전센터	거창군 거창읍 거합대로 3324	거창군 거창읍, 남상면 일원
	신원119지역대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101	거창군 신원면 일원
	웅양119지역대	거창군 웅양면 웅양로 1456	거창군 주상·웅양면 일원
	위천119안전센터	거창군 위천면 원학길 321	거창군 위천·마리·북상·고제면 일원
	가조119안전센터	거창군 가조면 마상3길 32	거창군 남하·가조·가북면 일원
합 천 소 방 서	119구조대	합천군 합천읍 인덕로 2453	합천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합천119안전센터	합천군 합천읍 인덕로 2453	합천군 합천읍, 울곡·대양·대병·용주면 일원
	초계119안전센터	합천군 초계면 양동로 6-16	합천군 초계·적중·쌍책면 일원
	덕곡119지역대	합천군 덕곡면 울지2길 13-9	합천군 청덕·덕곡면 일원
	북부119안전센터	합천군 야로면 월광2길 5	합천군 묘산·봉산·가야(구원리, 치인리 제외)·야로면 일원
	해인사119지역대	합천군 가야면 가야산로 1836	합천군 가야면(구원리, 치인리) 일원
합 천 소 방 서	삼가119안전센터	합천군 삼가면 삼가로 287	합천군 삼가·가회·쌍백면 일원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보좌기관) ① 도지사 밑에 <u>소통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을 둔다.</u></p> <p>② ~ ④ (생략)</p> <p>제5조(소통담당관) ① <u>소통담당관은</u>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p> <p>② <u>소통담당관은</u>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p> <p>1. ~ 8. (생략)</p> <p>&lt;신설&gt;</p> <p>제7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p> <p>① <u>기획조정실에</u>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교육인재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을 둔다.</p> <p>② 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u>예산담당관, 교육인재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은</u>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법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p> <p>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9. (생략)</p> <p>10. 도정 종합개발계획 수립·조정 및 도정의 정책개발·연구</p> <p>11. (생략)</p>	<p>제4조(보좌기관) ① ----- <u>공보관, 홍보담당관 및 미래전략추진단</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5조(공보관) ① <u>공보관</u> -----.</p> <p>② <u>공보관</u> -----.</p> <p>1. ~ 8. (현행과 같음)</p> <p>제5조의6(미래전략추진단) ① <u>미래전략추진단장은</u>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p> <p>② <u>미래전략추진단장은</u>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p> <p>1. 도정 정책개발·연구</p> <p>2. 미래전략 과제 발굴 및 미래유망산업 대응전략구상</p> <p>3. 경남 미래비전 수립 및 관리, 미래전략 네트워크구성</p> <p>4. 주요 정책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p> <p>5. 국내외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도정 반영</p> <p>제7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p> <p>① -----<u>법무담당관, 청년소통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u>-----.</p> <p>② ----- -----, <u>예산담당관, 청년소통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u>-----.</p> <p>③ -----</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도정 종합개발계획 수립·조정</p> <p>11. (현행과 같음)</p>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현 행	개 정 안
<p>12. 주요 정책 관련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p> <p>13. ~ 18. (생략)</p> <p>④ ~ ⑧ (생략)</p> <p>⑨ <u>교육인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1. <u>교육정책 및 교육청 정책협의에 관한 사항</u></p> <p>2. <u>교육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u></p> <p>3. <u>교육혁신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u></p> <p>4. <u>시군 맞춤형 교육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u></p> <p>5. <u>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u></p> <p>6. <u>도립대학 및 도내 대학지원, 산학협력 총괄 등에 관한 사항</u></p> <p>7. <u>대학생 학자금 이자 및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u></p> <p>8. <u>남명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u></p> <p>9. <u>외국인 유학생의 도내 대학 유치·알선 지원</u></p> <p>10. <u>대학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u></p> <p>11. <u>대학 평생교육지원체제 지원에 관한 사항</u></p> <p>12. <u>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u></p> <p>13. <u>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u></p> <p>14. <u>그 밖에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u></p> <p>⑩ (생략)</p> <p>제7조의4(산업통상국에 두는 과) ① <u>산업통상국에 산업정책과, 전략산업과, 미래산업과, 에너지산업과 및 국제통상과를 둔다.</u></p> <p>② <u>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하고, 산업정책과장, 전략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및 국제통상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u></p> <p>③ <u>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1.~ 20. (생략)</p> <p>21. <u>ICT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총괄</u></p> <p>22. <u>정보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u></p> <p>23. <u>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지원</u></p> <p>24. <u>삭제</u></p> <p>25. <u>ICT 및 소프트웨어 산업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u></p>	<p>&lt;삭제&gt;</p> <p>13. ~ 18. (현행과 같음)</p> <p>④ ~ ⑧ (현행과 같음)</p> <p>⑨ <u>청년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1. <u>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u></p> <p>2. <u>청년정책 신규시책 발굴 추진</u></p> <p>3. <u>경상남도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 네트워크 구성 운영</u></p> <p>4. <u>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u></p> <p>5. <u>청년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된 사항</u></p> <p>⑩ (현행과 같음)</p> <p>제7조의4(산업국에 두는 과) ① <u>산업국에 산업정책과, 주력산업과, 미래산업과, 에너지산업과-----</u></p> <p>-----.</p> <p>② <u>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산업정책과장, 주력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u></p> <p>③ -----.</p> <p>1.~ 20.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lt;삭제&gt;</p> <p>&lt;삭제&gt;</p> <p>&lt;삭제&gt;</p> <p>&lt;삭제&gt;</p>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현           행	개           안
<p>④ <u>전략산업과</u>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20. (생 략)</p> <p>&lt;신 설&gt;</p> <p>⑤ 삭제</p> <p>⑥ <u>미래산업과</u>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15. (생 략)</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⑦ ~ ⑨ (생 략)</p> <p>⑩ <u>국제통상과</u>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해외시장조사 및 개척사업 총괄</p> <p>2. 무역사절단 및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p> <p>3. 중소기업제품 수출상담 지원</p> <p>4. 무역진흥시책 종합기획·조정</p> <p>5. 수출진흥, 수출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p> <p>6. 국내외 무역정보 및 해외시장 동향수집</p> <p>7.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확인 등에 관한 사항</p> <p>8. 국제교류 협력 총괄 조정</p> <p>9.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p> <p>10. 공무국외여행 관련 사항 및 외국인 영접 안내</p> <p>11. 교민행정의 종합 기획</p> <p>12. 국제관계 의진행사 지원</p> <p>13. 자치단체 국제화 시책 개발·연구</p> <p>14. 민간단체 국제교류사업 지원</p> <p>15. 도정의 국제 홍보 및 자료수집</p> <p>제7조의6(경제기업국에 두는 과)</p> <p>① <u>경제기업국에 경제인력과, 기업정책과, 소상공인정책과 및 사회경제노동과를 둔다.</u></p>	<p>④ <u>주력산업과</u>장-----.</p> <p>1. ~ 20. (현행과 같음)</p> <p><u>21.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u></p> <p>⑥ -----.</p> <p>1. ~ 15. (현행과 같음)</p> <p>16. ICT융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p> <p>17. 정보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p> <p>18.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지원</p> <p>19. ICT 및 소프트웨어 산업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p> <p>20.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p> <p>21. 반도체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p> <p>22. AI 및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p> <p>⑦ ~ ⑨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제7조의6(경제통상국에 두는 과)</p> <p>① <u>경제통상국에 경제기업과, 국제통상과, 소상공인정책과 및 사회경제노동과-----.</u></p>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현 행	개 정 안
<p>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u>경제인력과장, 기업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및 사회경제노동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u></p> <p>③ <u>경제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자리 및 산업인력 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li> <li>2. ~ 5. 삭제</li> <li>6.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li> <li>7.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li> <li>8.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li> <li>9. 기업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li> <li>10. 취업 알선,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11. 공공기관 인턴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li> <li>12. 일자리 공시제에 관한 사항</li> <li>13.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li> <li>14.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총괄</li> <li>15. 일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li> <li>16. 일자리 영향평가 및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li> <li>17. ~ 19. 삭제</li> <li>20. 지역단위 경제발전 계획의 수립·지도</li> <li>21. 지역경제발전방안 연구 및 지원</li> <li>22. 지역단위 경제동향 및 경제지표 분석 관리</li> <li>23. 경제활동 관련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li> <li>24. 서민금융 안정 및 지원, 대부업 관리에 관한 사항</li> <li>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li> <li>26. 물가 및 소비자보호 종합대책 수립 조정</li> <li>27. 경제자유구역 지원에 관한 사항</li> </ol> <p>④ <u>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 삭제</li> <li>3. 기업육성을 위한 종합기획·조정</li> <li>4. 벤처기업 육성 지원</li> <li>5.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li> <li>6.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li> <li>7.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 및 계열화 촉진사업 추진</li> <li>8.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li> </ol>	<p>② -----, <u>경제기업과장, 국제통상과장,</u> ----- -----.</p> <p>③ <u>경제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경제정책에 관한 사항</u></li> <li>2. <u>지역단위 경제발전 계획의 수립·지도</u></li> <li>3. <u>지역경제발전방안 연구 및 지원</u></li> <li>4. <u>경제활동 관련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u></li> <li>5. <u>서민금융 안정 및 지원, 대부업 관리에 관한 사항</u></li> <li>6.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u></li> <li>7. <u>물가 및 소비자보호 종합대책 수립 조정</u></li> <li>8. <u>기업육성을 위한 종합기획·조정</u></li> <li>9. <u>벤처기업 육성 지원</u></li> <li>10. <u>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u></li> <li>11. <u>환경개선에 관한 사항</u></li> <li>12. <u>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 및 계열화 촉진사업 추진</u></li> <li>13. <u>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u></li> <li>14. <u>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u></li> <li>15. <u>「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관련 사항</u></li> <li>16. <u>기업활동(경제행정) 규제완화 및 애로해소협의회 운영</u></li> <li>17. <u>수출입 등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u></li> <li>18. <u>기업방문 애로 청취 등 기업애로 해소에 관한 사항</u></li> <li>19. <u>기업활동 관련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u></li> <li>20. <u>지역 산업디자인 육성 종합계획 수립</u></li> <li>21. <u>산업디자인 개발지원 및 육성</u></li> <li>22. <u>지역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 지원</u></li> <li>23. <u>경제자유구역 지원에 관한 사항</u></li> </ol> <p>④ <u>국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해외시장조사 및 개척사업 총괄</u></li> <li>2. <u>무역사절단 및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u></li> <li>3. <u>중소기업제품 수출상담 지원</u></li> <li>4. <u>무역진흥시책 종합기획·조정</u></li> <li>5. <u>수출진흥, 수출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u></li> <li>6. <u>농수산물 해외 수출 마케팅 업무 총괄</u></li> <li>7. <u>국내외 무역정보 및 해외시장 동향수집</u></li> <li>8. <u>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확인 등에 관한 사항</u></li> </ol>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현 행	개 정 안
<p>9.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p> <p>10.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관련 사항</p> <p>11. 기업활동(경제행정) 규제완화 및 애로해소협의회 운영</p> <p>12. 수출입 등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p> <p>13. 기업방문 애로 청취 등 기업애로 해소에 관한 사항</p> <p>14. 기업활동 관련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p> <p>15. 지역 산업디자인 육성 종합계획 수립</p> <p>16.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및 육성</p> <p>17. 지역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 지원</p> <p>⑤ ~ ⑨ (생 략)</p> <p>제8조의3(자치행정국에 두는 과)</p> <p>① <u>자치행정국에 행정과, 인사과, 세정과, 회계과 및 도민봉사과를 둔다.</u></p> <p>② (생 략)</p> <p>③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13. (생 략)</p> <p>14. 지방분권 업무 총괄</p> <p>15. ~ 32. (생 략)</p> <p>④ ~ ⑧ (생 략)</p> <p>제10조(해양수산국에 두는 과)</p> <p>① 해양수산국에 해양항만과, <u>수산자원과</u> 및 어촌발전과를 둔다.</p> <p>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해양항만과장 및 어촌발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u>수산자원과</u>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p> <p>③ 해양항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1의2. (생 략)</p> <p>2. 어촌계 지도·육성 및 수산단체 지도</p> <p>3. 수산안전기술원 운영관리·지도</p> <p>4. ~ 6. (생 략)</p> <p>7. 수산물 수출 종합계획 수립</p>	<p><u>9. 국제교류 협력 총괄 조정</u></p> <p><u>10.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u></p> <p><u>11. 공무국외여행 관련 사항 및 외국인 영접 안내</u></p> <p><u>12. 교민행정의 종합 기획</u></p> <p><u>13. 국제관계 의전행사 지원</u></p> <p><u>14. 자치단체 국제화 시책 개발·연구</u></p> <p><u>15. 민간단체 국제교류사업 지원</u></p> <p><u>16. 도정의 국제 홍보 및 자료수집</u></p> <p>⑤ ~ ⑨ (현행과 같음)</p> <p>제8조의3(행정국에 두는 과)</p> <p>① <u>행정국에 -----</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1. ~ 13.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15. ~ 32. (현행과 같음)</p> <p>④ ~ ⑧ (현행과 같음)</p> <p>제10조(해양수산국에 두는 과)</p> <p>① -----, <u>수산정책과</u>----- -----.</p> <p>② -----, ----- -----, <u>수산정책과</u>----- -----</p> <p>③ -----.</p> <p>1. ~ 1의2.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p>4. ~ 6.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현 행	개 정 안
8. 수산물 가공·유통 등 수산식품산업 및 수산물안전에 관한 사항	<삭 제>
9. 수산물 시장개척 및 유통 알선·지도	<삭 제>
10. ~ 26. (생 략)	10 ~ 26. (현행과 같음)
④ 수산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수산정책과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어촌계 지도·육성 및 수산단체 지도
<신 설>	1의3. 수산안전기술원 운영관리·지도
<신 설>	1의4. 귀어 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의5. 귀어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수산물 수출 종합계획 수립
<신 설>	7의3. 수산물 가공·유통 등 수산식품산업 및 수산물안전에 관한 사항
<신 설>	7의4. 수산물 시장개척 및 유통 알선·지도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14. 수산자원조성사업 계획 수립	<삭 제>
15.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관한 사항	<삭 제>
16. 인공어초 시설사업	<삭 제>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⑤ 어촌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어촌 및 어촌관광자원 개발사업	7. 어촌 개발사업
8. 해수욕장에 관한 사항	<삭 제>
9.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10. 해양레저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삭 제>
11. 해양레저산업 육성전략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12. 해양레저산업 기술 제고에 관한 사항	<삭 제>
13. 해양레포츠 및 요트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삭 제>
14. ~ 15. (생 략)	14. ~ 15. (현행과 같음)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현 행	개 정 안
<p>16. 해양치유 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p> <p>17. (생 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11조(문화관광체육국에 두는 과)</p> <p>① <u>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관광개발과, 체육지원과 및 전국체전기</u> <u>획단을 둔다.</u></p> <p>② 국장은 부이사관으로, 문화예술과장, 문화유산과장, 관광진흥과장, 관광개발과장 및 체육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p> <p>③ ~ ④ (생 략)</p> <p>⑤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광행정 및 관광개발 종합기획·조정</li> <li>1의2.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li> <li>1의3.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등 추진에 관한 사항</li> <li>1의4. 관광(단)지 지정·개발 및 민간유치계획 수립·추진</li> <li>2.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li> <li>3. 관광사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li> <li>4. 관광안내 및 홍보</li> <li>5. 관광객 유치 및 관광루트 개발</li> <li>6. 관광종사원 지도·교육</li> <li>7. 삭제</li> <li>8. 삭제</li> <li>9. 관광수용태세 관련 지원업무</li> <li>10. 종합 유원시설업 및 그 밖에 유기업장에 관한 사항</li> <li>11. 국내외 대규모 관광행사 유치 및 시행에 관한 사항</li> <li>12. 관광상품·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li> <li>13. 국내외 관광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li> <li>14.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관한 사항</li> <li>15. 문화예술 및 관광관련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li> </ol>	<p><u>&lt;삭 제&gt;</u></p> <p>17. (현행과 같음)</p> <p>18. 수산자원조성사업 계획 수립</p> <p>19.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관한 사항</p> <p>20. 인공어초 시설사업</p> <p>제11조(문화체육국에 두는 과)</p> <p>① <u>문화체육국에 -----, 체육지원과 및 전국체전기획단-----..</u></p> <p>② -----, ----- -----, 체육지원과장 및 전국체전기획단장-----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현 행	개 정 안
<p>15의2. MICE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p> <p>15의3. 국내외 전시회 유치 및 개최 지원</p> <p>15의4. 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시설관리 포함)</p> <p>15의5. 국내외 컨벤션 마케팅 및 홍보</p> <p>15의6. 한국국제기계박람회 개최</p> <p>16. 국내외 회의·이벤트 발굴, 유치 및 개최 지원</p> <p>17. 컨벤션 뷰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p> <p>18. 그 밖에 관광행정에 관한 사항</p> <p>⑥ 관광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광역권 관광개발계획에 관한 사항</p> <p>2. 관광프로젝트 사업 기획·발굴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p> <p>3. 장목관광단지개발사업 추진</p> <p>4.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구축 기반시설 확충</p> <p>5.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운영</p> <p>6. 민관협력사업 통합수익관리법인 운영 및 지원</p> <p>7. 지리산 및 바다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사항</p> <p>8. 남해안권, 지리산권, 백두대간권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p> <p>9. 남해안 선도사업에 관한 사항</p> <p>⑦ ~ ⑧ (생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삭 제&gt;</u></p> <p>⑦ ~ ⑧ (현행과 같음)</p> <p>제11조의2(관광개발국에 두는 과) ① <u>관광개발국에 관광정책과, 남해안과, 관광개발과를 둔다.</u></p> <p>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관광정책과장, 남해안과장, 관광개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p> <p>③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u>1. 관광행정 및 관광개발 종합기획·조정</u></p> <p><u>1의2.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u></p> <p><u>1의3.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등 추진에 관한 사항</u></p> <p><u>1의4. 관광지 지정·개발 및 민간유치계획 수립·추진</u></p> <p><u>2.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u></p> <p><u>3. 관광사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u></p> <p><u>4. 관광안내 및 홍보</u></p> <p><u>5. 관광객 유치 및 관광루트 개발</u></p>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6. 관광종사원 지도·교육</u></li> <li><u>7. 관광수용태세 관련 지원업무</u></li> <li><u>8. 종합 유원시설업 및 그 밖에 유기업장에 관한 사항</u></li> <li><u>9. 국내외 대규모 관광행사 유치 및 시행에 관한 사항</u></li> <li><u>10. 관광상품·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u></li> <li><u>11. 국내외 관광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u></li> <li><u>12.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관한 사항</u></li> <li><u>13. 문화예술 및 관광관련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u></li> <li><u>14. MICE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u></li> <li><u>15. 국내외 전시회 유치 및 개최 지원</u></li> <li><u>16. 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시설관리 포함)</u></li> <li><u>17. 국내외 컨벤션 마케팅 및 홍보</u></li> <li><u>18. 한국국제기계박람회 개최</u></li> <li><u>19. 국내외 회의·이벤트 발굴, 유치 및 개최 지원</u></li> <li><u>20. 컨벤션 유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u></li> <li><u>21. 그 밖에 관광행정에 관한 사항</u></li> </ol> <p>④ 남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남해안관광 기반조성 총괄 기획·조정 및 계획 수립</u></li> <li><u>2. 남해안개발청 설립 추진 계획 수립 및 용역 추진, 대외 협력</u></li> <li><u>3. 항공관광, 크루즈 관광 분야 기획·지원, 인프라 구축</u></li> <li><u>4. 어촌관광자원 개발사업</u></li> <li><u>5. 남해안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및 남해안 선도사업에 관한 사항</u></li> <li><u>6.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및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조성에 관한 사항</u></li> <li><u>7.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u></li> <li><u>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u></li> <li><u>9. 해양레저산업 클러스터 조성, 육성전략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u></li> <li><u>10. 해양레포츠 및 요트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u></li> <li><u>11. 해수욕장에 관한 사항</u></li> <li><u>12. 해양치유 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u></li> <li><u>13. 섬 연결도로 및 연계 도로망 구축 계획 수립·추진</u></li> </ol>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12조(복지보건국에 두는 과) ①복지보건국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및 식품의약과를 둔다.</p> <p>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보건행정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및 식품의약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p> <p>③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3. (생 략)</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14. 섬 연결도로 예타(면제)사업 반영 및 국비 지원 관련 업무</p> <p>15. 섬 연결 해상교량 관광자원화 기획 및 인프라 구축 지원</p> <p>16. 남해안아일랜드하이웨이 구축 시군·유관기관 협력</p> <p>17. 남해안아일랜드하이웨이 연계 주변 관광개발 인 프라 구축 지원</p> <p>18. 섬 관광 활성화 사업 발굴·추진, 제도 개선 발굴·건의</p> <p>⑤ 관광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광역권 관광개발계획에 관한 사항</p> <p>2. 관광프로젝트 사업 기획·발굴 및 시행 등에 관 한 사항</p> <p>3. 관광단지 지정·개발 및 민간유치계획 수립·추 진</p> <p>4. 관광분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p> <p>5. 관광자원 개발사업 민자 등 투자유치 지원에 관 한 사항</p> <p>6. 장목관광단지개발사업 추진</p> <p>7.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구축 기반시설 확충</p> <p>8.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운영</p> <p>9. 민관협력사업 통합수익관리법인 운영 및 지원</p> <p>10. 지리산 및 바다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사항</p> <p>11. 지리산권, 백두대간권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p> <p>제12조(복지여성국에 두는 과) ①복지여성국에 복지정책과, 노인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및 보육정책과-----.</p> <p>② -----, 복지정책과장, 노인정책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및 보육정책과-----.</p> <p>③ -----.</p> <p>1. ~ 3. (현행과 같음)</p> <p>3의2. 보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p> <p>3의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p>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4. ~ 15. (생 략)</p> <p>16. ICT연계 스마트 복지서비스 추진에 관한 사항</p> <p>④ 노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노인복지 및 보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p> <p>1의2. (생 략)</p> <p>1의3. 대일향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p> <p>1의4. 보훈단체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p> <p><u>&lt;신 설&gt;</u></p> <p>2. ~ 11. (생 략)</p> <p>⑤ (생 략)</p> <p>⑥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u>1. 보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u></p> <p><u>2. 보건소 등(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도·감독</u></p> <p><u>3. 건강증진 업무 종합기획 및 추진</u></p> <p><u>4. 건강관리협회 지도</u></p> <p><u>5. 정신보건 업무 종합 기획 및 추진</u></p> <p><u>6. 정신보건 시설 인가·지도·관리</u></p> <p><u>7. 지방의료원 지도·감독</u></p> <p><u>8. 의료취약지역(섬)에 대한 병원선 운영·관리</u></p> <p><u>9.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u></p>	<p><u>3의4. 보훈단체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u></p> <p>4. ~ 15.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④ 노인정책과장-----.</p> <p>1. 노인복지에 관한 -----</p> <p>1의2.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p>1의5. ICT연계 스마트 복지서비스 추진에 관한 사항</p> <p>2. ~ 11.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u>1. 여성정책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u></p> <p><u>2.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u></p> <p><u>3. 양성평등기금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u></p> <p><u>4. 여성단체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u></p> <p><u>5. 여성정책 연구기관 지도 감독</u></p> <p><u>6. 여성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u></p> <p><u>7. 여성인권 및 지위향상 정책 추진</u></p> <p><u>8. 가정·성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u></p> <p><u>9.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u></p> <p><u>10.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u></p> <p><u>11. 양성평등정책 분석 및 평가</u></p> <p><u>12. 여성(복지)회관 운영 지도</u></p> <p><u>13.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u></p> <p><u>14. 여성일자리 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u></p> <p><u>15. 건강가정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u></p> <p><u>16. 가정 및 가족문제 예방·해결 등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u></p> <p><u>17. 한부모가정 및 미혼모 자립 지원</u></p> <p><u>18.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u></p> <p><u>19.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통합에 관한 사항</u></p>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현 행	개 정 안
<p><u>⑦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생활방역 등 감염병 관리에 관한 전반 계획 수립·시행</u></li> <li><u>2. 생활방역 교육 및 홍보</u></li> <li><u>3. 감염병 이후 중·장기 제도개선 이행과제 점검 총괄</u></li> <li><u>4.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역학조사 계획 수립</u></li> <li><u>5. 감염병 유행 및 집단발생 대응</u></li> <li><u>6. 신종감염병 및 해외유입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 및 예방관리</u></li> <li><u>7. 결핵·한센병·성병 등 감염성 질환의 예방 관리 및 방역</u></li> <li><u>8. 방역·소독 지원에 관한 사항</u></li> <li><u>9. 감염병 관련 단체 지도·관리</u></li> <li><u>10. 감염병 통계 관리 및 유행실태 분석</u></li> <li><u>11. 감염병 전담의료기관 및 격리병상 운영·관리</u></li> <li><u>12. 선별진료소 운영 및 지원</u></li> <li><u>13. 공공의료기관 운영 등 지도·감독 관리</u></li> <li><u>14.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u></li> </ol> <p><u>⑧ 식품의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식품 및 의약품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u></li> <li><u>2. 식중독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u></li> <li><u>3. 국민건강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u></li> <li><u>4.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감독</u></li> <li><u>5. 식품제조업소 및 소비자 유통식품 지도·감독</u></li> <li><u>6.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감독</u></li> <li><u>7. 부정불량식품, 불량 의약품, 의료용구, 화장품 등 지도·감독</u></li> <li><u>8. 의료법인 허가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u></li> <li><u>9. 마약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u></li> <li><u>9의2.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u></li> <li><u>10. 지역응급의료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u></li> <li><u>11.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에 관한 사항</u></li> <li><u>12. 한방의료기관 및 한약업소 지도·감독</u></li> </ol> <p>제12조2(여성가족국에 두는 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u>여성가족국에 여성정책과,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과 및 청년정책과를 둔다.</u></li> </ol>	<p><u>⑦ 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출산지원시책 추진</u></li> <li><u>2. 모자보건사업계획 수립 추진</u></li> <li><u>3.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u></li> <li><u>4.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원 지도·감독</u></li> <li><u>5. 직장 및 민간 보육시설 설치 지원</u></li> <li><u>6.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종합기획·조정</u></li> <li><u>7.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아동 보호 관리</u></li> <li><u>8. 불우아동 결연기금 관리</u></li> <li><u>9. 요보호아동 발생예방 및 보호관리</u></li> <li><u>10. 아이돌봄 원스톱 지원 및 돌봄공백해소에 관한 사항</u></li> <li><u>11. 청소년 육성사업의 종합 기획·추진</u></li> <li><u>12. 청소년시설 설치 및 지원</u></li> <li><u>1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u></li> <li><u>14.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u></li> <li><u>15.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지원</u></li> <li><u>16.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u></li> <li><u>17. 청소년 국제교류사업</u></li> <li><u>18.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u></li> <li><u>19.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u></li> </ol> <p>&lt;삭 제&gt;</p> <p>제12조2(보건의료국에 두는 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u>보건의료국에 보건행정과, 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 및 식품위생과-----..</u></li> </ol>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현 행	개 정 안
<p>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u>여성정책과장, 가족지원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및 청년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u></p> <p>③ 여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성정책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li> <li>2.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li> <li>3. 양성평등기금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li> <li>4. 여성단체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li> <li>5. 여성정책 연구기관 지도 감독</li> <li>6. 여성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li> <li>7. 여성인권 및 지위향상 정책 추진</li> <li>8. 가정·성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li> <li>9.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li> <li>10.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li> <li>11. 양성평등정책 분석 및 평가</li> <li>12. 여성(복지)회관 운영 지도</li> <li>13.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li> <li>14. 여성일자리 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li> </ol> <p>④ 가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강가정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li> <li>2. 가정 및 가족문제 예방·해결 등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li> <li>3. 한부모가정 및 미혼모 자립 지원</li> <li>4. 출산지원시책 추진</li> <li>5. 모자보건사업계획 수립 추진</li> <li>6.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li> <li>7.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원 지도·감독</li> <li>8. 직장 및 민간 보육시설 설치 지원</li> <li>9.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li> <li>10.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통합에 관한 사항</li> </ol> <p>⑤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종합기획·조정</li> <li>2.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아동 보호 관리</li> <li>3. 불우아동 결연기금 관리</li> <li>4. 요보호아동 발생예방 및 보호관리</li> <li>5. 아이돌봄 윈스톱 지원 및 돌봄공백해소에 관한 사항</li> </ol>	<p>② -----, <u>보건행정과장, 의료정책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및 식품위생과장-----.</u></p> <p>③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li> <li>2. 보건소 등(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도·감독</li> <li>3. 건강증진 업무 종합기획 및 추진</li> <li>4. 건강관리협회 지도</li> <li>5. 정신보건 업무 종합 기획 및 추진</li> <li>6. 정신보건 시설 인가·지도·관리</li> <li>7. 공공병원 설립 등에 관한 사항</li> <li>8. 의료취약지역(섬)에 대한 병원선 운영·관리</li> </ol> <p>④ 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료 및 의약품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li> <li>2. 지방의료원 지도·감독</li> <li>3.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li> <li>4. 공공의료기관 운영 등 지도·감독 관리</li> <li>5.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li> <li>6.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감독</li> <li>7. 불량 의약품, 의료용구, 화장품 등 지도·감독</li> <li>8. 의료법인 허가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li> <li>9. 마약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li> <li>10.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li> <li>11. 지역응급의료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li> <li>12. 한약제 수급 및 유통 관리에 관한 사항</li> <li>13. 한방의료기관 및 한약업소 지도·감독</li> </ol> <p>⑤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활방역 등 감염병 관리에 관한 전반 계획 수립·시행</li> <li>2. 생활방역 교육 및 홍보</li> <li>3. 감염병 이후 중·장기 제도개선 이행과제 점검 총괄</li> <li>4.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역학조사 계획 수립</li> </ol>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6. 청소년 육성사업의 종합 기획·추진</u></li> <li><u>7. 청소년시설 설치 및 지원</u></li> <li><u>8.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u></li> <li><u>9.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u></li> <li><u>10.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지원</u></li> <li><u>11.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u></li> <li><u>12. 청소년 국제교류사업</u></li> <li><u>13.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u></li> <li><u>14.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5. 감염병 유행 및 집단발생 대응</u></li> <li><u>6. 신종감염병 및 해외유입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 및 예방관리</u></li> <li><u>7. 결핵·한센병·성병 등 감염성 질환의 예방 관리 및 방역</u></li> <li><u>8. 방역·소독 지원에 관한 사항</u></li> <li><u>9. 감염병 관련 단체 지도·관리</u></li> <li><u>10. 감염병 통계 관리 및 유행실태 분석</u></li> <li><u>11. 감염병 진단의료기관 및 격리병상 운영·관리</u></li> <li><u>12. 선별진료소 운영 및 지원</u></li> <li><u>13. 공공의료기관 운영 등 지도·감독 관리</u></li> <li><u>14.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u></li> </ul>
<p><u>⑥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u></li> <li><u>2. 청년정책 신규시책 발굴 추진</u></li> <li><u>3. 경상남도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 네트워크 구성 운영</u></li> <li><u>4.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u></li> <li><u>5. 청년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된 사항</u></li> </ul>	<p><u>⑥ 식품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식품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u></li> <li><u>2. 식중독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u></li> <li><u>3. 국민건강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u></li> <li><u>4.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감독</u></li> <li><u>5. 식품제조업소 및 소비자 유통식품 지도·감독</u></li> </ul>
<p>제13조(균형발전국에 두는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u>균형발전국에 균형정책과, 우주항공산업과 및 지역발전과를 둔다.</u></li> <li>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u>균형정책과장, 우주항공산업과장 및 지역발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u></li> <li>③ <u>균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부지역본부 소관 행정의 총괄에 관한 사항</li> <li>2. 균형발전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li> <li>3. 서부권 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신규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li> <li>4. 서부청사 행정지원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li> <li>5. 서부지역본부 내 각종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li> <li>6. ~ 16. 삭제</li> <li>17. 서부지역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li> <li>18. 본청 소관 민원의 서부청 연계 처리에 관한 사항</li> <li>19. 서부청사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20. 인구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li> </ul> </li> </ul>	<p>제13조(교육균형국에 두는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u>교육균형국에 교육인재과, 인력지원과, 우주항공산업과 및 지역발전과-----.</u></li> <li>② -----, <u>교육인재과장, 인력지원과장, 우주항공산업과장 및 지역발전과장-----.</u></li> <li>③ <u>교육인재과장-----.</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균형발전본부, 교육인력국 소관 행정 총괄에 관한 사항</u></li> <li>2. <u>교육정책 및 교육청 정책협의에 관한 사항</u></li> <li>3. <u>교육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u></li> <li>4. <u>교육혁신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u></li> <li>5. <u>시군 맞춤형 교육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u></li> <li>6. <u>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u></li> <li>7. <u>도립대학 및 도내 대학지원, 산학협력 총괄 등에 관한 사항</u></li> <li>8. <u>대학생 학자금 이자 및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u></li> <li>9. <u>남명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u></li> <li>10. <u>외국인 유학생의 도내 대학 유치·알선 지원</u></li> </ul> </li> </ul>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현 행	개 정 안
21.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2. 인구소멸대응기금에 관한 사항 23. 균형발전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24. 균형발전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5. 정부 균형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26. 균형발전사업평가 및 경상남도 균형발전계획·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7. 지역혁신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28.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9. 지역균형발전 대상지 선정 및 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30. 서부권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31. 서부경남 시·군 전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2. 낙후지역 지정 추진에 관한 사항 33. 소도읍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4. 거점지역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5.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6.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37. 동서통합지대 조성에 관한 사항 38. 내륙권(백두대간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신 설>	11. 대학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2. 대학 평생교육지원체제 지원에 관한 사항 13.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4.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④ 인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5. 기업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6.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 인턴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8. 일자리 공시제에 관한 사항 9.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 10.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총괄 11. 일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12. 일자리 영향평가 및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13. 산업인력 수급 등 산업인력정책, 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인력 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노동자 지원계획, 입국비자 등에 관한 사항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현      행	개    정    안
<p>⑦ 우주항공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주 및 항공산업 육성 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li> <li>2. 우주 및 항공산업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li> <li>3. 우주 및 항공산업 특화단지 조성 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li> <li>4. 우주 및 항공산업 유치에 관한 사항</li> <li>5. 우주 및 항공산업 인프라, 연구개발, 이벤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li> <li>6. 우주항공청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li> </ol> <p>⑧ 지역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사항</li> <li>2. 혁신도시 시즌2 운영에 관한 사항</li> <li>3.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li> <li>4.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사항</li> <li>5.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에 관한 사항</li> <li>6.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총괄</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 서부청사 기능 조정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li> <li>20. 초전신도심 개발계획 수립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21. 서부권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li> <li>22. 서부경남 시·군 전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li> <li>23. 낙후지역 지정, 소도읍 육성 지원, 거점지역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li> <li>24.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li> <li>25.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li> <li>26. 동서통합지대 조성에 관한 사항</li> <li>27. 내륙권(백두대간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li> <li>28. 서부지역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li> <li>29. 본청 소관 민원의 서부청 연계 처리에 관한 사항</li> <li>30. 서부청사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31. 서부청사 행정지원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li> <li>32. 균형발전본부 내 각종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li> </ol> <p style="text-align: center;">&lt;삭 제&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 제&gt;</p>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현 행	개 정 안
<p>7.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협력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p> <p>8. 도내 공공기관 이전 계획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9. 초전신도심 개발계획 수립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10. 농업기술원 등 청사 이전 추진에 관한 사항</p> <p>11. 농업기술원 청사 이전 관련 용역사업, 예산 등 행정절차 추진 총괄</p> <p>12. 서부청사 기능 조정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p> <p>제15조의2(소방본부에 두는 과) ① ~ ② (생 략)</p> <p>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7. (생 략)</p> <p>8. 의무소방원 임용에 관한 사항</p> <p>9. 의무소방대 관리·운영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p> <p>10. ~ 17. (생 략)</p> <p>④ ~ ⑦ (생 략)</p> <p>⑨ 119특수구조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12. (생 략)</p> <p>제18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p>1. ~ 5. (생 략)</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30조의2(하부조직)</p> <p>① ~ ② (생 략)</p> <p>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9. (생 략)</p> <p>10. 의무소방원 임용에 관한 사항</p> <p>11. 의무소방대 관리·운영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p> <p>④ ~ ⑥ (생 략)</p> <p>제4장 제1절 서부지역본부</p>	<p>제15조의2(소방본부에 두는 과)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1. ~ 7.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10. ~ 17. (현행과 같음)</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p>⑨ 119특수대응단장-----.</p> <p>1. ~ 12. (현행과 같음)</p> <p>제18조(총무과)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농업기술원 이전 추진에 관한 사항</u></p> <p>7. <u>농업기술원 청사 이전 관련 용역사업, 예산 등 행정절차 추진</u></p> <p>제30조의2(하부조직)</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1. ~ 9.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4장 제1절 <u>균형발전본부</u></p>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의2(본부장) <u>서부지역본부장은</u> 지방이사관으로 임명한다.	제35조의2(본부장) <u>균형발전본부장</u> ----- -----.
제46조의4(하부조직) ① 수산안전기술원에 <u>수산관리과·기술지원과·수산물안전관리센터</u> 를 둔다.	제46조의4(하부조직) ① ----- <u>수산관리과·수산물검사과</u> 를 둔다.
② 수산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기술지원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수산물안전관리센터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② ----- -----, 수산물검사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어촌지도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 -----.
③ 수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귀어 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12. 귀어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13. 수산기술의 보급 및 어업경영 지도
<신 설>	14.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신 설>	15. 양식산업 분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6. 어장 예비관찰 및 수산 재해 예방 지도
<신 설>	17. 수산 양식장 적지 조사에 관한 사항
<신 설>	18. 연구교습어장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9. 기술지도선 운영 및 관리
<신 설>	20. 배합사료 직불제에 관한 사항
<신 설>	21.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신 설>	22.. 현장어로 기술 개발
④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수산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산기술의 보급 및 어업경영 지도	1. 수산물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2. 양식산업 분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어장 예비관찰 및 수산 재해 예방 지도	3. 수산생물 병성감정기관 운영
4.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 관한 사항
5. 수산 양식장 적지 조사에 관한 사항	5. 수산물 방사능검사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1.5.3.>	6. 수산생물 질병 및 방역 지도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1.5.3.>	7.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8. 연구교습어장 운영에 관한 사항	8. 폐류독소 검사에 관한 사항
9. 기술지도선 운영 및 관리	9.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10. 배합사료 직불제에 관한 사항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현 행	개 정 안
<p><u>11.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u></p> <p><u>12. 현장애로 기술 개발</u></p> <p>⑤ 수산물안전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산물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li> <li>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3. 수산생물 병성감정기관 운영</li> <li>4.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 관한 사항</li> <li>5. 수산생물 질병 및 방역 지도에 관한 사항</li> <li>6.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li> <li>7. 패류독소 검사에 관한 사항</li> <li>8.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li> </ol>	<p>&lt;삭 제&gt;</p>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소방기본법

-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 ④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 제3조의2(소방공무원의 배치)** 제3조제1항의 소방기관 및 같은 조 제4항의 소방본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 등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본부[본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제9조(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2(시·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① 시·도는 별표 1에 따른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실·국·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도는 제1항에 따라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로 설치한 실·국·본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삭제 또는 추가로 설치한 실·국·본부의 폐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그 설치 내용,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조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시·도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도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도의 과·담당관 등의 설치)** 시·도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시·도자치경찰위원회)**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을 정할 때에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 제8조(119출장소·119안전센터 등)** ①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출장소·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소방정대(消防艇隊) 및 119지역대를 둘 수 있다.
- ② 119출장소장·119안전센터장·119구조대장·119구급대장·119구조구급센터장·소방정대장 및 119지역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 ③ 제1항에 따라 119출장소·119안전센터·소방정대 및 119지역대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경상남도조례 제 호

###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7,143명”을 “7,144명”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2,470명”을 “2,47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69명”을 “68명”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한시정원) 제4조의 정원 중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별지 별표3(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별표 3] (제4조 관련)**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종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 기관	경제 자유 구역청
총합계	<b>7,144</b>							
정무직합계	3	1					2	
정무직	3	1					2	
일반직합계	<b>2,384</b>							
2급	1				1			
2·3급	2	1	1					
3급	<b>14</b>	<b>13</b>		1				
3·4급	2	1					1	
4급	<b>94</b>	<b>70</b>	4	7		12	1	
5급이하 소계	<b>2,260</b>							
전문경력관 소계	11							
연구직합계	<b>257</b>							
연구관	40			39		1		
연구사	<b>217</b>							
지도직합계	<b>31</b>							
지도관	8			8				
지도사	23							
별정직합계	<b>22</b>							
1급상당	1	1						
4급상당	9		9					
5급상당이하 소계	12							
소방직합계	<b>4,373</b>							
소방정	25	7		18				
소방령이하	4,348							
교육직합계	<b>74</b>							
총장	2			2				
교수·부교수·조교수	54			54				
조교	18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별표 4] (제7조 관련)**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정원관리기관	부서명	직종	직급	정원	존속기한
<b>계</b>				<b>1</b>	
본청	관광개발국	일반직	3급	1	2025. 1. 3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7,143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2,470명</u></p> <p>2. ~ 4. (생략)</p> <p>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u>69명</u></p>	<p>제2조(정원의 총수) ----- -----<u>7,144명</u>----- -----.</p> <p>1. ----- <u>2,472명</u></p> <p>2. ~ 4. (현행과 같음)</p> <p>5. ----- <u>68명</u></p>
<p><u>&lt;신설&gt;</u></p>	<p>제7조(한시정원) 제4조의 정원 중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p>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 별표 3의 신규조문대비표

현										개											
[별표 3] (제4조 관련)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별표 3] (제4조 관련)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종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경제자유구역청			기관별 직종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경제자유구역청		
총합계	7,143									총합계	7,144										
정무직합계	3	1						2		정무직합계	3	1							2		
정무직	3	1						2		정무직	3	1							2		
일반직합계	<b>2,383</b>									일반직합계	<b>2,384</b>										
2급	1				1					2급	1					1					
2·3급	2	1	1							2·3급	2	1	1								
3급	13	12		1						3급	14	13		1							
3·4급	2	1						1		3·4급	2	1							1		
4급	<b>93</b>	<b>69</b>	4	7		12	1			4급	<b>94</b>	<b>70</b>	4	7		12	1				
5급이하 소계	2,261									5급이하 소계	2,260										
전문경력관 소계	11									전문경력관 소계	11										
연구직합계	<b>257</b>									연구직합계	<b>257</b>										
연구관	40			39		1				연구관	40			39		1					
연구사	<b>217</b>									연구사	<b>217</b>										
지도직합계	31									지도직합계	31										
지도관	8			8						지도관	8			8							
지도사	23									지도사	23										
별정직합계	22									별정직합계	22										
1급상당	1	1								1급상당	1	1									
4급상당	9		9							4급상당	9	1	8								
5급상당이하 소계	12									5급상당이하 소계	12										
소방직합계	4,373									소방직합계	4,373										
소방정	25	7		18						소방정	25	7		18							
소방령이하	4,348									소방령이하	4,348										
교육직합계	74									교육직합계	74										
총장	2			2						총장	2			2							
교수·부교수·조교수	54			54						교수·부교수·조교수	54			54							
조교	18									조교	18										

##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경상남도 공무원 직급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 관련 조문 :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 '24년)	2차년도 ( '25년)	3차년도 ( '26년)	4차년도 ( '27년)	5차년도 ( '28년)
인건비	1,959,320	1,978,913	1,998,702	2,018,689	2,038,876

#### 3. 관련 의견

- '23년도 예산 인건비 산출기초 및 인상률(1.0%) 참조 작성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구 분	직 급	인원(명)	1인당년간 소요(천원)	증감액(천원)	비 고
계				1,959,320	
일반직	3급	1	142,707	142,707	연봉제
	4급	1	128,698	128,698	연봉제
	5급	16	111,192	1,779,072	연봉제
	6급	-14	73,933	-1,035,062	16호봉
	7급	-4	52,936	-211,744	7호봉
	8급	-2	40,423	-80,846	3호봉
	9급	3	35,492	106,476	2호봉
소방직	소방경	4	84,052	336,208	20호봉
	소방위	32	70,468	2,254,976	14호봉
	소방교	-1	45,555	-45,555	5호봉
	소방사	-35	40,446	-1,415,610	4호봉

작성자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장 재 혁

##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재원조달방안

###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4년)	2차년도 (‘25년)	3차년도 (‘26년)	4차년도 (‘27년)	5차년도 (‘28년)
인건비	1,959,320	1,978,913	1,998,702	2,018,689	2,038,876

### 2. 관련 의견

- 신규업무 발생부서 정원 조정 및 현안사업 전담조직 신설 등  
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기준인력 범위 내 조정임

### 3.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장 재 혁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④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제3조의2(소방공무원의 배치)** 제3조제1항의 소방기관 및 같은 조 제4항의 소방본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정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 ② 시·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③ 시·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중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시·도별 및 계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④ 시·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시·도별 정원(제3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은 제외하며, 이하 “시·도별정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공무원의 배치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⑤ 시·도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도별정원에 따른 소속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도별정원의 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별정원을 증감하여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시·도별 소방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시·도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제3조(정원의 배정 및 통보)** ① 시·도는 영 제2조제5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소속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하부조직별로 배정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정원 배정은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 규모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2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도별 정원을 증감하여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정원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소방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다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경상남도규칙 제 호

###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별지 별표(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

####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직종	직급	직렬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 기관	경제 자유 구역청
총합계			7,144	1,909	157	4,491	1	514	68	4
정무직 합계			3	1					2	
	단체장 합계		1	1						
정무직	단체장	정무	1	1						
	2급상당 합계		1						1	
정무직	2급상당	정무	1						1	
	3급상당 합계		1						1	
정무직	3급상당	정무	1						1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직종	직급	직렬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계 행정 기관	경제 자유 구역청
일반직 합계			2,384	1,612	146	111	1	444	66	4
	2급 합계		1				1			
일반직	2급	행정	1				1			
	2:3급 합계		2	1	1					
일반직	2:3급	행정	2	1	1					
	3급 합계		14	13		1				
일반직	3급	행정	14	13		1				
	3:4급 합계		2	1					1	
일반직	3:4급	행정	1						1	
일반직	3:4급	행정·기술	1	1						
	4급 합계		94	70	4	7		12	1	
일반직	4급	행정	16	4	3	5		3	1	
일반직	4급	행정·기술	65	60	1	1		3		
일반직	4급	행정·기술·농업연구	1					1		
일반직	4급	행정·기술·녹지연구	1					1		
일반직	4급	행정·기술·농촌지도	1			1				
일반직	4급	행정·기술·어촌지도	1					1		
일반직	4급	기술	5	5						
일반직	4급	기술·농업연구·수의연구	1					1		
일반직	4급	기술·수의연구	2	1				1		
일반직	4급	기술·해양수산연구	1					1		
	5급 합계		442	354	21	12		43	11	1
일반직	5급	행정	142	113	6	10		5	7	1
일반직	5급	행정·사회복지	14	13					1	
일반직	5급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1	1						
일반직	5급	행정·사회복지·보건	4	3	1					
일반직	5급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일반직	5급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1						
일반직	5급	행정·사서	2					2		
일반직	5급	행정·숙기·보건·환경	1		1					
일반직	5급	행정·공업	32	31				1		
일반직	5급	행정·공업·농업·환경	1		1					
일반직	5급	행정·공업·녹지·환경	1		1					
일반직	5급	행정·공업·환경	2	2						
일반직	5급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일반직	5급	행정·공업·시설	7	6	1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직종	직급	직렬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 기관	경제 자유 구역청
일반직	5급	행정·공업·방송통신	1	1						
일반직	5급	행정·농업	12	11				1		
일반직	5급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일반직	5급	행정·농업·보건·식품위생	1	1						
일반직	5급	행정·농업·보건·환경	8		8					
일반직	5급	행정·농업·식품위생	2	2						
일반직	5급	행정·농업·환경·시설	2	2						
일반직	5급	행정·농업·시설	1	1						
일반직	5급	행정·농업·농업연구	1					1		
일반직	5급	행정·녹지	4	3				1		
일반직	5급	행정·녹지·시설	2	1				1		
일반직	5급	행정·녹지·녹지연구	1					1		
일반직	5급	행정·수의·환경								
일반직	5급	행정·해양수산	8	6				2		
일반직	5급	행정·해양수산·환경·시설	1	1						
일반직	5급	행정·해양수산·시설	3	3						
일반직	5급	행정·해양수산· 해양수산연구	1					1		
일반직	5급	행정·보건	2	2						
일반직	5급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일반직	5급	행정·보건·식품위생·간호	1	1						
일반직	5급	행정·보건·간호	6	6						
일반직	5급	행정·보건·환경								
일반직	5급	행정·보건·환경·시설	1	1						
일반직	5급	행정·간호								
일반직	5급	행정·환경	5	5						
일반직	5급	행정·시설	58	56	1				1	
일반직	5급	행정·시설·방재안전	2	2						
일반직	5급	행정·시설·방송통신	1	1						
일반직	5급	행정·방송통신	6	5		1				
일반직	5급	행정·학예연구	1					1		
일반직	5급	행정·기록연구	1					1		
일반직	5급	공업·환경	3	3						
일반직	5급	공업·시설	2	1				1		
일반직	5급	공업·시설·방송통신	1	1						
일반직	5급	농업	4	3				1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직종	직급	직렬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계 행정 기관	경제 자유 구역청
일반직	5급	농업·수의	3	3						
일반직	5급	농업·수의·보건	1	1						
일반직	5급	농업·수의·식품위생· 수의연구	1	1						
일반직	5급	농업·수의·수의연구	1	1						
일반직	5급	농업·시설	1	1						
일반직	5급	농업·농업연구	1					1		
일반직	5급	녹지	6	5				1		
일반직	5급	녹지·녹지연구	1					1		
일반직	5급	수의	2	2						
일반직	5급	수의·보건·의무·간호	1	1						
일반직	5급	수의·수의연구	9	1				8		
일반직	5급	해양수산	5	5						
일반직	5급	해양수산·보건·간호	1	1						
일반직	5급	해양수산·시설	2	2						
일반직	5급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3					3		
일반직	5급	해양수산·어촌지도	6					6		
일반직	5급	보건·식품위생	2	2						
일반직	5급	보건·의무								
일반직	5급	보건·의무·약무·간호	1	1						
일반직	5급	보건·의무·간호	2	2						
일반직	5급	보건·간호	1	1						
일반직	5급	보건·환경	2	2						
일반직	5급	환경	3	2				1		
일반직	5급	환경·시설	1	1						
일반직	5급	시설	30	26				2	2	
일반직	5급	시설·농업연구	1			1				
일반직	5급	방송통신	1	1						
	6급 합계		783	535	70	30		112	33	3
일반직	6급	행정	268	180	46	15		10	14	3
일반직	6급	행정·세무	10	7	1	1			1	
일반직	6급	행정·세무·전산	2	1				1		
일반직	6급	행정·전산	25	18	2	2			3	
일반직	6급	행정·전산·공업	1	1						
일반직	6급	행정·전산·공업·방송통신	1		1					
일반직	6급	행정·사회복지	8	5		1			2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직종	직급	직렬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계 행정 기관	경제 자유 구역청
일반직	6급	행정·사회복지·보건	3	2	1					
일반직	6급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1	1						
일반직	6급	행정·사서	1					1		
일반직	6급	행정·공업	22	21				1		
일반직	6급	행정·공업·농지·환경	1		1					
일반직	6급	행정·공업·해양수산	1	1						
일반직	6급	행정·공업·해양수산·시설	1					1		
일반직	6급	행정·공업·보건·시설	1	1						
일반직	6급	행정·공업·환경	1	1						
일반직	6급	행정·공업·시설	6	4	1				1	
일반직	6급	행정·공업·방송통신	2	2						
일반직	6급	행정·농업	13	11				1	1	
일반직	6급	행정·농업·수의	1	1						
일반직	6급	행정·농업·수의·해양수산	1		1					
일반직	6급	행정·농업·보건·환경	9		9					
일반직	6급	행정·농지	5	1				4		
일반직	6급	행정·농지·해양수산	1						1	
일반직	6급	행정·수의·보건								
일반직	6급	행정·수의·수의연구	1					1		
일반직	6급	행정·해양수산	10	3				7		
일반직	6급	행정·해양수산·시설	5	5						
일반직	6급	행정·보건	4	4						
일반직	6급	행정·보건·간호	2	2						
일반직	6급	행정·보건·환경·시설	3	3						
일반직	6급	행정·보건·시설	1	1						
일반직	6급	행정·식품위생	1	1						
일반직	6급	행정·환경	4	3				1		
일반직	6급	행정·환경·시설	2	1				1		
일반직	6급	행정·방재안전	1	1						
일반직	6급	행정·시설	64	54	1			7	2	
일반직	6급	행정·방송통신	3	3						
일반직	6급	행정·기록연구	2					2		
일반직	6급	행정·농촌지도	2			2				
일반직	6급	세무	7	7						
일반직	6급	세무·전산	1	1						
일반직	6급	전산	9	6		1		2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직종	직급	직렬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계 행정 기관	경제 자유 구역청
일반직	6급	전산·공업	1	1						
일반직	6급	전산·시설	1	1						
일반직	6급	사회복지	3	3						
일반직	6급	사회복지·보건	1	1						
일반직	6급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일반직	6급	사회복지·시설	2	1					1	
일반직	6급	사회복지·방송통신	1	1						
일반직	6급	숙기	3		3					
일반직	6급	공업	12	8				3	1	
일반직	6급	공업·환경	1	1						
일반직	6급	공업·방재안전	1	1						
일반직	6급	공업·방재안전·시설	1	1						
일반직	6급	공업·시설	6	3				2	1	
일반직	6급	공업·시설·방송통신	1		1					
일반직	6급	공업·방송통신	2	1				1		
일반직	6급	농업	14	10		1		3		
일반직	6급	농업·수의	7	7						
일반직	6급	농업·해양수산	1	1						
일반직	6급	농업·시설	2	2						
일반직	6급	농업·시설·농촌지도	1					1		
일반직	6급	농업·농업연구	4	1		1		2		
일반직	6급	녹지	9	7				2		
일반직	6급	녹지·시설	2	2						
일반직	6급	녹지·녹지연구	6					6		
일반직	6급	수의	14	2				12		
일반직	6급	수의·보건·간호·보건연구	1	1						
일반직	6급	수의·수의연구	10	2				8		
일반직	6급	해양수산	35	17				18		
일반직	6급	해양수산·시설	2	2						
일반직	6급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2					2		
일반직	6급	보건	6	6						
일반직	6급	보건·식품위생	3	3						
일반직	6급	보건·식품위생·환경	1	1						
일반직	6급	보건·환경	2	1					1	
일반직	6급	식품위생	1	1						
일반직	6급	간호	1	1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직종	직급	직렬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계 행정 기관	경제 자유 구역청
일반직	6급	간호·시설관리	1	1						
일반직	6급	환경	13	13						
일반직	6급	환경·시설								
일반직	6급	방재안전	1	1						
일반직	6급	시설	73	56		4		9	4	
일반직	6급	시설·방재안전	2	2						
일반직	6급	시설·방송통신	1	1						
일반직	6급	방송통신	8	8						
일반직	6급	시설관리	1		1					
일반직	6급	운전	7	3	1	1		2		
일반직	6급	전기운영	2	2						
일반직	6급	기계운영	4	2		1		1		
일반직	6급	사무운영	2	2						
	7급 합계		686	446	34	25		164	17	
일반직	7급	행정	179	132	3	13		23	8	
일반직	7급	행정·세무	5	4	1					
일반직	7급	행정·전산	19	15	2	1		1		
일반직	7급	행정·전산·공업·방송통신	2		2					
일반직	7급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일반직	7급	행정·사회복지	13	12		1				
일반직	7급	행정·사회복지·보건	4	3	1					
일반직	7급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1	1						
일반직	7급	행정·사회복지·시설	2	2						
일반직	7급	행정·사서	6			1		5		
일반직	7급	행정·공업	24	22	1			1		
일반직	7급	행정·공업·녹지·환경	1		1					
일반직	7급	행정·공업·보건·시설	1	1						
일반직	7급	행정·공업·환경	2	2						
일반직	7급	행정·공업·시설	2	1	1					
일반직	7급	행정·공업·방송통신	1	1						
일반직	7급	행정·농업	7	5				2		
일반직	7급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일반직	7급	행정·농업·보건·환경	8		8					
일반직	7급	행정·농업·식품위생	2	2						
일반직	7급	행정·농업·환경	1	1						
일반직	7급	행정·농업·농업연구	1					1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직종	직급	직렬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계 행정 기관	경제 자유 구역청
일반직	7급	행정·녹지	4	2				2		
일반직	7급	행정·녹지·시설	3					3		
일반직	7급	행정·해양수산	5	4				1		
일반직	7급	행정·해양수산·시설	2	1				1		
일반직	7급	행정·보건	2	1		1				
일반직	7급	행정·보건·간호	1	1						
일반직	7급	행정·보건·환경	2	1					1	
일반직	7급	행정·간호·시설	1			1				
일반직	7급	행정·환경	2	2						
일반직	7급	행정·환경·시설	5	5						
일반직	7급	행정·방재안전	3	3						
일반직	7급	행정·시설	45	35	1			4	5	
일반직	7급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일반직	7급	행정·기록연구	2					2		
일반직	7급	행정·농촌지도	1			1				
일반직	7급	세무	5	5						
일반직	7급	전산	9	8				1		
일반직	7급	전산·시설	1	1						
일반직	7급	전산·방송통신	1	1						
일반직	7급	사회복지	5	5						
일반직	7급	사회복지·농업	1	1						
일반직	7급	사회복지·보건·간호	3	3						
일반직	7급	사회복지·시설	3	3						
일반직	7급	사서	9		1	2		6		
일반직	7급	속기	4		4					
일반직	7급	공업	19	11	4			4		
일반직	7급	공업·해양수산·시설	1					1		
일반직	7급	공업·환경	2	2						
일반직	7급	공업·시설	7	3				4		
일반직	7급	농업	8	6				2		
일반직	7급	농업·수의	4	4						
일반직	7급	농업·해양수산	1	1						
일반직	7급	농업·보건·식품위생·환경	1	1						
일반직	7급	농업·보건·환경	1						1	
일반직	7급	농업·시설	2	2						
일반직	7급	농업·농업연구	2					2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직종	직급	직렬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 기관	경제 자유 구역청
일반직	7급	녹지	13	6				7		
일반직	7급	녹지·시설	3	2				1		
일반직	7급	녹지·시설·녹지연구	1					1		
일반직	7급	녹지·녹지연구	1					1		
일반직	7급	수의	35	2				33		
일반직	7급	수의·해양수산·식품위생	1	1						
일반직	7급	수의·보건	1	1						
일반직	7급	수의·수의연구	7					7		
일반직	7급	해양수산	32	18				14		
일반직	7급	해양수산·시설	4	4						
일반직	7급	해양수산·방송통신	1	1						
일반직	7급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3					3		
일반직	7급	보건	1	1						
일반직	7급	보건·식품위생	3	3						
일반직	7급	보건·식품위생·간호	1	1						
일반직	7급	보건·식품위생·환경								
일반직	7급	보건·간호	1	1						
일반직	7급	보건·환경	3	3						
일반직	7급	간호	7	3		3		1		
일반직	7급	환경	7	7						
일반직	7급	환경·시설	3	3						
일반직	7급	방재안전	2	2						
일반직	7급	시설	63	48				13	2	
일반직	7급	시설·방재안전	2	2						
일반직	7급	방송통신	12	8				4		
일반직	7급	시설관리	3					3		
일반직	7급	운전	15	6	3	1		5		
일반직	7급	통신운영·사무운영	1	1						
일반직	7급	전기운영	2	2						
일반직	7급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일반직	7급	기계운영	4	1				3		
일반직	7급	사무운영	2	1				1		
	8급 합계		308	172	10	31		94	1	
일반직	8급	행정	75	57	3	3		11	1	
일반직	8급	행정·세무	1	1						
일반직	8급	행정·전산	5	3		1		1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직종	직급	직렬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 기관	경제 자유 구역청
일반직	8급	행정·전산·공업	1	1						
일반직	8급	행정·전산·보건								
일반직	8급	행정·사회복지	8	8						
일반직	8급	행정·사서	2					2		
일반직	8급	행정·공업	17	11		3		3		
일반직	8급	행정·공업·시설	1	1						
일반직	8급	행정·농업	6	1		3		2		
일반직	8급	행정·농업·녹지								
일반직	8급	행정·농업·환경	1	1						
일반직	8급	행정·녹지	1					1		
일반직	8급	행정·녹지·환경	1	1						
일반직	8급	행정·해양수산	6	5				1		
일반직	8급	행정·해양수산·시설	2	1				1		
일반직	8급	행정·보건	2	2						
일반직	8급	행정·보건·식품위생	2	2						
일반직	8급	행정·보건·시설	1	1						
일반직	8급	행정·환경	5	5						
일반직	8급	행정·시설	19	18		1				
일반직	8급	행정·방송통신	1	1						
일반직	8급	세무	2	2						
일반직	8급	전산	6	4		2				
일반직	8급	전산·사회복지·사서	1					1		
일반직	8급	전산·녹지·환경	1	1						
일반직	8급	전산·방재안전·방송통신	1	1						
일반직	8급	전산·방송통신	4	2		1		1		
일반직	8급	사회복지	1	1						
일반직	8급	사회복지·보건·간호								
일반직	8급	속기	5		5					
일반직	8급	공업	8					8		
일반직	8급	공업·농업	1					1		
일반직	8급	공업·시설	4	2				2		
일반직	8급	공업·방송통신	1	1						
일반직	8급	농업	3	3						
일반직	8급	농업·시설	1	1						
일반직	8급	녹지	4	3				1		
일반직	8급	녹지·환경·시설	1	1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직종	직급	직렬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 기관	경제 자유 구역청
일반직	8급	녹지·시설	1					1		
일반직	8급	해양수산	23	1				22		
일반직	8급	해양수산·환경	1	1						
일반직	8급	해양수산·시설	1	1						
일반직	8급	보건	2			1		1		
일반직	8급	보건·식품위생	3	3						
일반직	8급	보건·환경	3	3						
일반직	8급	식품위생	1	1						
일반직	8급	간호								
일반직	8급	환경	4	4						
일반직	8급	환경·시설	1	1						
일반직	8급	시설	20			1		19		
일반직	8급	시설·방재안전	2	2						
일반직	8급	방송통신	3	2				1		
일반직	8급	위생	1			1				
일반직	8급	위생·조리	1	1						
일반직	8급	시설관리	5			2		3		
일반직	8급	운전	19	5		8		6		
일반직	8급	전기운영	1		1					
일반직	8급	기계운영	3		1			2		
일반직	8급	선박항해운영	1					1		
일반직	8급	사무운영	11	5		4		2		
	9급 합계		41	12	6	2		19	2	
일반직	9급	행정	6	3				1	2	
일반직	9급	농업	2					2		
일반직	9급	방송통신	1	1						
일반직	9급	위생	1			1				
일반직	9급	시설관리	2					2		
일반직	9급	운전	9					9		
일반직	9급	전기운영	2					2		
일반직	9급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일반직	9급	기계운영	4	2		1		1		
일반직	9급	사무운영	13	6	6			1		
	전문경력관 (가군) 합계		1	1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직종	직급	직렬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계 행정 기관	경제 자유 구역청
일반직	전문경력관 (가군)	비상계획관	1	1						
	전문경력관 (나군) 합계		10	7		3				
일반직	전문경력관 (나군)	문화재관리원	1	1						
일반직	전문경력관 (나군)	항공사진판독사	1	1						
일반직	전문경력관 (나군)	직업훈련교사	1	1						
일반직	전문경력관 (나군)	생활체육교사	1			1				
일반직	전문경력관 (나군)	촬영기사	2	2						
일반직	전문경력관 (나군)	화생방요원	1	1						
일반직	전문경력관 (나군)	인쇄발간원	1	1						
일반직	전문경력관 (나군)	농기계교육교관	2			2				
연구직 합계			257	4		183		70		
	연구관 합계		40			39		1		
연구직	연구관	학예연구	1					1		
연구직	연구관	농업연구	19			19				
연구직	연구관	보건연구	4			4				
연구직	연구관	보건연구·환경연구	10			10				
연구직	연구관	환경연구	6			6				
	연구사 합계		217	4		144		69		
연구직	연구사	학예연구	12	2				10		
연구직	연구사	기록연구	7	2				5		
연구직	연구사	공업연구	2			2				
연구직	연구사	농업연구	70			59		11		
연구직	연구사	녹지연구	10					10		
연구직	연구사	수의연구	12					12		
연구직	연구사	해양수산연구	21					21		
연구직	연구사	보건연구	37			37				
연구직	연구사	보건연구·환경연구	10			10				
연구직	연구사	환경연구	36			36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직종	직급	직렬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계 행정 기관	경제 자유 구역청
지도직	합계		31			31				
	지도관	합계	8			8				
지도직	지도관	농업연구·농촌지도	1			1				
지도직	지도관	농촌지도	7			7				
	지도사	합계	23			23				
지도직	지도사	농촌지도	23			23				
별정직	합계		22	11	11					
	1급·1급상당	합계	1	1						
별정직	1급·1급상당	행정·별정	1	1						
	4급·4급상당	합계	8		8					
별정직	4급·4급상당	행정·기술·별정 (전문위원)	8		8					
	4급상당	합계	1		1					
별정직	4급상당	별정 (비서실장)	1		1					
	5급상당	합계	6	6						
별정직	5급상당	국제관계대사	1	1						
별정직	5급상당	특별보좌관	3	3						
별정직	5급상당	별정(비서)	2	2						
	6급상당	합계	3	2	1					
별정직	6급상당	별정(비서)	3	2	1					
	7급상당	합계	2	1	1					
별정직	7급상당	별정(비서)	2	1	1					
	8급상당	합계	1	1						
별정직	8급상당	별정(비서)	1	1						
소방직	합계		4,373	281		4,092				
	소방정	합계	25	7		18				
소방직	소방정	소방	25	7		18				
	소방령	합계	97	30		67				
소방직	소방령	소방	97	30		67				
	소방경	합계	336	42		294				
소방직	소방경	소방	336	42		294				
	소방위	합계	425	62		363				
소방직	소방위	소방	425	62		363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직종	직급	직렬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 기관	경제 자유 구역청
	소방장 합계		702	73		629				
소방직	소방장	소방	702	73		629				
	소방교 합계		1,058	39		1,019				
소방직	소방교	소방	1,058	39		1,019				
	소방사 합계		1,730	28		1,702				
소방직	소방사	소방	1,730	28		1,702				
교육직 합계			74			74				
	총장 합계		2			2				
교육직	총장	총장	2			2				
	교수·부교수· 조교수 합계		54			54				
교육직	교수·부교수· 조교수	교수·부교수·조교수	54			54				
	조교 합계		18			18				
교육직	조교	조교	18			18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④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제3조의2(소방공무원의 배치)** 제3조제1항의 소방기관 및 같은 조 제4항의 소방본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범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정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시·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시·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중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시·도별 및 계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④ 시·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시·도별 정원(제3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은 제외하며, 이하 “시·도별정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공무원의 배치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도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도별정원에 따른 소속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도별정원의 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별정원을 증감하여 정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시·도별 소방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시·도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및 통보)** ① 시·도는 영 제2조제5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소속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하부조직별로 배정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정원 배정은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 규모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2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도별 정원을 증감하여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정원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소방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다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경상남도규칙 제 호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총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의사담당관”을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으로, “총무담당관은”을 “의정담당관은”으로, “소통홍보담당관, 의사담당관 및 입법담당관은”을 “의사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및 입법담당관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총무담당관”)을 “(의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담당관”을 “의정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5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장 밑에 <u>총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의사담당관</u> 및 입법담당관을 두며, <u>총무담당관은</u>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u>소통홍보담당관, 의사담당관 및 입법담당관은</u>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입법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3조(하부조직) ① ----- <u>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u> ----- <u>의정담당관은</u> ----- <u>의사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및 입법담당관은</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 <u>총무담당관</u> ) <u>총무담당관은</u>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4조( <u>의정담당관</u> ) <u>의정담당관</u> -----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제5조 (생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 (생략)	제5조 (현행 제6조와 같음)

**<별 지>**

**[별표 2]**

### 세 부분장사무

과 별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의 정 담당관	의 정 인사교육 경 리 청사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li> <li>2. 기록물·보안·관인·공인 관리</li> <li>3. 의원 등록관리 및 윤리강령 전반에 관한 사항</li> <li>4. 의원역량개발 교육 및 연찬회 관련 사항</li> <li>5. 의전에 관한 사항</li> <li>6. 의원 국제친선연맹 교류 및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li> <li>7. 집행부 위원회 의원추천 관련 사항</li> <li>8.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li> <li>9.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관한 사항</li> <li>10. 의회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li> <li>11. 도의회의장 포상계획 수립·시행 총괄</li> <li>12. 의회 경비 및 의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li> <li>13.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li> <li>14. 의회 인사위원회 운영</li> <li>15.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li> <li>16. 공무원 승진, 전보, 파견,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li> <li>17. 공무원 명예퇴직·조기퇴직·공로연수제도 운영</li> <li>18. 대우공무원 지정</li> <li>19. 인사기록 보존관리 및 인사통계 운영</li> <li>20. 공무원증 발급</li> <li>21. 인사행정정보시스템운영</li> <li>22. 의회사무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li> <li>23. 공무원 등 비공무원 인사관리 총괄</li> <li>24.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li> <li>25. 공무원 표창에 관한 사항</li> <li>26.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li> <li>27. 의원 및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li> <li>28. 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li> <li>29. 보수, 제 수당지급 및 관련 자료 정리</li> <li>30.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li> <li>31. 의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li> <li>32.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보관</li> <li>33. 물품 및 차량유지·관리</li> <li>34.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및 회계직인 관리</li> <li>35. 일상경비 교부 및 출납사무 검사</li> <li>36.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계산서 처리</li> <li>37. 법인카드 종합관리</li> <li>38. 청사 유지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li> <li>39. 청사 증축 계획 수립 및 추진</li> <li>40. 청사 시설물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li> <li>41. 청사시설 신·증설 및 수선공사 설계·감독</li> </ol>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과 별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42. 청사 내 공간 조정·배치에 관한 사항 43. 청사 중앙통제실 운영에 관한 사항 44. 청사 수·변전실 등 전기시설 유지관리 45. 청사 냉·난방시설 등 기계시설 유지관리 46. 청사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및 추진 48. 의원숙소 및 대회의실 등 대관 49. 의회 청사 실내·외 청소 및 조경 관리 50. 청소·조경관리 공무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의 사 담당관	의 사 기 록	1. 연간 회기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 지원 3.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및 결과 총괄 4.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의안의 접수·회부·이송 등 처리 및 의결 문서 보존관리 6.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7.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관한 사항 8. 전·후반기 원구성 총괄 9. 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등 협의에 관한 사항 11. 5분 자유발언 등 본회의장 발언에 관한 사항 12. 서면질문 및 답변에 관한 사항 13. 의안 통계자료 작성 및 의안 처리부 정리 14. 본회의 의사일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5. 소관 예산 집행 및 결산 16. 회의록 작성·발간·배부 및 보존관리 17. 본회의, 위원회 등 회의진행사항의 녹음 및 속기 18. 속기요원의 본회의, 위원회 등 회의장 배치 19. 회의록 검색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소 통 홍 보 담당관	소 통 미디어홍보 도민공감	1. 미디어 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의정 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브리핑룸 관리·운영 3. 언론대담 및 인터뷰 지원 4. 기자단 취재 지원 및 언론 모니터링 5. 사진 촬영 및 관리 6. 신문구독 및 광고 7. 도의회 TV 및 라디오 공익 캠페인 광고 8. 의정 홍보 영상물 제작·관리 9. 의회소식지 및 각종 간행물 발간 10. 의회사 편찬 11. 도민소통 및 공감도 향상을 위한 신규시책 발굴 12. 도의회 SNS 매체 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3. 도의회 의정활동 SNS 콘텐츠 기획·제작·운영 14. 도의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15.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16. 본회의(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유튜브 생방송 운영 17. 도의회 의정홍보 영상(유튜브) 기획 및 제작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과 별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18. 도의회 SNS 매체별 통계 작성 및 분석 19. 의정뉴스 기획 및 제작 20. 방송 및 음향시설 관리 21. 의정모니터링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22. 도민 만족도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23. 지역별 현안 민원관리 및 소관부서와 협의에 관한 사항 24. 현안 민원 현장조사 및 조사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25. 청원·진정 민원의 접수·분류 및 처리결과 통지 26. 민원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27.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8. 의회 견학 및 방청·참관에 관한 사항 29. 의회 견학 및 방청·참관에 관한 사항 30. 자료실 관리·운영 31. 홍보관 관리·운영 32. 통신실 및 전산실 통합 유지관리 33.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34.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업무 총괄
입 법 담당관	입 법 입법평가 예산분석 연구 정책	1. 의회 소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총괄 관리 2. 조례 등의 제정·개정과 관련한 법제 지원 3. 자치입법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4.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 관련 법령 개선안 연구 5. 조례 제정·개정을 위한 토론회 지원 6. 의회 관련 쟁송업무 처리 7. 입법·법률고문 운영 8. 의회관련 법규집 제작 9. 입법평가 종합 기획·조정 10. 조례 사후 입법평가 운영 11.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2. 입법평가 관련 연구용역 및 자문 13. 입법평가 결과 사후관리 14. 도 및 교육청 예·결산 분석 15. 도 및 교육청 예산 주요사업 기획분석 16.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17.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관리 및 지원 18.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지원 19. 의회 관련 학술연구 용역 수행 20. 의장·사무처장 등의 지시사항 연구·검토 등 21.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 22. 의원발의 조례안 등 기초조사 및 자료 분석 23. 지역현안·과제 접수 및 해결방안 검토 24. 정책보고서 발간 25. 그 밖에 도의원 요구사항에 대한 지원 등

## 별표 2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세 부분장 사무			[별표 2] 세 부분장 사무		
과별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과별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총 무 담당관	총 무 인사교육 경리 청사관리	1. ~ 50. (생략)	의 정 담당관	의 정 인사교육 경리 청사관리	1. ~ 50. (현행과 같음)
소 통 홍 보 담당관	소통 미디어홍보 도민공감	1. ~ 34. (생략)	의 사 담당관	의사 기록	1. ~ 19. (현행과 같음)
의 사 담당관	의사 기록	1. ~ 19. (생략)	소 통 홍 보 담당관	소통 미디어홍보 도민공감	1. ~ 34. (현행과 같음)
입 법 담당관	입법 입법평가 예산분석 연구 정책	1. ~ 25. (생략)	입 법 담당관	입법 입법평가 예산분석 연구 정책	1. ~ 25.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와 시·군·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시·도와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50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나.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행정능률 제고와 주민편의 향상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라 사무 및 근거를 정비·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①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함(안 별표 1)
  - 1) 해양항만과 : 「항만법」에 따라 지방관리연안항 관련 사무
  - 2) 관광개발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도유 행정재산 관리 사무
  - 3) 보육정책과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도유 행정재산 관리 사무
- 나. 소방서장에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함(안 별표 6)
  - 1) 소방본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염성능검사 관련 사무

②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삭제함(안 별표 1)
  - 1) 해양항만과 : 지방관리연안항 관련 사무

나. 소방서장에 재위임하는 사무를 삭제함(안 별표 4)

1) 소방본부 : 방염성능검사 관련 사무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20.(월)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65 (FAX : 055-211-2319)

3) E-mail : lsy8093@korea.kr

- 붙임**
1.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경상남도조례 제 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6,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 별표 1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소관별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소관별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해 양 항만과	8. (생 략) 가.~ 바.(생 략)	(생 략)	해 양 항만과	8. (현행과 같음) 가.~ 바.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사.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항만시설 사용신고의 수리,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의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신고의 수리, 사용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 지급	(생 략)		사.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항만시설 사용신고의 수리,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의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신고의 수리, 사용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 지급, <b>항만시설의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의 결정</b>	(현행과 같음)
	아.~ 버. (생 략) <u>&lt;신 설&gt;</u>	(생 략)		아.~ 버. (현행과 같음) <u>서.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변경 등록</u>	(현행과 같음) <u>「항만법」 제25조</u>
관 광 개발과	<u>&lt;신 설&gt;</u>	<u>&lt;신 설&gt;</u>	관 광 개발과	<u>1. 도유 행정재산의 실태조사</u>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u>
	<u>&lt;신 설&gt;</u>	<u>&lt;신 설&gt;</u>		<u>2. 도유 행정재산의 보존 및 관리</u>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u>
	<u>&lt;신 설&gt;</u>	<u>&lt;신 설&gt;</u>		<u>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유지관리(무단점유 방지, 공부정리 등)</u>	
	<u>&lt;신 설&gt;</u>	<u>&lt;신 설&gt;</u>		<u>나. 행정재산의 사용료·변상금 등 세입 부과·징수</u>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현 행			개 정 안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보 육 정책과	<신 설>	<신 설>	보 육 정책과	1. <u>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무</u>	「 <u>청소년활동진흥법</u> 」 제11조
	<신 설>	<신 설>		2. <u>도유 행정재산의 신탁조사</u>	「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u> 」 제14조, 경상남도 <u>공유재산 관리 조례</u> 」 제3조
	<신 설>	<신 설>		3. <u>도유 행정재산의 보존 및 관리</u>	「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u> 」 제14조, 경상남도 <u>공유재산 관리 조례</u> 」 제3조
	<신 설>			가. <u>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유지관리(무단점유 방지, 공부정리 등)</u>	
	<신 설>			나. <u>행정재산의 사용료·변상금 등 세입 부과·징수</u>	

## 별표 6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소방본부	1. ~ 3. (생략)	(생략)	소방본부	1. ~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4. <u>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목재의 방염성능검사</u>	「 <u>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 제21조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행정능률 제고와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위임사무와 근거를 정비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발생이 없음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장 재 혁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별표1]

#### 《직속부서》

#### 권한위임사항(제2조 제1항 관련)

소 관 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투 자 유치단	1. 보조금 지원여부 결정을 위한 현지 실사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2.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여부 점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4조	
	3.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경영 실태 점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 제30조,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5호, 제25조, 제26조	
	4. 외국인투자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3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와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에게 위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4항·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	

#### 《기획조정실》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정 보 통 신 담당관	1. 경상남도사회조사, 경상남도사업체조사 등 경상남도가 승인을 득한 통계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통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2조·제25조	
	가. 통계조사원의 모집·채용·훈련 및 관리		
	나. 조사서류의 접수·배부·수집 및 관리		
	다. 조사업무의 지도·감독		
	라. 조사표의 내용검토 및 보완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 《도민안전본부》

소 관 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사 회 재난과	1. 승강기 유지관리업 관리에 관한 업무		
	가. 등록 및 변경등록, 폐업·휴업 및 재개신고의 수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	
	나. 등록기준 유지에 관한 실태조사, 등록취소(청문 포함) 및 사업정지·보완·하도급 계약해지 명령, 과징금 부과·징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4조·제45조, 제74조제2항제2호, 제77조	
	2. 승강기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자료 및 장부,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의 보고·검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75조제3항	
	3. 승강기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5항	

## 《산업국》

소 관 별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비 고
산 업 정책과	1.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선·과기·수거·판매중지의 명령, 과기·수거의 이행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사실의 공표, 교환·환불·수리 기타의 사항 이행명령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 관리법」 제40조	
	나. 보고명령 및 검사·질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 관리법」 제41조	
	다. 과태료 부과·징수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 관리법」 제51조	
주 력 산업과	1. 도유 행정재산의 실태조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2. 도유 행정재산의 보존 및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유지관리(무단점유 방지, 공부정리 등)		
	나. 행정재산의 사용료·변상금 등 세입 부과·징수		
에 너 지 산업과	1.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선·과기·수거·판매중지의 명령, 과기·수거의 이행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사실의 공표, 교환·환불·수리 기타의 사항 이행명령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 관리법」 제40조	
	나. 보고명령 및 검사·질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 관리법」 제41조	
	다. 과태료 부과·징수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 관리법」 제51조	
	2.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및 안전 확보상 필요한 조정 명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3조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비 고
	가.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에 대한 처분(불합격 기기 및 유효기간 만료된 기기 사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나. 검사대상 기기조종자 선임 기한 연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다. 보고 명령 및 장부·서류·에너지사용기자재, 물건 등 검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6조제1항	
	라. 과태료 부과·징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5항	
	4. 「전기안전관리법」 관련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기술기준의 적합 명령 (다만,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에 한정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0조	
	5. 「전기공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전기공사업의 폐업 신고의 수리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2항	
	나. 전기공사업 위반자에 대한 시정 명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시	「전기공사업법」 제27조	
	다. 전기공사업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전기공사업법」 제28조	
	라. 이해관계인의 공사업자에 대한 상당한 조치요구 사항 처리	「전기공사업법」 제29조	
	마. 전기공사업 등록 취소에 따른 청문	「전기공사업법」 제30조제2호	
	바. 과태료 부과·징수	「전기공사업법」 제46조	
	6. 석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에 한정한다)		
	가. 석유판매업 등록·신고, 변경등록·신고, 조건부 등록 또는 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나. 석유판매업에 대한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수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다. 석유판매업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제3항	
	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마.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운송·사용의 중지 또는 제조장·판매소·저장시설의 폐쇄·철거명령 및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0조제1항	
	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을 받은 자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요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0조제2항	
	사. 석유판매사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	
	아.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자에 대한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0조	
	자. 석유판매사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9조	
	7. 석유대체연료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대리점에 한정한다)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가.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 및 변경 등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나.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4조	
	다.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5조	
	8. 계량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비법정 계량기 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에 따른 내용 기재 서류 접수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나. 계량기제작업, 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계량기 자체 수리 및 자체수리자 인정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라. 계량기 정기·수시검사 및 정기 검사 면제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5조	
	마. 정기검사 합격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증인 표시 및 정기검사 불합격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 표시 제거 또는 소인 표시	「계량에 관한 법률」 제33조	
	바. 계량기 제작업자, 수리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법정 계량을 행하는 자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 계량기·장부 그 밖의 물건 검사 질문	「계량에 관한 법률」 제34조	
	사. 계량기 정기·수시검사 결과 계량기 또는 표시 개선 명령	「계량에 관한 법률」 제35조	
	아. 계량기제작업·수리업·계량증명업·등록 취소 또는 사업정지 명령, 청문	「계량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1조	
	자.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	
	차. 부정계량기의 처리	「계량에 관한 법률」 제37조	
	9.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 선정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경제통상국》**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경 제 기 업 과	1.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등록갱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다. 등록증 반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라. 변경등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마. 영업 폐지신고 수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바. 대부업자에 대한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보고, 자료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사.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요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아.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해당 명령의 내용 통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7항	
	자. 영업정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제1항	
	차.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제8조	
	카.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및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사실 통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타. 등록 수수료 징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파.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사회경제 노동과	1. 협동조합 설립신고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2. 협동조합 신고 확인증 발급 등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의 2	
	3. 협동조합 정관 변경 신고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4. 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 신고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	
	5. 협동조합 해산 신고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	
	6. 협동조합 법인 등의 조직변경 신고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	
	7. 협동조합 과태료 부과·징수	「협동조합기본법」 제119조	
	8. 협동조합의 감독	「협동조합기본법」 제70조의2	

《행정국》

소 관 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인사과	1. Ⅱ, Ⅲ급 비밀취급의 인가	「보안업무규정」 제7조제2항제3호	
회계과	1. 국·도유 위탁관리물품 폐기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 「경상남도 물품관리조례」 제18조	
	2. 은닉 도유재산의 조사 및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3. 도유 일반재산의 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가. 1건당 대장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나. 위임관리 중인 일반재산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		
	4. 도유 일반재산의 실태조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5. 도유 일반재산의 보존 및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가. 일반재산의 대부 및 유지관리(무단점유 방지, 공부정리 등)		
	나. 일반재산 대부료·변상금 등 세입 부과·징수		

### 《해양수산국》

소 관 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해 양 항 만 과	1. 해양수산사업 추진실태 보고 및 점검·평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2. 해양수산시설의 사후관리, 관리부 기록·비치, 관리카드 비치, 추진실태 점검·평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3. 해양수산시설의 담보제공, 매각·양도 임대·폐기승인, 보조금 회수 및 각종 시혜 대상제외 등 필요한 대책 강구 조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규정된 소규모매립에 관한 다음의 권한 ( 「항만법」 제3조제1항각호에 따른 항만구역 밖의 공유수면에 한정한다)		
	가. 매립면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제3항	
	나. 매립면허의 부관 첨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다. 매립면허의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라. 매립면허수수료의 징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마. 소규모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바. 매립지의 이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사.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아. 불용 국유지·공유지의 양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자. 매립지의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	
	차. 준공검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타.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 및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	
	파.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및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하. 재평가매립지 소유권에 관한 권리보전 조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거. 매립지사용의 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	
	너. 매립면허의 취소 또는 매립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공사중지 명령, 건축물·시설물 등의 개축·제거·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원상회복,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및 표지 설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더. 효력 상실된 매립면허의 회복 및 부관 변경·첨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	
	러. 원상회복에 필요한 사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머. 공유수면매립 관련 보고 및 검사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6조	
	버. 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 및 그 협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7조	
	서. 청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	
	어. 과태료의 부과징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	
	5. 안전성 조사를 위한 시료수거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2조제1항	
	6.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가.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의 조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	
	나. 저장 중이거나 출하 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위반 사실의 조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2항	
	7. 과태료 부과 징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3조	
	8.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다음의 권한	「항만법」 제2조	
	가.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	「항만법」 제24조	
	나. 분구의 설정	「항만법」 제21조	
	다. 항만대장의 작성·비치	「항만법」 제22조	
	라. 시설장비의 설치·철거 신고의 수리	「항만법」 제31조	
	마. 시설장비의 검사	「항만법」 제33조	
	바. 검사의 면제	「항만법」 제34조	
	사.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항만시설 사용신고의 수리,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의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신고의 수리, 사용료 대납 업무에 드는 경비 지급, 항만시설의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의 결정	「항만법」 제41조, 제42조	
	아. 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 및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명령	「항만법」 제43조	
	자. 사용료의 강제징수(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82조	
	차.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명령 및 고시(권한이 위임된 사항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명령 및 고시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83조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카. 처분 등(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84조	
	타. 보고명령 및 출입검사(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85조	
	파. 장기체류화물의 처리(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86조	
	하. 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88조	
	거. 공용부담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93조 및 제94조	
	너.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96조	
	더. 청문(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100조	
	러. 권리·의무 이전의 인가(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101조	
	머. 항만관리법인의 지정(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23조	
	버. 수수료 징수(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105조	
	서.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변경등록	「항만법」 제25조	
	9. 연안항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해양시설의 신고 접수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제1항	
	나. 해양시설에 대한 자료 제출 또는 보고 명령, 출입검사 및 확인·점검	「해양환경관리법」 제115조제2항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33조	
	10. 지방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가.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의 제거명령·제거·비용 충당을 위한 처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허가, 변경 협의·허가, 고시, 공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하게 하는 경우 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다. 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의 수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한 협의·승인 및 변경 협의·승인과 이에 따른 협의 및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제10조제2항	
	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감면 및 분할납부, 가산금 징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바. 점용료·사용료의 조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 변상금·가산금 징수 및 분할납부 징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아. 권리·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신고의 수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자.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변경 승인,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차. 준공검사, 준공검사의 확인, 공사 완료 신고 수리 및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카.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의 취소, 점용·사용의 정지,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에 필요한 조치명령, 고시, 표지 설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타. 점용·사용허가의 취소, 점용·사용의 정지 또는 인공구조물·시설물 및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 명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파. 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통지,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인공구조물 등의 국가 귀속 조치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및 반환 조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하. 이행보증금의 예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6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원상회복과 그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비용 충당 및 반환을 포함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7항	
	거. 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의 출입 및 조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	
	너.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7조	
	더. 청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	
	러. 과태료의 부과·징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	
수 산 정 책 과	1. 수산자원 관리수면의 관리	「수산자원관리법」 제49조	
	2.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이행명령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나.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다.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신고의 수리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3항	
	라. 처리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마.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리방법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조치명령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바. 처리업자의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청문실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3항	
	사. 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및 과징금 사용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3항·제4항	
	아. 처리업자의 휴업과 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의 수리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자.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	
	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 판로확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카. 과태료의 부과·징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3. 연안어업허가에 관한 업무		
	가. 어업의 허가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나. 휴업 및 재개업 신고 수리	「수산업법」 제29조, 제50조제1항	
	다. 어업의 제한·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의 제한	「수산업법」 제33조제1항, 제50조제1항	
	라. 어업허가의 취소	「수산업법」 제34조, 제50조제1항	
	마. 청문	「수산업법」 제103조제2호	

**《도시주택국》**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도 시 정 책 과	1.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협의, 고시, 열람에 관한 다음의 권한(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시·군에 한정하며, 광역도시계획시설 및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시설과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가. 도로(중로 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포함한다)		
	나. 주차장		
	다. 자동차 정류장		
	라. 궤도		
	마.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바. 광장(중로 이하에 접한 광장에 한정한다)		
	사. 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 2만㎡ 미만 규모의 공원에 한정한다)		
	아. 녹지(중로 이하에 접한 녹지에 한정한다)		
	자. 유원지		
	차. 공공공지		
	카. 유통업무설비		
	타. 수도공급설비		
	파. 전기공급설비		
	하. 가스공급설비		
	거. 열공급설비		
너. 방송·통신시설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관별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디. 공동구		
	러. 시장		
	머.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버. 학교(대학은 제외)		
	서. 공공청사(국가 및 도 단위 기관은 제외한다)		
	어. 문화시설		
	저. 체육시설(골프장·스키장·자동차 경주장은 제외한다)		
	처. 연구시설		
	커. 사회복지시설		
	터. 공공직업훈련시설		
	퍼. 청소년수련시설		
	허. 하천		
	고. 유수지		
	노. 저수지		
	도. 방화설비		
	로. 방풍설비		
	모. 방수설비		
	보. 사방설비		
	소. 방조설비		
	오. 하수도		
	조. 도축장		
	초. 폐차장		
	코. 종합의료시설		
	토.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포. 수질오염방지시설		
	호. 장사시설		
	구.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2. 경미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중 다음의 권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4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의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고시		
	3.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고시, 열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4. 도시공원의조성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관별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5.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6.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고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시·군관리계획의 실효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	
	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7.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 변경 또는 폐지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나. 실시계획인가의 공고, 공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다. 실시계획인가의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라.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에 대한 협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송달, 공시(도지사가 시행하거나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 사업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4조	
	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준공검사 필증교부, 공사완료 공고(도지사가 시행하거나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 사업을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8. 법률 위반자에 대한 조치 명령(위임된 사무에 한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9.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고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5년 이내에 같은 용도 지역을 연결하여 지정·변경하는 경우 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가. 일단의 토지 총면적이 10만㎡ 미만인 개발진흥 지구의 지정 및 변경(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한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7조	
	나. 시장·군수가 인가·허가·승인권자인 경우 도시·군관리계획결정·고시가 의제되는 사무에 대한 협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10.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		
	가. 신탁개발승인	「도시개발법」 제12조	
	나.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허가	「도시개발법」 제13조	
	다. 선수금 승인	「도시개발법」 제25조	
	라.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수립	「도시개발법」 제26조	
	마.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 및 공공시설을 인수·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준공검사 참여 요청	「도시개발법」 제50조	
	바.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 필증의 교부, 보완시공의 조치	「도시개발법」 제51조	
	사.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따른 합의	「도시개발법」 제52조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관별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아.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허가	「도시개발법」 제53조	
	자.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 부담	「도시개발법」 제58조	
	차.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청취 및 통보	「도시개발법」 제66조	
	카. 국·공유지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관한 협의	「도시개발법」 제68조	
	타. 시행자 지정 및 변경 지정	「도시개발법」 제11조	
	파. 실시계획 (변경)인가·협의 및 고시	「도시개발법」 제17조·제18조·제19조	
	하. 토지상환채권 발행 승인	「도시개발법」 제23조	
	거. 과태료 부과·징수	「도시개발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너. 체비지확인서 확인	국토교통부 훈령 「도시개발업무지침」 7-3-2	
	1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도시개발법」 제20조	
	12. 대도시 특례 적용 이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한정한다)	「도시개발법」	
	13.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처리 특례) 제9호에 따른 사무에 한한다〕		
	가. 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2	
	나. 도시공원결정의 실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다.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라.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마.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바.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사.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아.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자. 겸용공작물의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차.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카. 원상회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파. 토지매수의 청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하. 매수청구의 절차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거. 비용의 부담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너.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관별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러. 녹지의 설치 및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머.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버. 녹지의 점용허가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서. 비용부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어. 입장료 등의 징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저. 점용료의 징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처. 점용료의 강제징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커.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터.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퍼. 청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허.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안내표지 설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고. 도시공원대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노. 과태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14. 동일 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건 축 주택과	1. 착공신고 및 연기신고	「주택법」 제16조	
	2. 감리자의 지정 및 교체 등에 관한 사항	「주택법」 제43조	
토 지 정보과	1. 지적기준점성과 관리에 관한 권한		
	가. 지적삼각점성과 관리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조	
산업단지 정 책 과	1. 대도시 특례 법 적용이전 도지사가 지정한 산업단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창원시, 김해시)		
	가. 개발계획 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제7조의2제4항	
	나. 산업단지 지정 등의 고시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다.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라. 산업단지의 전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마. 사업시행자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바. 실시계획(변경)의 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8조의2제3항	
	사.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및 관계서류 사본의 송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	
	아.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협의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자.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의견청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차.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준공검사 및 준공검사의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항	
	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공고 및 통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파.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8항	
	하.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거.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처분·청문 및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2. 농공단지 입주업체 종합심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제20조	
	3. 일반산업단지 관리 (관리공단등에위탁한경우는제외한다)		
	가. 산업단지 관리업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	

**《교통건설국》**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도로과	1. 지방도의 유지·관리		
	가. 인력(도로보수원)으로 가능한 유지 관리 행위	「도로법」 제31조	
	1) 노면, 길어깨, 측구 배수로, 비포장도로 등의 정비 및 준설		
	2) 도로 비탈면 정비 및 낙석제거		
	3) 도로상 시거 장애물 제거		
	나. 가로등, 지하차도(배수기계 등), 터널, 시가지 보도 등의 유지 관리	「도로법」 제31조	
	다. 일상 도로 순찰	「도로법」 제31조	
	라. 재해대책	「도로법」 제31조	
	1) 재해 위험지구 조사·지정 및 사전조치		
	2) 재해 응급복구		
	3) 재해조사 및 재해대장 작성		
	4) 재해 시 우회도로 지정 및 입간판 설치		
	5) 도로침수 방지, 겨울철 제설 및 결빙예방작업		
	마. 중요시설물의 방호	「도로법」 제31조	
	바. 도로교통량 조사 등 소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유지·관리 업무	「도로법」 제31조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관별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2. 지방도상 타 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도로법」 제33조	
	3. 지방도상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도로법」 제35조	
	4. 지방도의 도로점용 허가 및 안전관리 등	「도로법」 제61조 및 제62조	
	5. 지방도 도로점용 공사의 대행	「도로법」 제65조	
	6. 지방도의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도로법」 제66조	
	7. 지방도의 도로점용료 감면	「도로법」 제68조	
	8. 지방도의 도로점용 관련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 등	「도로법」 제73조 및 제74조	
	9. 지방도의 도로점용 허가 등을 받은 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	「도로법」 제97조	
	10. 지방도의 도로점용료 미납부자에 대한 점용료 강제징수 및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69조 및 제70조	
	11. 지방도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	「도로법」 제72조	
	12. 지방도의 도로점용 허가 등 「도로법」 제61조제1항, 제62조제5항 및 제73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도로법」 제117조	
	13. 도로점용 허가 관련 권리·의무 승계신고 접수	「도로법」 제106조제2항	
	14. 지방도의 도로점용 허가 취소 및 청문	「도로법」 제63조 및 제101조제2호	
	15.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도로법」 제100조	
	16. 지방도의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운행 허가 관련 수수료의 징수	「도로법」 제103조	
	17. 각종 부담금의 징수	「도로법」 제89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18. 재해발생 시 지방도별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수용 및 손실보상	「도로법」 제83조	
	19. 지방도의 접도구역 관리	「도로법」 제40조	
	20. 지방도의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예방을 위한 행위제한 등	「도로법」 제46조	
	21. 지방도의 접도구역에서의 「도로법」 제40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	「도로법」 제96조제1호	
	22. 도로표지 유지·관리	「도로법」 제55조	
	23. 지방도상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도로법」 제77조	
	24. 도로공사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및 손실보상	「도로법」 제82조	
	25.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 및 변경 허가	「도로법」 제52조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26. 경제자유구역 내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비용을 우선 지원받아 설치되는 도로만 해당한다.〕		
	가. 도로공사 및 유지·관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8호	
	- 도로의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		
	- 시설물 유지·관리(교량, 고가도로 등)		
	-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		
	나. 타 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8호	
	다. 도로의 점용허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8호	
	라. 점도구역의 지정·관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8호	
	마. 도로표지의 설치·관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8호	
	바. 도로관리원 임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8호	
	사.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8호	
	아. 공익을 위한 처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8호	
	자. 수수료의 징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8호	
	차. 점용료 및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8호	
	카.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8호	
	타.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8호	
	27. 도유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28. 도유 행정재산의 실태조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29. 도유 행정재산의 보존 및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유지관리 (무단점유 방지, 공부정리 등)		
	나. 행정재산의 사용료·변상금 등 세입 부과·징수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관별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교 통 정 책 과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 및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질문(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택시, 자동차대여,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운송가맹 사업에 한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 및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	
	2. 저장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및 등록말소에 관한 통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장법」 제5조·제6조	
	3. 택시미터의 검정	「자동차관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4.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5.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6. 자동차의 사용정지(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택시에 한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	
	7. 벽지노선 그 밖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명령에 따른 손실 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3항	
	8. 터미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의 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나. 사용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다. 시설사용료의 인가 및 변경인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1조	
	라. 터미널의 위치 변경의 인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마. 터미널의 사용명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	
	바.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신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사. 사업의 상속신고 수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아.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9. 터미널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 권한		
	가. 사업면허·인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나.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청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6조·제88조	
	10.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효력 정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11.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대여 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다.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허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	
라.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		
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 및 수요응답형 교통수단(단, 해당 시·군내에서만 운행하는 한정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관별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13. 자동차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동차 등록원부 비치·관리,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의 회복을 위한 조치, 등록원부 및 기재사항 멸실·훼손·부정한 유출방지 및 보존을 위한 필요한 조치,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열람신청의 처리	「자동차관리법」 제7조	
	나. 자동차 신규등록, 등록증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및 등록의 거부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9조	
	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봉인 및 등록번호판·봉인 회수 폐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라. 자동차 등록원부와 기재사항 변경등록 처리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마. 자동차소유권 이전 등록의 처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바. 자동차 말소등록의 처리와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의 교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사. 자동차 압류등록 및 통지	「자동차관리법」 제14조	
	아. 자동차 등록번호의 부여 및 등록번호 변경 부여	「자동차관리법」 제16조	
	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작·교부 및 봉인 대행자 지정,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21조	
	차.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따른 청문	「자동차관리법」 제75조	
	카.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 대행업무 폐지신고 수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타.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신분증 교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파.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의 시·군간 사업구역 조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하. 자동차임시운행허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교부·반납	「자동차관리법」 제27조	
	거. 자동차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접수·시정·통지	「자동차관리법」 제28조	
	14.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경과 통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15. 자동차 경매장의 개설 승인 및 변경 승인	「자동차관리법」 제60조	
	16.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자동차관리법」 제74조	
	17.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자동차관리법」 제84조	
	18.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변경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19.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및 임대 허가·반환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20.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0	
	21. 신고 포상금 지급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22. 영업소, 정류소 등의 관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관별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23. 운송비용전기금지에 대한 조사·보고 등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24.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통보(시외버스 운송사업은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제2항	
	25.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2	
	26. 보고와 검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27.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의 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 제2항	
건 설 지 원 과	1. 건설기계의 등록의무		
	가. 건설기계의 등록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다. 등록의 말소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라.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마. 등록의 표시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제2항	
	바. 등록번호표의 반납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	
	사. 등록번호표의 훼손금지	「건설기계관리법」 제10조	
	아. 등록번호 새김명령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11조	
	자. 건설기계 저장권의 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장법」 제5조	
	차.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	
	2. 건설기계의 폐기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	
	3.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4. 검사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가. 건설기계검사증의 발급	같은 법 제13조제4항	
	나. 정기검사의 최고	같은 법 제13조제5항	
	다. 수시검사의 명령	같은 법 제13조제6항	
	라. 정비명령	같은 법 제13조제7항	
	마. 검사기간의 연장	같은 법 제13조제8항	
	바. 등록번호표의 영치 및 통지	같은 법 제13조제9항	
	5.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	
	6. 과태료 부과·징수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 《문화체육국》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문 화 유 산 과	1. 도지정문화재의 임시지정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21조	
	2.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 구역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식물·광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및 도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의 허가와 허가사항 변경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28조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제4호 및 제74조제2항)	
	3. 도지정문화재의 관리를 위한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33조에 따라 제출하는 각종 신고 처리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33조	
	4. 도 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27조	
	5.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대여·담보제공 허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6.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건조물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행위 허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 허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	

## 《관광개발국》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관 광 정 책 과	1.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고시	「관광진흥법」 제54조제3항	
관 광 개 발 과	1. 도유 행정재산의 실태조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2. 도유 행정재산의 보존 및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유지관리(무단점유 방지, 공부정리 등)		
	나. 행정재산의 사용료·변상금 등 세입 부과·징수		

## 《복지여성국, 보건의료국》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공 통 사 무)	1.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 허가(설립목적 및 목적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복 지 정 책 과	2.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관별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노 인 정 책 과  장 애 인 복 지 과  여 성 가 족 과  보 육 정 책 과	3.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임면보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4.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추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5.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해임명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6.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7.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 제22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8. 사회복지법인 재산취득보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9. 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4제1항		
	보 육 정 책 과	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2. 도유 행정재산의 실태조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3. 도유 행정재산의 보존 및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유지관리 (무단점유 방지, 공부정리 등)				
나. 행정재산의 사용료·변상금 등 세입 부과·징수				
의 료 정 책 과	1.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수명령	「약사법」 제74조		
	나. 폐기명령 등	「약사법」 제71조		
	다. 업무개시 명령 등	「약사법」 제70조		
	라. 의약품 등의 회수 등 사실공표	「약사법」 제72조		
	마. 검사명령	「약사법」 제73조		
	바. 청문	「약사법」 제77조		
	사. 과징금 처분	「약사법」 제81조		
	아. 과태료	「약사법」 제98조		
	2.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약사법」 제41조		
	3. 응급의료기관 등 과태료의 부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		
	4.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지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5. 마약류관리자 지정서 및 변경지정서 교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6. 마약류관리자 지정서 재교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7.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8. 마약류소매업자의 마약 판매 보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9. 마약류 인계 신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10.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발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1. 마약류 취급(도매업)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지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나.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다. 허가증 재교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라. 마약류 취급에 관한 업무의 폐업·휴업 및 휴업업무재개 신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마. 사망한 때·무능력자가 된 때·법인이 해산된 때의 신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바. 허가의 효력 상실·허가취소·업무정지 처분 사항의 마약류 취급자 명부 기재사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사. 사고 마약류 보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아. 자격상실 된 마약류 취급(도매업)자의 보유 마약류 양도 승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판매 승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단서	
	차. 마약판매 보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카. 허가 등의 제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타. 허가취소, 업무정지 및 마약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파. 청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하. 과징금 처분 및 부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12. 부속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포함)	「의료법」 제33조의2, 제35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2조	
	나. 개설허가증 발급	「의료법」 제35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다. 관리카드 작성·비치, 허가사항 변경허가와 행정처분 기록·관리	「의료법」 제35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라. 개설허가증 개서 또는 재발급	「의료법」 제35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13.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포함)	「의료법」 제33조제4항·제5항,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27조의2, 제28조제1항	
	나. 개설허가증 발급	「의료법」 제3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다. 관리카드 작성·비치, 허가사항 변경허가와 행정처분 기록·관리	「의료법」 제3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라. 개설허가증 개서 또는 재발급	「의료법」 제33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14. 지도와 명령	「의료법」 제59조제1항	
	15.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운영 및 수당지급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감염병 관리과	1. 결핵환자 등의 의료	「결핵예방법」 제18조	

《농정국》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농 업 정책과	1. 지방관리 방조제 유지 관리 신청접수 및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 결정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2. 지방관리 방조제 유지관리	「방조제관리법」 제6조	
농식품 유통과	1.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농지·용수·자재등 잔류,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 조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제1호	
	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0조	
	2. 시료수거·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농산물과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토양·용수·자재 등의 시료수거 또는 조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2조제1항제1호	
	나. 해당 농산물을 생산·저장·운반·판매하는 자의 관계장부 또는 서류 열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2조제1항제2호	
	다. 농산물유통조사공무원증 발급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2조제3항	
	3.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 하였을 경우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자에게 대한 조치 권한		
	가. 해당 농산물 생산에 이용·사용한 농지·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 금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	
	나. 해당 농산물의 폐기·용도전환·출하연기 등의 처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제3호		
라.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시 해당기관에 고지 후 적절한 조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3조제2항		
4. 과태료의 부과·징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3조		
친환경 농업과	1. 공동 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	「식물방역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2. 농업기반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항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제방 등을 제외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어촌정비법」 제17조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3.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제방 등을 제외한 농업생산 기반시설물의 폐지 승인	「농어촌정비법」 제24조	
	4. 도유 행정재산의 신탈조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5. 도유 행정재산의 보존 및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유지관리 (무단점유 방지, 공부정리 등)		
	나. 행정재산의 사용료·변상금 등 세입 부과·징수		
동 물 방역과	1. 축산물가공업 중 식육가공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 변경허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나. 품목제조보고 및 품목제조 변경보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5조	
	다. 영업의 승계 신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	
	라. 허가취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마. 과징금 처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8조	
	바. 시설개선명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5조	
	사. 영업소 폐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8조	
	아. 청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3조	
자. 과태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7조		

《환경산림국》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환 경 정 책 과	1.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에 따른 협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2항	
	2. 「자연환경보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자연환경보전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3.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의 기록관리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제5조	
	4. 과태료 부과·징수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5. 폐기물처리업(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변경포함)의 제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여부 통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	
	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변경허가·신고 및 의제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제11항·제12항·제13항·제14항	
	라. 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 부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	
	마.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	
	바. 허가증 교부 및 재교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제7항, 제30조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관별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사. 폐기물처리업자 보관량, 보관기간 초과 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아. 폐기물 처리업 기준 제외 인정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별표7	
	자. 폐기물 재위탁 승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별표8)	
	6.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폐기물관리법」 제27조	
	7.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등	「폐기물관리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1조의2	
	8.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의제)	「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4항	
	9.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처리이행 보증보험금의 보험계약 체결 확인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나. 처리이행 보증보험증서 원본의 접수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9항	
	다. 처리이행 보증보험의 갱신 및 계약갱신 명령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7항·제8항	
	라. 방치폐기물 이행보증방법 변경통보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0항	
	마. 폐기물처리업자의 조업중단 시 폐기물의 처리명령 및 처리명령 연기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바.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에 대한 조치 명령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4항	
	사.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아. 미처리 방치폐기물 권리·의무를 승계한자에 대한 처리명령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3항	
	10. 폐기물처리 신고, 변경신고, 폐기물처리 금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46조의2	
	11.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48조	
	12. 폐기물 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대집행	「폐기물관리법」 제49조	
	13.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에 따른 청문	「폐기물관리법」 제61조제4호	
	14.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 승계 신고수리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3항	
	15. 폐기물처리업의 휴·폐업 등 신고수리	「폐기물관리법」 제37조	
	16.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4항	
	17. 야생동·식물 도 보호구역지정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제4항	
	18. 특정도서의 안내판 설치·관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4항	
	19.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1항	
	20. 보고·검사(위임된 사무에 한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제39조	
	21. 폐기물인계서 등의 전산자료 요구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5항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관별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22. 보고 및 검사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23. 과태료 부과·징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 제4항	
	24.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시보관장소 승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변경승인)서 교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5항	
	다.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라. 임시보관장소 승인(변경승인)사항 통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6항	
	마. 임시보관장소 승인조건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25.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부착 또는 표기 크기 조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표 1의 2	
	다. 건설폐기물 장기보관 필요성 인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표 1의 2	
	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에 관한 예외 인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표 1의 2	
	26.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나.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	
	다.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기간 연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신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2항	
	마. 허가조건의 부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	
	바. 허가증의 교부 및 재교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8항 및 제14조	
	사. 건설폐기물 재위탁 승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관별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아. 처리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항	
	자.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시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조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차. 과징금의 처분 및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카.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타.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파. 행정처분의 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별표3	
	하. 수집·운반업자 임시보관장소 승인취소 및 반입정지 명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4항	
	27.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나.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및 변경승인서 교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시험·연구 등이 목적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라. 건설폐기물 재활용 시험·연구 등이 목적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 및 변경신고 필증 교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마.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28.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과 관련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나. 개선기간 연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다. 개선완료 보고 및 사용중지명령의 철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4항	
	라.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29.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시험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관별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30.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31. 보고서의 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32. 보고·검사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33. 시험·분석의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34.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갱신 및 분담금 납부 명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	
	다.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라.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마.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대집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바.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사. 공제조합과의 협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35. 청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	
	36. 과태료의 부과·징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별표5	
	37. 폐기물처리신고자의 보관시설 예외 인정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별표 17	
	38. 행정처분의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39. 환경전문공사업 등록과 관련한 다음의 권한		
	가.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및 변경,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제16조	
	나. 시공감리자의 지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	
	다. 자료 제출요구 및 출입검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8조	
	라. 등록취소 시 청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0조	
	마. 과태료 부과 징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7조	
	40. 측정대행업 등록과 관련한 다음의 권한		
	가. 측정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7조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관별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나. 자료 제출요구 및 출입검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다. 등록취소 시 청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라. 과태료 부과 징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4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폐기물처리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 예외승인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 보관장소 승인 등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다. 폐기물처리신고자의 임시 보관장소 승인 등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임시보관장소 승인 또는 변경승인 사항 통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제11조제4항	
	마. 사업장폐기물 보관기준 완화 및 보관기간 예외 인정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3호다목	
	바.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제6호다목·라목	
	사. 폐기물 수집·운반 임시차량 인정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6호사목	
	4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입된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소각시설로서 1일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시설과 처리용량 50kg/hr 이상으로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매립시설로서 면적 3만㎡이상인 시설과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기타 처리용량 50kg/hr이상으로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처리능력 2톤/시이상 소각시설의 계량시설 미설치 인정	「폐기물관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9 제1호나목1)사)	
	나.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의 계량시설 및 세륜·세차시설 미설치 인정	「폐기물관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9 제2호가목6)·7)	
	다. 관리형매립시설에 대한 유사차수시설 인정	「폐기물관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9 제2호나목2)가)	
	라. 매립되는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이 침출수 발생이 없거나 발생하는 침출수가 항상 침출수	「폐기물관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9 비고 제1호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인정		
	마.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온도지시계 등 계측장비의 비정상작동 인정	「폐기물관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1 제1호 마목, 사목	
	바. 매립시설주변 수질검사결과 보고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1 제2호 나목 2)다)	
	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조사결과 보고	「폐기물관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13 제3호	
	아. 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신청	「폐기물관리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	
	자. 매립시설검사기관이 실시한 안정성 검토성적서의 제출	「폐기물관리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별표 19 제3호바목	
	차.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폐기물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카. 오염물질의 측정명령 및 주변지역 영향조사명령의 이행기간	「폐기물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의제 협의	「폐기물관리법」 제32조	
	43.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의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의 이용에 대한 인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별표5의3)	
	44.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2	
	45.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	
	46. 의견제출 기회 부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2	
	47.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및 변경, 확인증명서 교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48.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자료 제출 협조	「폐기물관리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4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 위임된 다음 각 호의 사무		
	가.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3조제2항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3조제3항	
	5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등의 관리		
	가.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나. 오염기기 등의 소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5조제3항	
	다. 오염기기 등의 처리기간 연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51.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제1항	
	52. 청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0조	
	53. 위임된 권한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7조제4항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54. 동물원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수족관관련사무는제외)		
	가. 동물원의 등록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동물원 등록의 취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다. 동물원의 휴·폐원 신고 수리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라. 동물원의 안전관리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마. 동물원 운영·관리 기록 제출 요구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바. 동물원의지도·점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사. 동물원에 대한조치 명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아. 동물원 등록 취소에 따른 청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자. 과태료 부과·징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기 후 대기과	1. 대기배출시설 허가 취소 등에 따른 청문(위 임된 사무에 한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	
	2.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3. 대기오염정보 발령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사업장 조업단축 명령 등 조치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2항	
	4.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제2항·제3항	
	5.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대도시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제2항	
	6.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대도시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7항	
	7. 연료의 공급·판매·사용자에 대한 조치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3항	
	8.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 조치명령(단서규정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9. 대기환경규제지역의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대도시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제4항·제5항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10. 국가·일반산업단지 및 마산자유무역지역의 4·5종 사업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대기·수질 중 1개 분야가 1~3종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에 그 사업장은 제외한다)과 국가·일반산업단지 및 마산자유무역지역 밖의 사업장에 관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관련 다음의 권한		
	가.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제2항·제3항	
	나. 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다.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수리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라. 측정기기의 부착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바. 개선명령 미이행자 등에 대한 조업정지 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사.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아.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의 취소·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 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자. 과징금의 부과·징수 처분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차.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카. 환경기술인의 교육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타. 청문	「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	
	파. 과태료 부과·징수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11. 보고·검사 등(위임된 사무에 한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12. 빛공해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조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제12조 제2항	
	나.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 조명에 대한 개선 명령, 개선명령 이행결과의 보고·확인 및 조명시설의 사용중지·사용제한 명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제13조	
	다. 조명기구 운영에 관한 보고 및 검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제17조 제1항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제18조	
	13.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성능 유지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 제5항	
	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증명서 등의 수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제2항	
	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반납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제4항	
	14. 석면해체감리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가. 석면해체감리인의 등록 등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	
	나. 석면해체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6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관별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15. 대기관리권역의 가정용 보일러 사용과 관련한 조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3항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제2호	
	16. 악취관리지역의 악취실태조사 및 결과보고	「악취방지법」 제4조제1항	
수 질 관 리 과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외의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와 인가사항의 변경 또는 폐지	「하수도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제9조	
	2. 수질검사	「수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3. 과태료 부과·징수	「수도법」 제87조 제5항	
	4. 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자에 대한 방제조치 이행명령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	
	5. 방제조치의 대집행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4항	
	6. 특정농작물의 경작권고 등	「물환경보전법」 제19조	
	7.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사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나. 상수원보호구역지정 공고		
	8. 지하수보전구역 지하수 보전·관리 대책 수립	「지하수법」 제12조제7항	
	9. 지하수보전구역 지적고시 등	「지하수법 시행령」 제2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10. 측정기기 부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관할 사업장에 한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가. 측정기기 부착 통보서 접수		
	나. 측정기기 부착 확인		
	다. 측정자료의 행정자료 활용		
	11. 경제자유구역 내 하수도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타인토지의 출입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 제7호	
	나. 손실보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 제7호	
	다. 사용의 제한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 제7호	
	라. 제해시설의 설치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 제7호	
마. 점용허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 제7호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관별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바. 비용부담의 원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 제7호	
	사. 비용부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 제7호	
	아. 원인자부담금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 제7호	
	12.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	「물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항·제2항	
	13.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무		
	가.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및 관리 (국가및시·도지사시설치·운영하는물놀이형수경시설은제외함)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	
	나. 보고 및 검사	「물환경보전법」 제68조 제1항 제4호의2	
	다. 과태료 부과·징수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2항 제7호·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	
수자원과	1.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하천의 유지·보수	「하천법」 제27조	
	나.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허가	「하천법」 제30조	
	다. 하천점용허가 및 이의 고시	「하천법」 제33조	
	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준공인가 및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의뢰	「하천법」 제30조제7항	
	마.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의 대행	「하천법」 제36조	
	바.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하천법」 제37조	
	사. 허가수수료 징수 및 감면	「하천법」 제89조	
	아.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 비용 예치	「하천법」 제48조	
	자. 부담금 등의 징수 및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하천법」 제67조·제68조	
	차.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필요한 처분	「하천법」 제69조	
	카. 공익을 위한 처분	「하천법」 제70조	
	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한 필요한 보고 및 그 밖에 필요한 물건·서류 검사	「하천법」 제90조	
	파.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하천법」 제5조	
	하.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 대한 출입일시·장소 통지	「하천법」 제75조	
	거. 허가 또는 승인취소에 따른 청문	「하천법」 제91조	
	너. 과태료의 부과·징수	「하천법」 제98조	
	더.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하천법」 제74조	
러.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및 보관·처리	「하천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머. 하천시설의 관리 규정 제정	「하천법」 제14조		
	2. 하천관리원 임명 및 법령 위반 사항 시정조치 명령	「하천법」 제72조		
	3.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하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4.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2013. 12.31.)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 토지 소유자의 보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하천별 편입토지조서 공고 및 통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나. 보상청구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다. 보상대상토지 여부 및 보상대상자 결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라.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의 산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		
	마. 보상금의 금액 및 지급일자 통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		
	5.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 및 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 또는 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변경 등으로 인한 손실 보상	「하천법」 제76조·제77조		
	6. 국가하천의 유지 보수	「하천법」 제27조제5항		
	7. 하천예정지 지정·고시·변경 및 폐지	「하천법」 제11조		
	8. 폐천부지 등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	「하천법」 제84조		
	9. 하천공사, 하천의 보전을 위한 하천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	「하천법」 제47조		
	10.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하천법」 제46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11. 도유 행정재산의 실태조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12. 도유 행정재산의 보존 및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유지관리(무단점유 방지, 공부정리 등)			
	나. 행정재산의 사용료·변상금 등 세입 부과·징수			
	산 립 관 리 과	1. 보호수·준보호수 관리 등에 관한 사항(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는 제외한다)		
		가. 보호수 관리	「산림보호법」 제13조의2	
		나.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보호수가 자라고 있는 토지의 매수 또는 교환 등	「산림보호법」 제13조의2·제13조의3	
		다. 준보호수의 지정·관리	「경상남도 보호수 및 준보호수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관별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2.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산림보호법」 제7조	
	나.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산림보호법」 제8조	
	다.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 제9조	
	라.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3. 임업후계자 또는 독립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업후계자의 선발 및 선발 취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항	
	나. 독립가(자영독립가만을 말한다.)의 선정 및 선정 취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항	
산 립 휴 양 과	1.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2. 도립공원 유지관리		
	가. 공원관리청의 자연공원 보호, 자연의 질서 유지와 회복	「자연공원법」 제3조제1항	
	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자연공원법」 제19조제1항	
	3. 공원입장료 및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사용료의 징수와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허가	「자연공원법」 제37조	
	4. 공원 또는 공원보호구역 내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	「자연공원법」 제23조제2항·제3항	
	5. 행위금지 장소의 지정 및 공고	「자연공원법」 제27조	
	6. 자연공원의 보호, 훼손된 자연의 회복,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통행의 제한·금지 및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7. 명령 또는 처분 위반 등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소유자에 대한 철거명령 및 철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대집행	「자연공원법」 제31조	
	8. 공원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 및 부당 이득금의 징수	「자연공원법」 제38조제1항·제3항	
	9. 공원 또는 공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 면제승인, 원상회복 비용 예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자연공원법」 제24조	
	10. 영업과 그 밖의 행위제한·금지, 공고	「자연공원법」 제29조	
11. 다른 사람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에 관한 명령·위임 또는 허가	「자연공원법」 제72조		
12. 허가 취소, 사업정지 또는 변경처분	「자연공원법」 제30조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13.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 시설 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자연공원법」 제20조	
	14. 허가 또는 인가 등의 협의	「자연공원법」 제71조제2항	
	15.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및 매수 청구 대상토지 매수, 매수 대상 토지의 통보 및 매수 계획 수립	「자연공원법」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16.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환급 및 감면	「산지관리법」 제19조·제19조의2	
	17. 재해의 방지 등	「산지관리법」 제37조	
	18. 복구비의 예치 등	「산지관리법」 제38조	
	19.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산지관리법」 제39조	
	20.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산지관리법」 제40조	
	21.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산지관리법」 제40조의 2	
	22. 복구의 대집행 등	「산지관리법」 제41조	
	23. 복구준공검사	「산지관리법」 제42조	
	24. 복구비의 반환	「산지관리법」 제43조	
	25.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산지관리법」 제44조	
	26. 사방지의 지정, 협의 및 지정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27. 사방사업계획의 접수·검토, 사방지 지정·고시, 협의 및 조건의 부과	「사방사업법」 제6조	
	28. 사방지의 지정 해제 및 해제고시	「사방사업법」 제20조	
	29.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자연공원법」 제20조의2	
	30. 이주대책	「자연공원법」 제24조의4	
	31.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법」 제73조의2	
	32. 자연공원 탐방안내	「자연공원법」 제73조의4	

**[별표 6]**

**권한위임사항 (제2조제6항 관련)**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소방본부	1. 위험물탱크안전시험자의 등록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9조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1조	
	다. 지위승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2조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소방본부	마. 과징금 처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	
	바. 청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3. 소방시설업의 등록 등 가.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나. 과징금 처분 다. 청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2조	
	4.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목재의 방염성능검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1조	

**[별표7]**

**권한위임사항(제2조 제7항 관련)**

소 관 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투 자 유 치 단	1. 외국인투자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4항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이 법에 따른 대집행 및 그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에 너 지 산 업 과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액화석유가스 수급 및 안전 확보 상 필요한 조정명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2. 석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주유소, 용제판매소,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에 한정한다)		
	가. 석유판매업 등록·신고, 변경등록·신고, 조건부 등록 또는 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3항·제7항	
	나. 석유판매업에 대한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수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다. 석유판매업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제3항	
	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마.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운송·사용의 중지 또는 제조장·판매소·저장시설의 폐쇄·철거명령 및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0조제1항	
	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을 받은 자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요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0조제2항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사.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자에 대한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0조	
	아. 석유판매사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	
	자. 석유판매사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9조	
	차. 석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품질 검사 및 공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2항·제7항	
	3. 석유 대체연료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주유소, 판매소에 한정한다)		
	가.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 및 변경 등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4항	
	나.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4조	
	다.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5조	
	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석유 대체연료의 품질검사 및 공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제4항	
회 계 과	1. 물품의 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경상남도 물품관리조례」 제16조	
	나. 불용품의 매각	「경상남도 물품관리조례」 제17조	
	다. 불용품의 폐기	「경상남도 물품관리조례」 제18조	
해 양 항 만 과	1.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도 시 정 책 과	1.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지구 내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에 한정한다)		
	가.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 청구(10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20년 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2.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지구 내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에 한정한다)		
	가.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서류의 열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라. 공사완료의 공고(준공검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4. 보조 또는 용자(조사·사업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4조	
	5. 그 밖의 권한		
	가. 타인토지에의 출입(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나. 법률위반자에 대한 처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다. 청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	
	6.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지구에 한정한다)		
	가. 기초 조사 등	「도시개발법」 제6조	
	나. 사업의 신탁 승인	「도시개발법」 제12조제4항	
	다. 조합설립의 인가(변경) 신고	「도시개발법」 제13조	
	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승인	「도시개발법」 제23조	
	마. 선수금 수금의 승인	「도시개발법」 제25조	
	바. 준공검사 및 완료의 공고	「도시개발법」 제50조·제51조	
	사. 준공 검사 시 의제규정 협의	「도시개발법」 제52조	
	아. 조성토지의 준공 전 사용 허가	「도시개발법」 제53조	
	자.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요청	「도시개발법」 제56조	
	차.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도시개발법」 제58조	
	카. 국공유지의 처분 시 협의	「도시개발법」 제68조	
	타.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도시개발법」 제71조	
	7. 환지예정지 지정·통보	「도시개발법」 제35조	
	8.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도시개발법」 제85조	
	9. 민간개발자의 지역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민자유치사업의 수립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5조	
	나. 협약의 체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다.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1조	
	라. 공공시설의 관리권 부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2조	
	마.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금지 등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10. 택지개발에 관한 다음의 권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지구에 한정한다)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	
	나. 토지에의 출입 등	「택지개발촉진법」 제10조제1항	
	다. 토지수용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제1항·제4항	
	라. 환매권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마. 택지의 환매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	
	바. 서류의 열람 및 송달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사. 자료제공의 요청	「택지개발촉진법」 제22조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자.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택지개발촉진법」 제26조	
	11. 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의 수립 및 관리를 위한 다음의 권한		
	가.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법」 제7조, 「경상남도 경관조례」 제7조	
	나.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경관법」 제10조	
	다. 공청회 및 의회의 의견청취	「경관법」 제11조	
	라.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경관법」 제14조	
건 축 주택과	1.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계획의 승인	「주택법」 제15조	
	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주택법」 제19조	
	다.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주택법」 제25조	
	라.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주택법」 제28조	
	마.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주택법」 제43조	
	바. 공유지 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	「주택법」 제30조	
	사. 보고검사 등	「주택법」 제93조	
	아.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	「주택법」 제94조	
	자. 청문	「주택법」 제96조	
	차. 과태료	「주택법」 제106조	
	2. 투기과열지역의 지정·해제 및 주택의 전매 행위 등의 제한	「주택법」 제63조·제64조	
토 지 정보과	1. 부동산중개업자 지도·감독을 위한 다음의 권한		
	가. 중개업자 등의 교육	「공인중개사법」 제34조	
	나. 자격취소 및 청문	「공인중개사법」 제35조	
	다. 자격의 정지	「공인중개사법」 제36조	
	라.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의 통보·통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마. 감독상의 명령 등	「공인중개사법」 제37조	
	바. 협회의 지부설치 신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공인중개사법」 제51조	
	2.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적측량기준점 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3항	
	나. 지적측량기준점 성과의 관리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조	
산업단지 정책과	1. 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포함)개발 실시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실시계획의 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나.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다. 준공검사 실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라. 준공인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마. 보고 및 검사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7조	
	바. 감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2. 기초조사의 실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3. 지정된 산업단지에서의 행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행위허가 및 변경허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나. 행위허가 위반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4.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관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5.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산업단지 관리기관 업무의 위임·위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법원 통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2항제8호 및 제10호		
도로과	1. 경제자유구역 내 도로(도로와 연결되는 교차점 광장을 포함한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비용을 우선 지원받아 설치되는 도로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가.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8호	
	나. 도로 노선의 변경·폐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8호	
	다.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8호	
	라. 도로의 신설공사 (도로의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는 제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8호	
	마. 도로구역의 결정(도로법 제8조의 도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8호	
	바.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8호	
체 육 지원과	1. 직장체육시설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나. 직장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2.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나.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관계 기관간 협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라.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3. 등록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체육시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4. 체육시설업의 등록·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체육시설업의 등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나. 대중골프장의 병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 회원모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라. 시정명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마. 등록취소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바. 청문 실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	
사. 과태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5. 학교 및 직장체육시설의 경비보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관 광 정책과 및 관 광 개발과	1.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다음의 권한(경제자유구역 내에 한함)		
	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이하 “관광지 등”)	「관광진흥법」 제52조	
	나. 관광지 등의 조성을 위한 조사측량 실시	「관광진흥법」 제53조	
	다.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수립	「관광진흥법」 제54조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라.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의 시행(조성계획 승인 전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 매입 승인)	「관광진흥법」 제55조	
	마. 관광지 등의 실효 및 취소	「관광진흥법」 제56조	
의 료 정책과	1.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와 검사	「약사법」 제69조	
	나. 업무개시명령 등	「약사법」 제70조	
	다. 폐기명령 등	「약사법」 제71조	
	라. 개수명령	「약사법」 제74조	
	마. 검사명령	「약사법」 제73조	
	바.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약사법」 제76조	
	사. 청문	「약사법」 제77조	
	아. 약사감시원등 임명	「약사법」 제78조	
	자. 과징금 처분	「약사법」 제81조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약사법」 제98조	
	카. 의약품 판매업소 허가증 갱신	「약사법 시행규칙」 제86조	
	2. 의약품 판매에 관한 사항		
	가. 의약품 판매업 허가	「약사법」 제45조	
	나. 허가사항의 변경 허가	「약사법」 제45조	
	다. 도매상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3.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부속병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포함)	「의료법」 제33조의2, 제3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8조	
	나. 의료지도원 임명	「의료법」 제69조	
	다.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의료법」 제84조	
	4. 마약류 도·소매업자, 의료업자, 마약류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	
	나.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다.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항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마. 마약류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가 된 때 및 법인이 해산한 경우 신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교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 사고마약류의 처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아.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 마약류도매업자 판매 승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차. 마약의 도매보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카. 마약의 소매보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타.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 신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파. 허가 등의 제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하. 출입·검사와 수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거. 폐기 명령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너. 업무보고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더. 허가의 취소와 업무정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리. 청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머. 과징금처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5.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구급차의 등록 취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나. 구급차의 지도·감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		
	다. 영업정지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		
	라. 청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6조		
	마. 과징금 부과·징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7조		
	환 경 정 책 과	1. 폐기물처리업(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변경 포함) 접수·검토 및 적합 여부 통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항	
나. 허가신청기간 연장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		
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변경허가·신고 및의제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제11항·제12항·제13항·제14항		
라. 영업구역의 제한 등 허가조건 부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		
마. 허가증 발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바. 수집·운반업자의 폐기물임시보관 장소의 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사. 허가증 재발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아.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자. 과징금 처분 및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차.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협의		「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4항		
타. 권리·의무 승계 신고 수리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3항		
파. 행정처분의 감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하.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수리		「폐기물관리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거. 허가취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의 청문		「폐기물관리법」 제61조제4호		
너. 교육대상자 선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56조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2. 위임된 권한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명령 및 출입 검사	「폐기물관리법」 제39조	
	3.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방치폐기물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관폐기물의 처리명령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2항	
	나.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4항제1호	
	다. 방치폐기물의 처리 및 보험금의 수령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4항제2호	
	라. 폐기물처리 명령 연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마. 처리이행보증보험금의 보험계약 체결 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바.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방법 변경 통보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0항	
	사.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 명령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1항	
	아. 미처리 방치폐기물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대한 처리 명령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3항	
	자.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갱신명령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8항	
	4.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신고·변경신고 수리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항	
	나. 폐기물 임시보관시설 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다. 신고증명서 발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	
	라. 폐쇄명령 및 폐기물처리 금지명령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7항	
	마. 보관시설 예외 인정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별표 17	
	5. 폐기물처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나. 의견제출 기회 부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2	
	다. 대집행 및 대집행비용 징수	「폐기물관리법」 제49조	
	6.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4항	
	7.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1항	
	8. 폐기물인계서 등의 전산자료 요구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5항	
	9. 보고 및 검사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10. 과태료 부과·징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 제4항	
	11.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시보관장소 승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변경승인)서 교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5항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다.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라. 임시보관장소 승인(변경승인)사항의 통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6항	
	마. 임시보관장소 승인조건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1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증의 발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부착 또는 표기 크기의 조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표1의2	
	다. 건설폐기물 장기보관 필요성 인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표1의2	
	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에 관한 예외 인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표1의2	
	13.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등과 관련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제출 및 적정 통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항	
	나.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	
	다.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기간 연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라.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2항	
	마. 허가조건 부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	
	바. 허가증 교부 및 재교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8항 및 제14조	
	사. 건설폐기물 재위탁 승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아. 처리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항	
	자.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시 방치폐기물 적정처리 조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차. 과징금의 처분 및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카.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타.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파. 행정처분의 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별표3	
	하. 수집·운반업자 임시보관장소 승인 취소 및 반입금지 명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4항	
	14.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나.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및 변경승인서 교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시험·연구 등이 목적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라. 건설폐기물 재활용 시험·연구 등이 목적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 및 변경신고 필증 교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마.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15.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과 관련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나. 개선기간 연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다. 개선완료 보고 및 사용중지명령의 철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4항	
	라.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16.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시험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17.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18. 보고서의 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19. 보고·검사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20. 시험·분석 의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2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에 대한 다음의 권한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가.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 갱신 및 분담금 납부 명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	
	다.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라.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 등에 대한 조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마.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 대집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바.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사. 공제조합과의 협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22. 청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	
	23. 과태료의 부과·징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별표5	
	24.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	
	25.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 위임된 다음 각 호의 사무		
	가.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3조 제2항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3조 제3항	
	26.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함유기기 등 관리		
	가.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 또는 변경신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나. 오염기기 등의 소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5조 제3항	
	다. 오염기기 등의 처리기간 연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27.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제1항	
	28. 청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0조	
	29. 위임된 권한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7조제4항	
	30.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2	
기 후 대기과	1. 대기오염물질배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제2항·제3항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수리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라. 측정기기의 부착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바. 개선명령 미이행자 등에 대한 조업정지 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사.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아.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의 취소·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 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자. 과징금의 부과·징수 처분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차.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카. 환경기술인의 교육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타. 청문	「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		
	파. 과태료 부과·징수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2. 보고·검사 등 (위임된 사무에 한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3.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제2항·제3항		
	4. 연료의 사용규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료의 공급·판매·사용자에 대한 조치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3항		
	나.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 조치명령(단서규정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다. 고체연료사용승인서 교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		
	라. 청정연료 외의 연료 사용금지 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마. 연료용 유류의 공급 또는 판매금지 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5. 청문(위임된 사무에 한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		
	6. 과태료의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수 질 관리과	1. 「물환경보전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위임된 권한에 한정한다)		
		가. 부과·징수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4항	
		나. 위반사실 조사·확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다. 의견진술 기회부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라. 이의제기 신청 접수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5항	
마. 이의제기사실 관할법원 통보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6항		
바. 체납처분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7항		
2. 과태료의 부과·징수 (위임된 권한에 한정한다)		「수도법」 제87조 제5항		
3. 측정기기 부착 등 사무(관할 사업장에 한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가. 측정기기 부착통보서 접수				
나. 측정기기 부착 확인				
다. 측정자료의 행정자료 활용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수자원과	1. 하천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 등 (상속, 양도·양수, 합병)(「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의 하천에 한정한다. 단, 준공된 경우는 제외한다.)	「하천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2.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의 하천에 한정한다. 단, 준공된 경우는 제외한다.)	「하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항·제5항	
	3. 하천수의 사용관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의 하천에 한정한다. 단, 준공된 경우는 제외한다.)	「하천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4. 지방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의 하천에 한정한다. 단, 준공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 허가 등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나. 하천관리청의 하천 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다.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하천법」 제74조	
	라.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및 보관·처리	「하천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5. 지방하천에 대한 다음의 허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의 하천에 한정한다. 단, 준공된 경우는 제외한다.)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가. 토지의 점용허가		
	나. 하천시설의 점용허가		
	다. 공작물의 신·개축 변경		
	라. 토지굴착, 성토, 절토 등 형질 변경		
	마. 토석·모래·자갈 등 하천 산출물의 채취		
	바.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의 채취		
	사. 스케이트장,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아. 식물의 식재		
	자. 선박의 운항		
	차.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 추가		
타. 점용허가의 고시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6. 허가받은 자가 하천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의 하천에 한정한다. 단, 준공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하천법」 제69조	
	나.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명령	「하천법」 제69조	
	다. 공작물 또는 건물의 개축·변경·이전 및 제거명령	「하천법」 제69조	
	라.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및 기간의 통지	「하천법」 제36조	
	7.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구역의 하천에 한정한다. 단, 준공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하천점용료,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하천법」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경상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6조	
	나.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하천법」 제37조제5항	
	다.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하천법」 제48조	
	라. 필요한 사항의 보고 및 검사	「하천법」 제90조	
	8. 지방하천관리를 위한 관계자에게 토지의 사용 및 출입하게 하는 권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의 하천에 한정한다. 단, 준공된 경우는 제외한다.)	「하천법」 제75조	
	9.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권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의 하천에 한정한다. 단, 준공된 경우는 제외한다.)	「하천법」 제70조	
	10. 부담금·점용료·사용료의 강제징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의 하천에 한정한다. 단, 준공된 경우는 제외한다.)	「하천법」 제67조	
	11.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의 하천에 한정한다. 단, 준공된 경우는 제외한다.)	「하천법」 제68조	
	12. 지방하천 내의 실시계획 및 준공인가(비관리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의 하천에 한정한다. 단, 준공된 경우는 제외한다.)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13.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의 하천에 한정한다. 단, 준공된 경우는 제외한다.)	「하천법」 제38조	
	14.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제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의 하천에 한정한다. 단, 준공된 경우는 제외한다.)	「하천법」 제14조	
	15. 하천의 감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의 하천에 한정한다. 단, 준공된 경우는 제외한다.)	「하천법」 제72조	
	16. 하천에서의 금지행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의 하천에 한정한다. 단, 준공된 경우는 제외한다.)	「하천법」 제46조	
	17. 하천의 사용금지 등(「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의 하천에 한정한다. 단, 준공된 경우는 제외한다.)	「하천법」 제47조	
	18.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의 하천에 한정한다. 단, 준공된 경우는 제외한다.)	「하천법」 제76조	
산 립 관 리 과	1. 위임된 권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2. 보호수 관리 등에 관한 사항(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는 제외한다)		
	가. 보호수 관리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	
	나.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보호수가 자라고 있는 토지의 매수 또는 교환 등	「산림보호법」 제13조제2항	
	3.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 제9조	
산 립 휴 양 과	1.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권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른 도로에 한정한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경상남도규칙 제 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장·군수·농업기술원장·경제자유구역청의 장 및 소방서장”을 “시장·군수·농업기술원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으로 한다.

제2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u>시장·군수·농업기술원장·경제자유구역청의 장 및 소방서장</u> 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차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시장·군수·농업기술원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장</u> ----- ----- -----.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① ~ ③ (생략) ④ 소방서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 별표 1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소관별	권한 재위임사항	근거 법령	소관별	권한 재위임사항	근거 법령
해 양 항만과	9. (생 략)	(생 략)	해 양 항만과	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가.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변경 등록</u>	<u>「항만법」 제25조</u>		<삭 제>	<삭 제>
	<u>나. 항만시설의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의 결정</u>	<u>「항만법」 제42조</u>		<삭 제>	<삭 제>
다. (생 략)	(생 략)	가. (현행 다목과 같음)	(현행과 같음)		

## 별표 4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소관별	재 위 임 사 무 명	근거 법령	소관별	재 위 임 사 무 명	근거 법령
소 방 본 부	<u>1. 설치 현장에서 방 염처리를 하는 합 판·목재의 방염성 능검사</u>	<u>「화재예방, 소방시 설·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u>	삭 제	<삭 제>	<삭 제>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입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 [별표1]

#### 권 한 재 위 임 사 항(제2조 제1항 관련)

소 관 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에너지 산업과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 명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2. 유통면세용도 물품증명 및 사용 확인서 발급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3. 광업권자의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채굴의 중단인가 및 재개신고의 수리	「광업법」 제42조제3항·제42조의2	
	4. 광물생산보고서의 접수	「광업법」 제83조	
	5. 광업사무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및 소재지의 위치 등의 변경명령	「광업법」 제42조·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71조	
	6. 전기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설비용량 1,000킬로와트 이하) 가. 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 준비기간의 지정·연장 및 사업개시 신고 접수	「전기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나목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다.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다목	
	라. 사업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전기사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라목	
	마. 청문	「전기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마목	
	바.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전기사업법」 제6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2호 가목	
	사.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전기사업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2호나목 「전기안전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아.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신고의 접수	「전기사업법」 제6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3호	
	자. 「전기사업법」 제10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중 사업개시 신고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전기사업법」 제10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	
경 제 기업과	1. 가격 표시제에 관한 사무 중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29조	
	가. 가격 표시 의무자에 대한 관계 자료 제출 명령권		
	나. 가격 표시 의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권리		
	다. 소매가격 표시점포 지정권		
	라. 가격 표시제 지도·단속 및 위반업소 과태료 처분권		
	2. 권장 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품목에 대하여 가격을 표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소비자기본법」 제12조·제20조제4항,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8호	
	3. 부정 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가. 부정 경쟁행위 등의 조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나. 위반행위의 시정 권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다. 의견 청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라. 과태료 부과·징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국 제 통상과	1.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국내유통 중인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권한		
	가. 원산지표시 검사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제3호	
	나.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 제기 접수 통보	「대외무역법」 제59조제2항제2호·제3호,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91조제3항제5호	
소상공인 정책과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 사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2조의3	
	가. 손실보상금의 신청 및 이의신청 접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제가목 및 제2호제가목	
	나. 신청된 서류의 형식적 요건 검토(이의신청 서류를 포함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제나목 및 제2호제나목	
	다. 손실보상금을 신청한 자 및 이의를 신청한 자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대상여부, 내용, 이행 기간 및 조치 위반 여부 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제다목 및 제2호제다목	
행정과	1. 시·군 단위 이하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	
도 민 봉사과	1. 북한이탈주민 거주자 보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9조	
해 양 향만과	1. 연안의 오염상태 점검(「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 중 무역항의 항만구역은 제외한다)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	
	2.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승인 및 해당 계획의 승인에 따른 협의·고시 통보에 관한 다음 사업의 권한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2호	
	가. 석축·옹벽 등 기존시설의 개·보수사업		
	나. 쓰레기 또는 폐선을 제거하는 사업		
	다. 해안편의점, 휴식용 의자 설치 등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 사업		
	3.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선정 및 자금지원(「식품산업진흥법」 제34조에 따라 같은법 제19조의4 제1항제3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한정한다)	「식품산업진흥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7항	
4. 생산·가공시설 등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 여부 조사·점검(「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의 이행 시설로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시설만 해당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3호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5.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 명령, 생산·가공 시설등의 개선·보수 명령(「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의 이행 시설로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시설만 해당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5호	
	6.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 명령 및 이의접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의 이행 시설로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시설만 해당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2호	
	7. 청문(「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5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8호	
	8.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8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9호	
	9.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다음의 권한	「항만법」 시행령 제93조	
	가.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113조	
	10. 연안항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해양환경개선 조치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제1항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33조	
수 산 정 책 과	1. 근해어업의 다음 허가	「수산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4조,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	
	가. 기선권현망 어업		
	나. 잠수기 어업		
	다. 근해장어통발 어업		
	라. 위 어업과 중복 허가된 어업		
도 시 정 책 과	1.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도로,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등과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관리사무(다만, 「도로법」,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또는 「항만법」 등다른법률에 따라관리하는 재산과관리기관이따로지정된재산은제외)	「국유재산법」 제28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에 대한 관리사무 위임	
	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가목	
	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나목	
	다. 기부채납	「국유재산법」 제13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다목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라.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국유재산법」 제1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라목	
	마. 관리전환의 협의 및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국유재산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마목	
	바.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국유재산법」 제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바목	
	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국유재산법」 제2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사목	
	아.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국유재산법」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아목	
	자.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자목	
	차. 사용료 징수 등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차목	
	카. 사용료 면제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카목	
	타.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에 대한 타목	
	파.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국유재산법」 제3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파목	
	하. 청문	「국유재산법」 제3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에 대한 하목	
	거.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국유재산법」 제3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거목	
	너.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국유재산법」 제40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너목	
	더. 대부	「국유재산법」 제41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더목	
	러.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국유재산법」 제6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러목	
	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국유재산법」 제70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머목	
	버.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국유재산법」 제72조, 같은 법 제73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버목	
	서.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이용·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국유재산법」 제73조의2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에 대한 서목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어.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에 대한 어목	
	저.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 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저목	
	처. 매장물 발굴 승인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처목	
건 축 주택과	1. 「주택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착공신고의 접수	「주택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2호	
	나.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승인	「주택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3호	
산업단지 정 책 과	1. 창원시의 창원국가산업단지 및 진해국가산업단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바목의 사업 중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가. 개발계획의 변경(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산업단지지정 등의 고시		
	다. 사업시행자의 지정		
	라. 실시계획의 승인		
	마.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및 관계서류 사본의 송부		
	바.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협의 등		
	사.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의견청취		
	아.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자.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준공검사 및 준공검사의뢰		
	차.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공고 및 통지		
	카.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타.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파.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처분·청문 및 고시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2. 창원국가산업단지 및 진해국가산업단지 외의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2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창원시에 한정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2항	
	3. 창원국가산업단지 및 진해국가산업단지 외의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2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창원시에 한정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2항	
	가. 실시계획의 승인		
	나.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및 관계서류 사본의 송부		
	다.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협의 등		
	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의견청취		
	마.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준공검사 및 준공검사의뢰		
	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공고 및 통지		
	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자.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차.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처분·청문 및 고시		
	4.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국가관리항 밖에 있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창원시에 한정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3항제2호	
	가. 개발계획의 변경(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산업단지지정 등의 고시		
	다. 사업시행자의 지정		
	라. 실시계획의 승인		
	마.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및 관계서류 사본의 송부		
	바.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협의 등		
	사.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의견청취		
	아.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자.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준공검사 및 준공검사의뢰		
	차.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공고 및 통지		
	카.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타.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파.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처분·청문 및 고시		
	5.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법원통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	
물류공항 철 도 과	1.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2항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의2	
	2.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4호	
	3. 물류창고업의 휴업·폐업의 신고수리 및 범인해산의 신고수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항(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5호	
	4.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6호	
	5.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7호	
	6.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3호	
	7. 물류창고업의 등록취소 및 인증취소에 관한 청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호·제1호의2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4호	
	8.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5호	
도로과	1. 일반국도의 접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도로법」 제40조제3항 및 제4항	
	2. 일반국도의 접도구역에서의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	「도로법」 제96조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3. 일반국도 위임구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접도구역의 관리	「도로법」 제40조제2항	
	나. 도로점용 허가 관련 권리·의무 승계신고 접수	「도로법」 제106조제2항	
	다. 도로의 유지·관리	「도로법」 제31조	
	라. 타 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도로법」 제33조	
	마. 공사 원인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도로법」 제35조	
	바. 도로점용 허가	「도로법」 제61조	
	사. 도로점용 공사의 대행	「도로법」 제65조	
	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도로법」 제66조	
	자. 도로점용 관련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 등	「도로법」 제73조 및 제74조	
	차. 재해발생 시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수용 및 손실보상	「도로법」 제83조	
	카. 도로공사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및 손실보상	「도로법」 제82조	
	타. 시설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도로법」 제40조제4항	
	파.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도로법」 제91조	
	하.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	「도로법」 제96조	
	거. 도로점용 허가 등을 받은 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	「도로법」 제97조	
	너. 수수료의 징수	「도로법」 제103조	
	더. 도로점용료 미납부자에 대한 점용료 강제징수 및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69조 및 제70조	
	러.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	「도로법」 제72조	
	머. 과태료의 부과·징수	「도로법」 제117조	
	버.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 및 변경 허가	「도로법」 제52조	
교 통 정 책 과	1.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2.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시간의 연장승인(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택시에 한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요금의 신고의 수리(시내버스, 택시, 농어촌 버스, 마을버스에 한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 신고의 수리(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한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제1항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등록 및 신고의 수리(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여객자동차에 한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6.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 여객자동차, 택시에 한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여객자동차에 한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위탁신고의 수리(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택시에 한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9.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범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택시에 한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1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 대한 신고수리(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택시에 한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1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및 신고의 수리(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택시에 한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12. 여객자동차운송개시 등의 신고(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택시에 한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택시, 자동차대여사업에 한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과 그 징수(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택시, 자동차대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운송가맹 사업에 한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15. 청문(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택시, 자동차대여사업에 한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16.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및 등록(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택시에 한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17.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의 연장(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택시, 자동차대여 사업에 한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18.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취소·통지 및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취소시의 청문(시외버스운송사업 제외)	「교통안전법」 제54조, 제61조	
	19. 교통안전진단 결과의 처리(시외버스운송사업 제외)	「교통안전법」 제37조	
	20.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그 징수(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교통안전법」 제65조	
	21.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그 징수(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마을버스, 택시, 특수여객자동차운송, 자가용 자동차대여 사업에 한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22. 택시미터 수리에 관한 검정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23.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 지정(수리검정에 한함)과 이에 대한 개선명령·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명령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제2항·제4항	
	24. 자동차대여사업자에 준용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가. 사업계획 변경등록·변경신고		
	나.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다.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라. 휴업·폐업에 대한 신고의 수리		
	25.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26.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호	
	27.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2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호	
	28. 운송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호	
	29. 운송가맹점 가입사업자의 운송 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서의 상호변경 신고의 접수(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11항·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호	
	30. 개선명령(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호	
	31.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호	
	32. 사업의 상속 신고(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호	
	3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9호	
	34.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처분 및 감차조치명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0호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35.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1호	
	36.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 운용계획의 수립·시행(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2호	
	37. 청문(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3호	
	38. 화물운송종사 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4호	
	39. 화물운송종사 자격자에 대한 청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5호	
	40.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6호	
	4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처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호	
	42. 책임보험계약등 의무가입자가 그 계약이 끝난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통지의 수령(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8호	
	43. 사업자로부터의 업무·재산 등에 관한 보고, 경영실태조사 및 재무관리상태 진단(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9호	
	44.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접수, 관할법원에 통보(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3호	
	45.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 허가, 허가증의 교부·통지·기록·관리, 영업소허가증의 개서 및 재교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46.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영업소 허가, 허가증의 교부, 영업소허가증의 개서 및 재교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41조	
	47. 택시운송사업자의 자격 취소 및 자격효력 정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48.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사업정지명령 및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명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49. 택시운송사업자 청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50. 과태료의 부과·징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3조제4호	
건 설 지 원 과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가. 건설업 등록신청의 접수·내용확인·수리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의 접수·내용확인·수리		
	나.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접수·내용확인·수리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다.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라.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내용확인·수리		
	마.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 철거 등의 조치		
	바.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등록 말소		
	사. 시정명령·지시		
	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자.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차.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카. 청문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파.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하.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보관		
	의 료 정책과	1. 반품 마약류의 양도승인에 대한 권한	
가.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양도 승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나. 마약류 양도 승인한 경우 결과보고		같은 법 시행령제28조 제3항	
감염병 관리과	1. 한센정착촌 재단법인 설립 허가에 관한 다 음의 권한	「민법」 제3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가. 한센정착촌 재단법인 설립허가 및 그 취소		
	나. 정관변경 허가		
	다. 해산신고의 수리		
	라. 그 밖의 지도·감독 등		
농 업 정책과	1. 정부양곡관리 중 관수용·가공용·공공용 양 곡의 판매	「양곡관리법」 제9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4조	
	2. 양곡의 소유자·양곡매매업자·양곡가공업자 및 양곡을 수출·수입·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 대한 감독과 조사공무원의 증표 발행	「양곡관리법」 제27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4조	
친환경 농업과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30헥타르 미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시행에 관한 권한(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범위는 제외한다)		
	가.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과 시행계획 수립,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나. 사업시행인가 및 시행계획의 변경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다. 교환·분할·합병	「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3항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라. 준공검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2.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유재산(「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한정한다)에 관한 권한		
	가. 관리·처분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나목	
	다. 기부채납	「국유재산법」 제13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다목	
	라.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국유재산법」 제1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라목	
	마. 관리전환의 협의 및 관리전환하기로 결정한 문서 등의 이관	「국유재산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마목	
	바.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국유재산법」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바목	
	사. 사용허가 및 승인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사목	
	아. 사용료의 징수, 보증금의 예치 및 이행보증조치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아목	
	자. 사용료의 면제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자목	
	차. 사용허가의 갱신	「국유재산법」 제35조제2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차목	
	카.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의 통보	「국유재산법」 제3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에카목	
	타. 청문	「국유재산법」 제3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타목	
	파.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국유재산법」 제3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파목	
	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	「국유재산법」 제40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하목	
	거. 대부, 대부의 제한, 대부료의 징수,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	「국유재산법」 제46조·제4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거목	
	너. 변상금 및 연체료 등의 징수	「국유재산법」 제72조·제73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너목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더. 불법시설물의 철거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더목	
	러. 과오납금의 반환	「국유재산법」 제7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러목	
환 경 정 책 과	1. 환경개선 부담금의 부과·징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2. 환경개선 부담금의 조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0조 및 제28조제1항제4호	
	3. 환경개선 부담금의 강제징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제1항 · 제2항	
	4. 환경개선 부담금의 분할납부 허가 및 허가 취소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2 · 제28조	
	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임된 지정폐기물 등의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정폐기물처리계획 서류의 확인 및 변경 확인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 제4항	
	나. 보고서의 제출명령	「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3항	
	다. 보고명령 및 검사	「폐기물관리법」 제39조	
	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마. 대집행 및 비용징수	「폐기물관리법」 제49조	
	6.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4항	
	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임된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소각시설로서 1일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시설과 처리용량 50kg/hr 이상으로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매립시설로서 면적 3만m <sup>2</sup> 이상인 시설 및 처리용량 50kg/hr 이상으로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제외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는 포함한다)		
	가.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 신고 수리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 제3항	
	나.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험·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	
	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의제)	「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4항	
	라.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3항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8.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임된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폐기물 처리업자는 제외한다)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 수리, 사후관리 시정명령,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및 비용 징수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제4항·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2항	
	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예치·납부·징수 및 반환 등	「폐기물관리법」 제51조	
	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 적립 및 차액 반환	「폐기물관리법」 제52조	
	라. 토지이용제한	「폐기물관리법」 제54조	
	마.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제외 대상시설 인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바.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시설 알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사. 사후관리소요비용 명세서 수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아.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 통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자. 사후관리이행률 결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호	
	차.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접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카. 사전적립금 납부통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타. 토지이용계획서 수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파.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 등 결정 및 통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하.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 접수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2항	
	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 접수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3항	
	니. 폐기물처리시설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4항·제5항	
	더. 오염물질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명령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7항	
	러. 오염물질 측정결과 및 주변지역 조사결과 공개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0항	
	9.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임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쇄명령에 대한 청문	「폐기물관리법」 제61조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다음의 권한		
	가. 신고의 접수 및 보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제1항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나. 과태료 부과·징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41조제1항·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50조	
	11.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환경 측정기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다만, 시장·군수가 보유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12. 교정용품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교정용품을 공급·사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다만, 시장·군수가 보유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1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사용 계획서 접수 및 접수내용 통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8조제4항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명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9조	
기 후 대기과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위임된 다음의 권한(환경부장관의 점검결과에 한한다)		
	가. 운행차의 개선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5호	
	나.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	
	2.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기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나. 정기검사 수검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	
	다. 정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라.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 정지명령 및 지정 취소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4호	
	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권한 중 시장·군수 관할 사업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나. 영업정지명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9조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수 질 관 리 과	1. 국가·일반산업단지 및 마산자유무역지역 밖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등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및 폐쇄명령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3항	
	다.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수리 등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라. 오염물질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	
	마.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물환경보전법」 제39조	
	바. 개선명령 미이행자 등에 대한 조업정지 명령	「물환경보전법」 제40조	
	사.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물환경보전법」 제41조	
	아.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의 취소·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 명령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자.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물환경보전법」 제44조	
	차. 명령의 이행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 검사	「물환경보전법」 제45조	
	카. 위임된 권한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물환경보전법」 제82조	
	타. 위임된 권한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	
	파. 과징금의 부과·징수 처분	「물환경보전법」 제43조	
	하.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제3항·제4항	
	거. 골프장 농약사용의 확인	「물환경보전법」 제61조제2항	
	너. 환경기술인의 교육	「물환경보전법」 제67조	
	더. 위임된 권한에 대한 청문	「물환경보전법」 제7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	
	러.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머.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접수·확인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버. 기본부과금 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제출 요청 및 접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서. 오염물질 배출량의 조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0조	
	어.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 검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항	
	저. 과징금 처분대상 배출시설의 인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8조제2호	
	처. 측정기기부착사업장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4	
	2. 국가·일반산업단지 및 마산자유무역지역의 4~5종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다만, 대기·수질 중 1개 분야가 1~3종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외한다.)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등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나.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및 폐쇄명령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3항	
	다.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수리 등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제3항·제4항	
	라. 오염물질 회석처리에 관한 인정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	
	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명령	「물환경보전법」 제39조	
	바. 개선명령 미이행자 등에 대한 조업정지 명령	「물환경보전법」 제40조	
	사.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아.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의 취소·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 명령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자. 과징금의 부과·징수 처분	「물환경보전법」 제43조	
	차.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물환경보전법」 제44조	
	카. 명령의 이행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 검사	「물환경보전법」 제45조	
	타. 환경기술인의 교육	「물환경보전법」 제67조	
	파. 위입된 권한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	
	하. 위입된 권한에 대한 청문	「물환경보전법」 제72조	
	거. 위입된 권한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물환경보전법」 제82조	
	너.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접수·확인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러. 과징금 처분대상 배출시설의 인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8조제2호	
	3. 국가·일반산업단지 및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일반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제3항·제4항	
	나. 위입된 권한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물환경보전법」 제82조	
	4.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변경·공고 및 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수도법」 제7조,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7조, 「상수원관리규칙」 제5조·제6조 및 제14조	
	5. 도 관할 사업장 외의 지역에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권한		
	가. 과징금의 부과·징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나.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 및 대집행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항	
	다. 표지판 설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라. 사업장의 출입·검사 등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6조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마. 자료제출 요구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7조	
	6. 위생안전기준 불량·불법 수도용 제품등의 수거등에 관한 사무		
	가. 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및 명령	「수도법」 제14조의5 및 제14조의6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나.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수도법」 제14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다. 제품등의 수거등 권고 또는 명령의 해제 접수 및 해제 결정	「수도법」 제14조의8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수도법」 제8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수자원과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하천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도지사가 허가한 사항에 한정한다.)	「하천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나. 하천점용허가 및 이의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제5호·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다. 하천 점용공사의 대형 및 공사 기간의 통지 (도지사가 허가한 사항에 한정한다.)	「하천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라.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도지사가 허가한 사항에 한정한다.)	「하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마.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도지사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하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바.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필요한 처분 (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사.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도지사가 허가한 사항에 한정한다.)	「하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아. 보고 및 출입 등(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자.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차.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하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카. 댐건설 완료 고시지역의 선박의 운행허가,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낚시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의 지정 및 허가취소 등 처분에 관한 권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타. 허가 또는 승인 취소에 따른 청문 (도지사가 허가한 사항에 한정한다.)	「하천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파. 과태료의 부과·징수(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 제98조제3항제1호·제6호·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하. 지하수 채취 관련 사용료 징수	「하천법」 제5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거.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하천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별표3]**

### 권 한 재 위 입 사 항 (제2조 제3항 관련)

소 관 별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투 자 유치단	1. 권한의 위임		
	가.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조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7호	
	나. 퇴출업종 등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 청문 및 대집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0호	
해 양 항만과	1.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립면허의 부관 첨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나. 매립면허의 제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다. 매립면허의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라. 면허수수료의 징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마. 매립실시계획 인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바. 매립실시계획 변경인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사.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준공인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아. 매립목적 변경의 인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자. 매립목적 변경협의 및 심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차. 매립목적 변경인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항	
	카. 재평가매립지 소유권에 관한 권리 보전조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타. 매립지 사용의 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	
	파. 매립면허 또는 인가 등의 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하. 공익처분 등에 있어서 손실의 보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7조	
	거. 효력 상실된 매립면허의 회복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3항	
	너. 부관의 변경 또는 새로운 부관 첨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4항	
	더. 공유수면 원상회복의 면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4항	
	러. 원상회복의무 면제사실 등의 국가귀속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6항	
	머. 원상회복 의무이행보증금 예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9항	
	버. 원상회복 불이행에 따른 원상회복 및 이행보증금의 사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0항	
	서. 이행보증금의 반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0항	
	어.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권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6조	
	저. 매립면허 취소 시 청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	
	처. 국가 등이 협의승인 받은 공유수면 매립의 공사시행기관 준공인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	
	커. 정부사업 매립공사 준공에 따른 매립지의 이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터. 과태료의 부과 징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	
	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	
	허. 매립면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고. 매립면허 협의 및 의견청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	
	노. 매립면허 경합 시의 면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8항	
건 축 주택과	1. 건축행정 진상화	「건축법」 제25조의3	
물류공항 철 도 과	1. 국제물류주산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국제물류주산업 등록 및 변경등록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나. 국제물류주산업 승계 신고의 수리	「물류정책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다. 국제물류주산업 휴지·폐지 및 해산 신고의 수리	「물류정책기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라.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취소 등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마.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물류정책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바.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청문	「물류정책기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사.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물류정책기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의 료 정 책 과	1.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등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9호	
	2. 반품 마약류의 양도승인에 대한 권한		
	가.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양도승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나. 마약류 양도 승인한 경우 결과보고	같은법 시행령제28조 제3항	
농 업 정 책 과	1. 농지의 보전 등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농지의 전용 허가 및 협의	「농지법」 제34조제1항·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나.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농지법」 제37조	
	다.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농지법」 제39조	
	라. 용도변경의 승인	「농지법」 제40조	
	마.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농지법」 제41조	
	바. 청문	「농지법」 제55조제2호	
	사. 불법농지전용 등의 조사	「농지법시행령」 제58조	
	아. 원상회복 명령 등	「농지법」 제42조	
	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무	「농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5호	
차. 검사 및 조사	「농지법」 제54조제1항		
환 경 정 책 과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임된 지정폐기물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서류확인 및 변경확인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4항	
	나. 보고서의 제출명령	「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2항	
	다. 보고명령 및 검사	「폐기물관리법」 제39조	
	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마. 대집행 및 비용징수	「폐기물관리법」 제49조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사용 계획서 접수 및 접수내용 통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명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기 후 대기과	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권한 중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관할 사업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나. 영업정지명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9조	
수 질 관리과	1.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허가·변경허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제2항·제3항	
	나.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의 준수사항위반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및 폐쇄명령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3항	
	다.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수리 및 오염도 검사외의,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제3항·제4항	
	라. 오염물질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	
	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명령	「물환경보전법」 제39조	
	바. 개선명령 미이행자 등에 대한 조업정지 명령	「물환경보전법」 제40조	
	사.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	
	아. 가산금 징수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4항	
	자.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의 취소·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 명령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차. 과징금 부과	「물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카. 과징금 체납 시 징수	「물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타.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물환경보전법」 제44조	
	파. 명령의 이행보고수리, 확인 및 오염도검사	「물환경보전법」 제45조	
	하. 골프장 농약사용의 확인	「물환경보전법」 제61조제2항	
	거. 환경기술인의 교육	「물환경보전법」 제67조	
	너. 위임된 권한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제2항	
	더.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러.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접수·확인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 경 남 공 보

제2641호(그2)

2023. 11. 9.(목)

소 관 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더. 기본부과금 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제출 요청 및 접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버. 오염물질 배출량의 조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0조	
	서. 자료제출요청 및 오염도 검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항	
	어. 과징금 처분대상 배출시설의 인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8조제2호	
	2.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3.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3항	
	4. 조업정지 및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명령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4항	
	5. 골프장 농약사용의 확인	「물환경보전법」 제61조제2항	
	6. 위임된 권한에 대한 청문	「물환경보전법」 제72조	
	7. 위임된 권한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물환경보전법」 제82조	